

觀時錄



[해제]

관시록(觀時錄)은 선조대의 당쟁에 관한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적은 책이다. 1583년(선조 16)에서 1591년 까지의 기록이며 정철(鄭澈)(1536 ~ 1593)의 언행에 대해 주로 기술하였다. 편자 정홍명(鄭弘溟)(1592 ~ 1650)은 정철(鄭澈)의 수자(季子)다. 송익필(宋翼弼)과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16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주로 고향에서 학문을 닦고 제자를 기르는 일에 힘쓰면서 생애를 마쳤다. 저서로 기암집(畸庵集)과 기옹만필(畸翁漫筆) 등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관시록(觀時錄)은 上, 下編으로 되어 있다. 상편은 1583년(선조 16) 정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기록이고, 하편은 1584년에서 1591년까지 8년간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상편이 대동야승(大東野乘)에 <時政非>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규장각 도서로 보존되어 있는 대동야승(大東野乘)의 원본으로 간주되는 필사본의 속표지에는 <時政錄>으로 기재되어 있다. 겉표지에 있는 <시정비>라는 제목이 답습된 결과 이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이 밖에 廣史 6집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고, 소대수언(昭代粹言)에도 일부가 실려 있다. 연려실기술별집 야사목(燃黎室記述 別集 野史目)에는 <時政錄>이라는 책명이 기록되어 있고 편자를 밝히지 않은 채 정철가장(鄭澈家藏)으로 소장처만 밝혀 놓았다. 또한 대동야승(大東野乘)에도 의정정철가장(議政鄭澈家藏)이라는 소장처만 나와 있다. 또한 관시록(觀時錄)의 첫부분에도 정송강철가장(鄭松江澈家藏)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시록(觀時錄)의 일부를 수록하고 있는 책들이 모두 편자를 밝혀 놓지 않았지만 1963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송강전서 송강집 부록(松江全書 松江集 附錄)에 실려 있는 관시록(觀時錄)에는 기암저(畸庵著)로 밝혀 놓았다. 이 송강전서에 실려 있는 관시록과 위의 관시록을 비교할 때 상호간에 부분적으로 탈락한 곳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밖에 기옹만필 등 정홍명의 저작으로 판명된 책에도 정홍명의 저술은 기암저(畸庵著)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시록(觀時錄)의 편자를 정홍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정홍명의 연배를 따져 볼 때 정철이 모아놓은 자료와 정철이 기록한 것을 선별하여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은 주로 당쟁에 대한 것이다. 상편은 이이(李珥)에 대한 논란이 주된 내용이다. 하편은 연대별로 극히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편 후반부의 己丑年(1589년)의 기록은 10월부터 시작하여 기축옥사(己丑獄事)에 관련된 정철의 행적과 옥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철을 비롯하여 李珥, 李濟臣, 朴淳, 成渾, 柳成龍, 沈喜壽, 李山海, 李山甫, 李潑, 鄭汝立, 趙憲, 沈義謙 등이다. 이 책은 당시의 당쟁에 관련된 전후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대동야승(大東野乘) 등에서는 볼 수 없는 하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84년 이후 정치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 기축옥사 시기까지 어떻게 변해 나갔는지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목차]

觀時錄

松江集附錄二 三觀時錄

[원문]

畸翁手筆

觀時錄

松江集附錄二 三觀時錄

癸未正月初二日 李徵 崔永慶 拜持平 安自裕
拜大司憲 二十二日 李潑拜大司諫兵曹判書李
珥身病 出仕辭職 答曰 我國兵力 固不及於前朝
而昇平百年 兵政之散久矣 余嘗隱憂不得其人
卿欲更張改紀 前後眷眷 今能出奇運謀 革盡流
弊 作爲養兵之規則 於國家幸矣 卿其努力調
理行公 亦可以治事 勿辭咸鏡監司鄭澈 拜辭
陳疏 答曰 奇哉卿說 今卿遠離朝廷 故有此忠懇
之言也 予當留念其往欽哉二月初七日 北兵使
李濟臣 馳啓 慶源藩胡作亂 圍慶源及阿山堡
上引見三公備邊司堂上 以罷散武臣吳沘朴宣 敘用
爲助防將 領勇士八千先赴 以京畿監司鄭彥信爲
右叅贊都巡察使 李[○]爲南道兵使 金禹瑞爲防
禦使 初九日 賊陷慶源◆原堡 事聞◆
府使金鏞 判官梁思毅 失守 命梟示陳前◆
軍律傳于大臣曰 昨與卿等 面議之時或◆
藩胡決無背叛之勢 今見賊勢 藩胡之反無疑
六鎮以胡人作爲藩籬 雖曰其慮遠矣 養成肘腋
之患 豈特時運之不幸 然六鎮非藩胡之屏蔽
則亦難爲守 其向國納款者 當因而撫之 背恩
忘德者 當發兵致討 以施一怒之威 今不問罪懲
創 則他日之虞 有甚於今日 聲罪薄伐 蕩平
其巢穴 然后擇其效順者 更爲藩屏 撫之以恩
威 亦良算也 議者不曰兵連 必曰開釁 此儒生之
說也 未聞有叛不討 而能爲國者也 回啓伏承聖
教 正合時宜 北虜兇逆如此 豈可姑息不討其罪
今使巡察使 商度本道兵力及糧餉 然后可行天
討 且北兵使李濟臣 雖有材畧 其實書生難於
獨往臣等之意 金禹瑞屢經北門之任 才智亦出流
輩 以禹瑞爲防禦使 卽刻馳赴 節制救援何如
傳曰依啓十二日 兵曹事目 自願赴防六鎮者 滿三
年 庶藁許通赴舉 公私賤從良 私賤代給公賤 兩司
請勿舉行 從之十三日 備邊司啓 李濟臣以書生

當試邊警 措置方略 未免疎漏 請罷職 以金禹
 瑞代之 傳曰 不須遞之北道兵使馳啓 賊圍訓戎
 鎮 僉使申尙節 及穩城府使申砬 力戰斬首五十
 餘級 追逐越江 焚蕩部落備邊司啓 今見北兵使
 啓 本訓戎之戰 申砬奮勇力戰 至爲可嘉 宜先褒
 賞 以激戰士 且兵使欲待援兵之集 討滅反胡方
 爲布置 兵勢漸張 不必以他人代之 聖教不遞 實合
 事宜 又啓 金鏞等 有覆敗之罪 主將劃卽行刑 ◆
 已矣 今以主將之令 立功自效 以孤軍斬首 ◆
 級 雖功不可贖罪 若不按鞫而遽行常刑 恐有喪 ◆
 意 臣等會議同然敢啓 不允十四日 傳曰 今觀廟
 堂規畫 多有顛倒未滿處 慶源一府 爲賊淵藪 未
 嘗出一奇謀 決勝千里 却賊而安民 取威而服遠 猶
 切切焉陷城將是營是救 至於兵使之易置 雖所當
 爲金禹瑞旣爲防禦使 專委征討之任 則李濟臣
 雖曰不閑軍旅 與金禹瑞協力犄角 未爲無助 乃
 搖動於浮言 率爾請罷 設使加罪濟臣 今豈其時
 予不從之 及夕見邊報 乃曰 上教允當 其措施何如
 此意 只色承旨知之兩司啓 北兵使李濟臣麤暴亢
 厲 處事顛倒 自守北門 專事威虐 列堡離心 藩胡
 怨叛 其所以致今日之變者 實濟臣之所爲也 及其變作 恇劫退縮 束手無策 孤城覆沒 堇在數息之程 而不
 能馳救 將士存亡 人畜搶掠 了不聞知 前後
 狀啓之事 顛倒錯亂 莫適所措 其失誤軍機 陷城辱國
 之罪大矣 請拿來依律定罪 答曰 李濟臣 何如是論之
 耶 雖姑徐論 此時則決不可從 其體予意 更勿言
 司諫院啓 備邊司 兵曹堂上 近日建請措施 無一長
 策率多苟且 請命推考 不從十六日 先是 兵曹判
 書李珥 建白 以上番軍士 及入防軍士 疲弊 命除卜
 馬 且外方武科赴舉 舉子過試後 卽定新選定虜衛
 使之分 防要害處 以此 闕闕子弟 多苦之 不肯赴舉
 故武士頗患之 少命革罷之 至是 同知申翌 上疏 上命
 議大臣十七日 兩司啓 兵曹判書李珥 當在被
 論之中 詣闕待罪 輕蔑公論 請推考 從之十九日
 司憲府啓 都承旨李海壽 近日所爲 多不厭人望
 請遞 從之二十日 北兵使馳啓 賊胡 再圍訓戎
 敗退去 射殺甚多二十三日 以李珥榻前所陳六條于
 備邊司 因傳曰 此疏辭 爲國之誠至矣 予亦有一言而
 蔽之曰 上自公卿 下至士大夫 不爲關節簡請之私 則自

可無爲而治矣 其所謂任賢能在此 養軍民在此 足財用在此 固藩屏在此 備戰馬在此 明教化在此 不然 良法美意 更無所施而雖曰更舊法 恐無其益 徒自勞耳 二十四日 兩司啓請李濟臣拿鞫 從之 二十八日 北兵使馳啓 十六日遣將士 入攻賊胡部落 幾盡蕩滅 獻胡馘百五十餘 上傳于備邊司曰 李濟臣予固已料其如此 而衆皆非之 予亦不能自守 今者既已立功 拿來未穩 議啓 回啓誠如上教 但都事既已發送 中路還止 亦爲顛倒 拿來後睿斷何如 三十日 北兵使馳啓 賊胡部落焚蕩 斬首六十五級以獻 備邊司啓卓頭部落 最爲險阻 且首惡所居 金遇秋等 乘勢進兵 既已焚蕩 追至隱伏之處 斬獲居多 全軍而還國耻可雪 臣等當初語於吳沔者 只慮濫刑無辜 使他處藩胡 相爲煽動 賊胡則寧可緩討哉 李濟臣設策 實是事宜 待都巡察使分等啓聞 行賞何如 閏二月初五日 宣傳官李克善 金鏞等行刑後入京 啓曰 臣到行營 示諭旨于北兵使李濟臣 則以爲大明律 凡死囚行刑 必過三日乃行 留三日行刑矣 傳曰 宣傳官下去 而不卽行刑 李濟臣 此罪尤重 推考 李克善並下義禁府十五日 朝講 兵曹判書李珥入侍 啓曰 臣欲陳所懷 而經筵則必講書後啓事 殿坐日晏未安 請於燕閒之時 賜對 上教以爲當於暇日召對 其時入侍司諫權克智 掌令黃暹 俱避嫌啓曰 李珥若有所達之事 則當於經筵進啓 若以朝講入侍 多不得從容進啓 則或於晝夕講所達 無不可也 今若無時請對 慮有後弊 而臣其時未及糾正 請遞臣職 答曰 爾等 欲使君臣阻隅 心術可知 不意今者有如此之人也 可勿辭 退待物論 司諫院請出仕 答曰 此人可遞不允 再請從之 二十二日 兵曹判書李珥上疏辭職 答曰 勿辭 今日政事後引見 二十三日 北兵使李濟臣元情 判付前罪棄 以金鏞等 不卽行刑 減死照律 司諫院啓 陷城辱國之罪 實在於主將守土之臣 既已蒙戮 則李濟臣無獨免之理 其擅留標信 至於三日 方命廢法之罪爲尤重 請寢減死之命 答曰 所論之意 則予已知之 但若以李濟臣 爲陷城辱國 則過矣 李濟臣當倉卒之變 有周旋策應之効 今不可治之 惟留標信 後日行刑

之事 所係極重 其死固當 然參其情跡 不過妄
料 不允

三月十二日 上令備邊司 各薦人才 朴淳薦成渾才
德俱優 鄭介清才識明達 金汝叻 崔慶會 徐益
文武才能 金貴榮薦儒將金晬 武將楊大樹 鄭芝
衍薦成渾才學卓異 柳祖訥忠孝大節 成允諧隱
居畜德 鄭惟吉薦儒將尹先覺 武將徐得運 鄭
宗榮薦幼學李忠可 李珥薦成渾可任經綸 成
允諧逸民之有才德者 鄭述有英才 柳堧 沈守慶薦
劉克良 姜暹薦朴宗男 劉克良 李浚民薦成允諧
徐益 金汝叻 郭屹薦李錘 劉克良 李澈 金應祥
朴好元薦劉克良 閔思俊 朴知進 洪淵薦金畏天
金命元薦尹龜壽 李之詩 俞泓 李戩薦成渾 崔
遠薦劉克良

四月初一日 司憲府啓禮曹判書鄭 嗜酒失儀 前
日陞卓 尙多人議 曾未半歲 遽超宗伯 物情未便 請
改正 不允 初九日 鄭琢爲大司憲 李友直爲大司諫
十四日 宋應漑爲大司諫 李栻爲大司憲 李暨爲副提學
李珥陳弊上疏 答曰 予偶閱卿年前上疏 而今疏適
來 前後惓惓 深嘉卿不忘庸君之孤忠也 國事賢大臣
自當任之 南行爲臺諫事 既往之悔 猶不可追 一之
已甚 寧忍再誤 貢案事 議于朝廷 則其論不一故
不敢徑改 設使改定 當此多事之時 似難並舉 軍
籍事 本曹已稟命 惟在卿設施之如何耳 省州縣
事 果出於寡昧輕淺之意 而恐貽他弊 不敢自是變
更 卿勸請不已 當試之 久任監司 難於創設 遲疑到今
此亦當從卿策 先以兩南試之 庶賤許通事 事變之時
因以獻策 卽命施行而言者論之 當更問于備邊司 商
議舉行十七日 慶安令瑤 請面對 力陳朝廷不靖 東
西分黨 政出多門 柳成龍 李潑 金孝元 金應南以東
人之魁 多有專擅之跡 請加裁抑 雜論時事 兩司論 瑤
講張無據之說 欲啓綱打之漸 請命罷職 答曰 瑤之
所陳 亦頗有理 予雖極寡昧 亦非專暗之主 固無罪之之
理今此言 何爲而來予耳耶 不允十八日 叅知成渾
在坡州 三上疏辭職 答曰 觀爾上疏 有病不卽上來 卽今
日氣和暖 爾須調理上來臥而謀猷 亦何所妨 予之待
爾 正如飢渴 長往不返 豈爾所願 況今兵判 乃爾之故友
也 予今擢爾爲叅知 豈無其意 同心同德正在今日 爾

何不翻然上來 以負予側席之望也二十八日 上命遞兩司
李陽九爲大司憲洪渾爲大司諫

五月十八日 全羅監司金命元辭職 因薦全州府尹沈義
謙智慮長遠 曾爲本道監司 熟知弊瘼 請移授監

司傳曰自薦其代 偃然狀啓此非藩臣所敢爲 殊無忌
憚事甚可駭 後日 亦必爲弊 然姑置勿問二十日 兩司啓
金命元不識事體 輕侮朝廷 請罷 答曰 此習 後日○○

藩臣跋扈之漸 命元敢舉義謙自代 其爲辭說 無所
忌憚 當鞫問其情 第今南方 防禦方緊 姑置之 後因
臺諫所啓 拿來推考 特拜具鳳齡爲全羅監司

二十七日 前叅知成渾詣闕上疏辭職 特授吏曹叅議
且賜銀帶 渾又上疏辭職並辭銀帶之賜 答曰 觀此上
疏 予甚缺然 爾何無意 且並辭所賜之帶耶 禮長
者賜 少者賤者不敢辭 況人君所賜之物 何可辭也
爾當服而拜賜 於禮爲得 不可辭也

六月十一日 上欲議邊事 命招兵曹堂上而判書李珥 以病
入內曹 不詣承政院 政院啓以此意 上遣內醫看病 令
退去調理 兩司論珥承召詣闕 只入內曹咫尺之地 終不詣

政院以承上教 慢君之罪大矣 請命罷職 累日論之不
從 十七日 李珥被論後 連日上疏辭職上慰諭敦至

三公亦來啓方今多事之時 李珥辭避不出 請敦諭出
仕 珥猶呈病不敢出仕是日始爲肅拜 啓曰 臣負罪
惶恐 不敢出仕 夫擅權柄 慢君上 乃人臣之一罪也 頃日

大臣 爲臣分疏 而猶不以臺諫之言爲過當 臣負此極
罪 而處本兵之地 號令將士 傳之四方 必爲駭然 請賜

斥免 上慰答之 持平李景啓曰 臣以城上所 論李
珥時 措語過當 呂晦先見之明 竊議者多 唐介訐
直之罪 臣實當之 請辭 憲府全數避嫌 與李景燧無

異 請遞 俱退待物論 掌令成泳來啓以爲 臺諫之
言寧失過激 不可柔懦 李景等別無所失請並出

仕從之十九日 兩司論啓 兵曹判書李珥 驟躋崇班 當國重任 宜加畏慎 盡心供職 而軍政重事 先行後聞 既
入

內曹 終不承命 跡其所犯 縣爲專輒 慢君之罪 臺諫據
事論劾 在所不已 爲珥者 反己者愆之不暇而先自疑心 內

懷忿怒 累日陳疏 辭氣不平 必欲以臺諫所論 歸諸虛
捏之地 至以大臣不擯臺諫爲非 又欲諸左右及其大夫
稱量輕重 有若決其勝負者然 是不過欲斥去言

者 而恣行己志也 臺諫以言爲責 逆耳之言 人主尙

且容之 身在人臣之列者 惡聞其過 自是強辨 脅制
 言者 使不得開口 其蔑臺諫 輕公論甚矣 請命罷職
 答曰 不允 弘文館 亦上劄論之 批答甚峻二十日 傳于
 三公曰 李珥卿等 雖請留用 而珥萬無出仕之理 兵
 務甚急 姑遞其職 以安珥心何如 當此北方邊報 國家
 將亡之時 朝廷洵難 賢邪不辨 何以爲國乎 予不勝
 痛心 此則予當隨後處之 令本府議啓兩司以傳教
 三公之意未安 引嫌辭職 退待物論二十一日 領相朴淳
 議 李珥豈終不出仕乎 然姑遞爲當 金貴榮議兵務
 方急 珥若難於進退 則遞之爲便 鄭芝衍議 珥終不
 出仕 則當此多事之時 不得不遞 然此後事 自上平心
 處之 朝廷幸甚 臣之所虞 非但爲朝廷 欲爲李珥保
 念令名 答曰 兵判可速遞 李珥已陷於誤國小人 夫豈
 有所令名哉 右相之議 何其迂也 其心所存 予殊不測 予
 雖暗君 不屑與小人同事 嗟呼 珥其好歸鄉關 高臥
 白雲 誰得羈繫哉弘文館副提學權德輿等啓曰
 昨承聖批嚴截 夫朋比分黨 罔赦之罪 乘時伺釁 莫大之
 惡也 有一于此 邦有常刑 臣等知有君父 而不知有宰相
 妄議論列 自陷於小人 請亟賜懲治 答曰 勿辭 李珥既
 爲小人 論小人者 豈爲小人 如權德輿 洪進 常贊李珥
 之忠直 贊譽小人者 未知其身 卽爲何如人之歸耶 洪進斗筲 固不足責 德輿年老之人 趨附新進 得無羞
 耻 今乃目以小人 此非前後反覆者耶 至於許通事 金瞻
 前於經筵啓之 今若律之以變亂成憲 則金瞻爲謀首
 李珥爲隨從 何乃以瞻爲議珥也哉政院啓曰 伏覩
 答大臣及玉堂之教 不勝未安 大臣獻議必有深憂遠
 慮 玉堂陳劄 亦出國人公論 自上非惟不納 至下迫切
 之教 顯示壓倒之意殊非平日所望於聖明者也 時
 事艱危 一至於此 臣等徬徨踖踖 不知所措 今聞權
 德輿等以批辭嚴峻 自分誅譴 退而待罪 以致下
 番闕員 臺諫退待 尚不得處置 請權德輿等牌
 招 使之出仕 答曰 弘文館官員 亦有牌招之時乎 再啓
 兩司今日不爲處置 則曠職未安 請弘文館招之處置
 傳曰 權德輿三人 予有所問之事 或對之 或自處 其餘
 召之出仕王堂上劄 兩司請並命出仕 從之二十二日 兩
 司就職 論李珥如前 至二十六日停啓 以沈守慶爲兵判
 七月初二日 傳于政廳曰 前府使金鏞 愚劣如土塊 而金誠
 一前爲御史時 敢薦如此之人 致令褒獎 陞授巨鎮 敗軍
 覆城 至今國勢垂亡 推其源本 事由誠一 此人不可復爲侍

從 羅州牧使除授十五日 成渾上疏辭職 答曰 疏辭忠憤激烈 如使奸邪聞之 足破其膽 信乎君子一言 爲國輕重 且爾既來在于京 可調病出入經筵 啓沃寡昧 未可爲遽退之計 勿辭 仍傳曰三公命招 領相朴淳 左相金貴榮 承命詣闕 右相鄭芝衍病不來 傳于大臣曰 以予寡昧無識 庸暗不敏不知忠邪 莫曉是非 故頃日間于卿等 卿等乃敢爲含糊之說 予固已痛知卿等之心矣 而隨後處之之教 則已諭卿等矣 今觀成渾上疏 大臣事君之道 果如是乎 當初李珣排擯 誰爲朋奸之類歟 其辨別以啓 無更含含 以貽國家之羞 回啓請面對 從之十六日 大司諫宋應漑啓曰 伏覩成渾疏辭 又聞領相朴淳 因成渾藏頭之語 指斥許筠及臣身 臣以言責之官 挾宿怨 乘時圖去賢者 罪當萬死 竊念臣家世 六代登科 受國厚恩 目覩聖明 偏聽生奸 將成厲階 寧發一言而死 豈忍苟免以負殿下也 李珣本緇髡也 斷棄君親 得罪人倫 若論其罪 先儒固有定論矣 化身還俗 參養權門 一世清流 不容假貸 初選上舍謁聖之時 館中多士 羞與爲列 不許通謁 賴沈通源遣其子鏞 奔走先後 乃得行之 及其出身之後 爲沈義謙所薦拔 得通清顯 結爲腹心 死生以之 其平生立志 蓋可見矣 第於中間 自稱向學 文之詞藻 自附於當時所謂士類如朴淳輩 作爲死生之交 密締肝肺 主張時議 當是時也 沈義謙籍外戚之權 假王梁之勢 口銜天憲 手握國命 李浚慶顧命元老 而憤其威抑 陰加詆排 使不得安其位 鄭大年先朝耆舊 金鸞翔乙巳遺直 不附義謙皆被顯斥 如其親已 則一郎出補 而舉朝請留 黨比私援 無所不至 朝廷命令 不出於朝廷 出於義謙與朴淳 其時殿下 入承未久 雖有識者憤痛 誰敢不怵其勢燄 而達於冕旒也哉 珣也則雖以山野自處 實爲謀主 表裡相濟 是則義謙於珣 有成就難忘之恩 珣於義謙 有聲勢相援之力 此國人之所共明知也 第珣也 敢以疎野之態 出沒山林之間 有若難進者然 故名譽虛隆 人多信惑 珣於是 出處進退 動引前賢 自以爲特立當世 超然於是非之外 故義謙之見棄於清議也 珣雖懷憤懣之志 似若不相關涉者然 姑退田里 坐觀時勢 攘臂倡言 以調劑保合同寅協恭之說 簧鼓一世 又爲之陳疏 以及義謙之短 兼舉金孝元之長處

以求至公之名 此珥之所以下誣當世 而人不覺 上欺殿下
而亦莫之悟也 嗚呼 其心可誣 衆心難誣 殿下可欺 鬼神難欺 珥之朗臆 國人已見其肺肝矣 前者掌令鄭仁
弘之劾義謙也 珥以長官 私見仁弘 極力救解 仁弘不聽 其
後屈意從之 有若初不知義謙之罪狀者 及仁弘以鄭
附於義謙 並論之 則珥又曰 之於義謙 情分雖深 氣
味心事迥然不同 此則要脫鄭 而實乃自明 公論既發
珥雖不敢顯然 復爲義謙地 而其所以營爲者 無非爲
義謙也 雖賴聖上務爲鎮定 使東西之說纔息 珥敢顯
然排擯 至形疏辭 外爲調劑之說 實行傾陷之謀 其爲計
亦譎矣 始則倡兩非之說 次則分疏義謙 至曰義謙向
善 別無罪惡 終則曰與鄭 迥然不同 珥之前後論義
謙 三變其說 其心可知也 不獨此也 其在鄉里 亦不曾以
廉耻自守 列邑賂遺 輻湊其門 射利爭財 不遺錐刀
海澤之利 官船之稅 無所不占 至於舊都公署 代名受
出 僉知奉訴世耕之地 非理抑奪 至於其兄打殺奉訴之
奴 而官不得問 爲大諫赴召之時 公然受穀百石於所經
之邑 輸送於本家 凡利之所在 惟恐不及 無所顧忌 此萬
口之所共談也 遠近傳笑 唾罵盈路 其蔑法自恣 行
身無狀 一至於此 而朴淳方且交口稱譽 矯誣殿下
其意固未可測也 珥之本心 惟其如是 故身被寵遇 位
躋崇班 罔念圖報 忌克自用 誣上行私 無所不至 巨細機務
必逞私智 施措之際 動拂人心 當國半載 怨及蒼生 主銓
一歲 濁亂仕路 眞所謂賣國之奸 而或者比之於王安石
安石寧有是哉 嗚呼三公者 殿下之所倚以爲國者也 領
相朴淳 終始扶護李珥 固不足侍也 咫尺天威 反覆
贊譽 重誣天聽 至以備邊司同事 然後始得相知爲
辭 使其言若出於至公者之口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臣頃聞此語 不勝駭憤 欲並論朴淳 至發於僚中
且或向人說道 而只恃聖明無所不燭 終始鎮定 故恐
涉騷擾 隱忍不發 臣之疲軟 死有餘罪 今於榻前 舉
臣姓名 不爲避嫌云臣之於珥 初無恩怨 亦不聞珥之言
臣之過而顯被指斥 意或臣欲論朴淳之說 落於淳之
耳也 實不知何故也 臣本不學迷劣 僥倖科第 累忝臺
侍 亡父先臣麒壽 知臣愚拙 常戒以切勿附會時論 故雖
自少同遊學者 臣亦相勉以守靜 至於儕輩 或有追逐
義謙及李珥輩者 則臣竊羞與外戚爲交 或加譏責
未知珥也 以是惡臣 常言臣過 臣未之聞也 至於成渾 則

爲朴淳等所薦揚 實與義謙 世篤親厚 又與朴淳交契深密 至於珥 則情逾骨肉 渾惟知有此三人 而不知有公論 故凡珥等之所論 渾必不辨黑白 舉以爲是 其平日論議 如出一口 曩者疏中 歷詆卿相 盡爲流俗 欲倚任一人 其意蓋在朴淳與李珥也 交相贊譽 互爲聲勢 若論義謙之罪 則珥出而救解之 若斥珥之失 則淳與渾 又爲營救 轉相引發 欺蔽天聰 敢以三司所論 爲不公平 未知渾之心 則果出於公平乎 頃者本院之官 以上教有曰 珥罪如是 而只請罷職 無異乙巳奸人之所爲云 故不勝未安 以不能據法請罪 爲避嫌三辭而已 初豈有眞欲加罪之意乎 是渾也 欲治臺諫過論之罪 而自不覺其持之以深文也 嗚呼 如臣走肉 亦據此地 挾宿怨排擯 使賢人不得接迹 罪固萬死 至於三司 乃殿下備顧問寄耳目之地 故祖宗數百年來 愛惜一時人才 優禮崇獎 以爲國家之命脉 而渾是何人 自負山野之名 敢行黨比之謀 乃以三司 比張商英尹穡 是以殿下舉朝之臣 皆爲小人也 左議政金貴榮非不知辨別以啓 而不敢以李珥爲君子者 其意有在 而反下嚴峻之教於大臣 如臣微末疎遠者 非不知言發禍至 一身利害 有不足恤其奈宗社何哉 頃者慶安君瑤面對之事 外有流聞 皆以爲珥等所嗾而成之也 大抵此輩締結既久 根柢已深 只知死黨之心 不復知有殿下 故敢爲誣上行私 至於此極 無復忌憚 上帝照臨 臣實痛之 臣被人指斥 羞辱名器 不可一刻仍冒 請命罷職 答曰 爾等之言 設使皆是 今乃言之 是乃不忠也 本職遞差司憲府避嫌啓曰 臣等頃日 論兵曹一二事 初不過隨失糾正而乃以措語間數字 輾轉相仍 至此之極 上以獲罪於君父 下以觸忤於相臣 至於來自草野者 亦爲之陳疏請罪必欲盡去三司之人 臣等不敢冒據 請命罷斥 答曰 勿辭退待物論特旨 以宋應漑爲長興府使 許葑爲昌原府使 仍傳曰 長興府使林晉 昌原府使丁傑 皆付京職 朴承任拜大司諫 備忘記 人君之所與爲國者大臣也 安危在大臣國亂思良相 昨日予以不知忠邪 莫曉是非問諸大臣 而左相金貴榮 憚於甲非乙是 乃敢爲依阿苟容之態 曾見自古大臣有如此者乎 其身既在大臣之位 凡辨別賢邪 進退人物乃其任也 若不知 則是不智 知而不以直啓 則是不忠 其何以在具瞻之地乎 政院知悉政院啓曰 臣伏覩下教 相顧驚惶 罔知所措 曾謂聖明之世有是事乎 左相金貴

榮心知士林無他 不可加之以罪 故力爲救解 以冀聖
 明之一悟 其爲辭雖不明快 而主意則可見 只以聖意
 之所存異常 是故 其言反爲逆耳之歸 而視爲依阿苟
 容也 近者天威方震 士類孤危 莫保朝夕 貴榮如以
 依阿苟容爲心 則承順上旨之不暇 而乃欲依阿苟容
 於孤危之士類乎 自上不諒其情實 遽加迫切之教 使無
 所容 大臣平昔所倚重 而一言忤旨 嚴譴至此 不但有虧於
 聖明 國事將自此去矣 自上少霽威怒 平心省念 則其
 庶幾釋然矣 且三司公論所在 國家所恃 以爲元氣者也
 自非權姦當國指嗾爲之 而論議之發 不謀而同 則謂
 之非公論可乎 成渾疏中許多說話 非但主意偏係 或
 以爲挾怨或以爲附會 或以爲朋讒奇中 或以爲巧設機關
 眩亂熒惑 至欲加罪言者 舉朝廷目之以邪 空國之禍
 不日而起 一言喪邦 正謂此也 不亦慘乎 伏願殿下虛心
 察理 深究是非之原 不勝幸甚 答曰 觀此啓辭 可謂
 指東答西也 昨日予問李珣之賢邪 左相乃曰 臣不知云
 云 終引知人 則哲之言以文之 此其心 路人所知 其謂予不
 知耶 夫是非之心 人皆有之 本於天性 自有所不容易者 而
 人主問之身爲大臣 乃以不知對之 嗟呼 人主之置相 豈但以
 不知二字 使爲其平生相業 而止哉 其可以不知數語 自
 足以爲高風勁節也耶 不知之說 其何以服天下之人心 自
 古未聞人主問其臣之賢邪於大臣 而以不知對之者也 苟
 如此 人主自任聰明 足矣 將焉用彼相哉 夫倚重大臣 固
 人主之本心 所以倚重者 以其辨朝廷之賢邪也 以其決國家
 之是非也 今乃入對君前 一則曰不知 二則曰不知 噫 以寡昧
 暗主 而遇不知之相 是猶以瞽借盲之視 欲正天下之色 將見
 相率而顛倒 莫之救以死也 夫以寡昧之資 守丕丕之基 不知
 相臣之非 國事之去而區區於含容之小節 而不能一爲發言
 以警後世之爲人臣者 則是爲一大臣 而忘祖宗之宗社也
 不幾於失輕重之權者耶 誠不忍不言而負祖宗也 予之
 此言 豈予之所願 不得已也 十七日 獻納柳永慶 正言李澍
 啓曰 李珣之見疑於士流已久 然頃日所論數事 不過因公事
 場之失而論之也 及李珣辭避之際 先自疑忌 多發不平
 之說 欲與言者爭其曲直 然後三司忿激 不謀而同 始微
 發其心跡可疑之端 初非因事而擊去之也 今者伏見
 成渾上疏 又聞朴淳筵中啓辭 或以爲朋讒設機 或以
 爲挾怨附會 至欲加罪言者 而舉朝目之以邪 是欲
 打盡一時名流於一網也 東西之說 出於無根之巷談

而畢竟爲士林禍胎 夫沈義謙西人之首也 而珥與淳於義謙也 有難忘之恩 渾亦義謙平生之友也 此數人等相爲朋比 其氣味謀議如一人焉 此國人之所共知也 今珥之被論也 以渾訴其寃 以淳証其事 果可謂公乎 臺諫一時之言 雖或過中 自有公論 淳等乃敢進其眩亂之言 熒惑主聽 其乘時媒孽 傾陷士林之意慘矣 臣等既被揮斥 且前大司諫宋應漑 曾於完席欲爲窮源之論 臣等務爲鎮靜而止之 臣等疲軟之罪尤大 請命罷斥 答曰 勿辭退待物論 十八日 司諫成洛 正言黃廷式 啓曰 頃者李珥以主兵之官 多有妄作之事 因其事糾正 乃尋常彈劾 李珥先自疑惑 至與言者爭辨 多費辭說 以致公論之益激 況珥之爲人疎通 主見偏執 過於紛更 短於靜量 凡所施設 動乖物情 自以爲天下事 可定於談笑之間 而不知在我之力量 無以擔當斯勢也 當國未久 中外之人嚮然 喪其樂生之心 今日所論 莫非珥之自取也 成渾與之最親 故好而不知其過 至於上章陳訴 且多營救 使朝廷不靖 士林自危 而舉同然之公論 歸之於挾怨設機之地 朴淳面對之說 雖自以和平爲言 而隨落一邊 反欲裁抑言者 至舉其名而斥之 亦非大臣爲國家之計也 且宋應漑欲爲窮源之論而永慶等止之 是亦臨事慎重 求無過於有過之地 臺諫別無所失 請大司憲李暨執義洪汝諄 掌令李徵 尹承吉 持平李景嶸趙仁厚 獻納柳永慶 正言李澍等 並命出仕從之 十九日 兩司合啓 領相朴淳本以斗筭之器 濟以文墨小技 用心邪回 行己狡點 急於得失 不顧廉耻 常與沈義謙結爲腹心 凡朝廷施措 人物進退 一從義謙頤指 擅美國柄 盖有年矣 李珥成渾 亦是義謙門客昵友 故淳與此人等 共託死生 相爲表裏 淳與珥 贊渾山林高士 渾則譽淳及珥一代賢臣 內憑戚里 外假虛譽 互相推挽 聲勢張皇一時之人 皆爲側目 莫敢開口 惟李浚慶金鸞翔 見淳與義謙權勢日盛 將誤國事 浚慶常對人言曰 義謙雖極力薦淳 急急超陞 淳乃小器 若致卿相之位 終必誤國事 淳以此銜之 橫加詆毀 使之齎志而沒 至於鸞翔爲諫官時 欲論淳死生之友 亦爲淳所陷 坎軻而卒 其他排斥 亦不可勝言 其濁亂朝政 斷喪國脉 亦已甚矣 惟幸聖明在上 奸魁失志 自此居常怏怏 徒知齒寒切己 不知公論可畏 乃與珥輩 每於昏夜 微服相從 所以謀陷士類 欲復義謙者 無所不至 只賴聖上終始鎮定 不

得行其胸臆 於是 以眩亂聖聰爲先計 探聖上厭新
 進之輕銳 則斥士類以浮薄偏黨 慮人以其言爲不公 則
 嗾人面對 教人陳疏 遂使聖明浸潤 終不能無疑 然後又
 因近日之事 天怒方嚴 乘釁抵隙 欲售傾陷之計 前後
 榻前之啓 極其陰巧 其曰與珥初不相識 而同事備邊司
 然後始知其爲人淳之與珥素所締結情踰骨肉 此實國人之
 之所共知也 而咫尺天威欺罔至此 其他誣上行私 舉此可知
 也 其所以欲罪言責之官 請罷銓曹之選 甚至於欲治
 製筭之人 無非以脅制人口 厚植黨與 恣行己志而已 及
 其天威照盡 奸計莫售 又嗾成渾使陳藏頭之說 極
 其陰慘之謀 渾則請召大臣而問之 淳則以渾敢爲至論
 乃於榻前 更竭前日未盡之邪謀 以宋應漑常欲論己之
 故 隱然以爲嫌於珥 誣爲指目 且許筭之父擘 常與淳有
 隙 今聞筭製筭 亦稱有嫌於珥 其實自爲報復宿怨之計
 前後啓辭 機關甚險欲去一時士類 盡陷於坑塹 其所
 以爲珥與義謙者 可謂至矣 第未知獻忠於君父者 爲何事也
 珥之用心行事 已盡於玉堂之筭 及宋應漑之啓辭 聖明既
 已洞照 今不必更陳 觀其平日豢養於通源之家 發迹於
 義謙之門 則其爲人可知 其心終始眷眷於所厚之地 外憚
 公論不敢顯然行私 假借調劑東西之說 以爲託公濟私
 之計 其所以爲說者 亦未免前後反覆三變其說 及鄭
 仁弘欲論義謙之時 珥爲憲長陰救不得 迫於公議
 黽勉從之 而其所以排陷士類之計 自此而益決 爵位
 既盛之後 益無忌憚 上恃聖寵 下蔑公議 變亂舊章
 自是偏見 惡聞其過 揮斥言者 所以誤國病民不一而足 加
 以持身不謹 恣行關節 多受賄賂 奪人田地 冒占公廩 至
 於防納官物 興販致利之事 無所不至 無復羞耻 其無行
 檢甚矣 每以去就惟義之說 前後陳達 頃被人言 佯爲退
 去 陰以啓達請留之意 囑之於人 固寵要君 詭譎不正極
 矣 珥之爲人 大槩如此而初不敢啓者 非但欲爲和平鎮定
 之計 抑珥常以擔當世務自許 聞其言 則似若有爲 且當
 此聖明之時 必不得逞其私計 或可謂能臣故 姑爲不言
 試觀行事之始何 今者身爲兵官 值國多事 計慮籌畫
 率多妄作 中外騷然 莫保朝夕 外寇不至而邦本已搖 任
 言責者隨事糾正 乃是尋常職分之事 而珥先自疑忌
 多費辭說 以激上心 淳於是 徒知救珥之爲急 不念國
 事之日非 掩其已著之失 揚其所無之美 淳之欺罔天聽甚
 矣 若如成渾 則自稱山林之人 身負重名 荷聖上恩

眷 迥出千古爲渾者所當至公至正 盡誠盡忠 圖報
 萬一 況今邊境方急而未嘗獻一策出一奇 以紓宵
 旰北顧之憂 但以一友被劾爲憾 昏夜經營謀所以救解
 之者 乃敢以附會挾怨朋讒奇中之說 熒惑聖聽 必欲
 網打一時之士流 方仁弘之欲劾義謙也 渾營救甚至
 仁弘曰 珥與義謙有同朝之分 救之或宜 爾則來自山
 林 何故 與戚里用事者 相厚耶 渾語塞 以此觀之 其
 與義謙 終始相厚 蓋可知矣 渾託身山野 書札絡繹
 於都下 朝廷之政令 人物之進退 無不預知 群聚浮雜之徒
 評論時事 歷詆卿相 眇視一世之人 目之以流俗 其所贊揚
 者 惟淳輩一二人 聖上之徵召雖勤 而必待淳輩之折
 簡而始來 其去就果在乎君父乎 今日之至都下 只爲
 淳與珥也 其所以陳疏營救 國人之所共知也 然而渾之
 爲人 固不足多責 若淳 則方在首相之位 不爲國家
 和平之計 唯附會私黨爲急 以啓空國之禍 將使宗社顛
 覆 如此之人 不可一日冒據具瞻之地 請朴淳亟命罷職
 不允 二十二日 兩司條列朴淳十罪請罷 不允 大司成
 金宇顥上疏 以三司爲浮躁云云 兩司避嫌退待 李
 希得拜司諫 特旨以金孝元爲安岳郡守 權德輿爲
 星州牧使 洪迪爲長淵縣監 二十三日 司諫李希得肅
 拜後處置兩司啓曰 金宇顥爲此區區偏倚之說 三司所
 爲至以浮躁目之 不可以一人回譎黨比之說 徑遞臺諫
 請兩司並命出仕 坡州有一女生子 一頭一面 四目四耳
 二鼻二口 四手四足 二莖二囊 產後卽死
 八月初五日 政院啓曰 河洛與李珥渾 最親且厚 而敢以不知
 珥之爲人爲說 極其緩頰 巧中上旨 其在鄉曲 射利敗義
 脅利邑宰 疾害士類 人皆側目 且其疏末 亦多汎濫褻慢之
 之說 其陰譎側媚之狀 尤所難逃 臣等職忝近密 目覩喪邦
 之禍迫在朝夕 敢啓 答曰 何承旨起草乎 回啓院中同議
 啓之矣 傳曰諸承旨一時秉筆而起草乎 回啓雖有秉
 筆者 非其意見所爲之事 而屢問 執筆之員 不勝惶恐
 未安之至 傳曰 今觀啓辭 爾等欲杜塞人言 掩蔽予聰
 明耶 如是而終欲爲何事耶 予雖昏庸 豈爾等所指
 教者耶 其謂予不能治爾等耶 大抵公論之在人 如水之
 在地中 不必以臺諫而是 不必以芻蕘而非 其人公 則其言
 公 自古以來 臺諫侍從之名 何代無之而公論之在朝廷者
 鮮矣 夫公論在於朝廷 則治 不在朝廷 則亂 此所以百代無善治
 也今爾臺諫之言人心不服 義士奮袂 將四面而起 爾等雖

欲竭力繡縫不可得矣 成均館儒生柳拱辰等上疏 論
 李珣成渾之賢 答曰 予以寡昧 叨守鴻業 智不足以辨賢邪
 才不足以治國家 使朝廷不靖 是非混淆 責在於予 夫復
 何言 今觀疏辭 忠讜激烈 爾等義氣如此 予何憂國事
 政院在樞要之地 機務多不致察 雖由人才之短長 夙夜匪懈
 恐不如是 其勿陳雜言 姑勤職事 兩司以政院批答未安引
 避 答曰 自爾兩司論啓以後 予不下一言 予非口吃者 豈無一言
 之可發 一威之可施乎 以君臣之間所傷者多也 當此國家艱虞
 生民塗炭之時 爾兩司孰非李氏之臣 而惟茲大臣公卿 皆
 比肩一時 如兄如弟者 何不先公後私 痛去己意 渙然冰釋 協
 和一心 戮力王室耶 爾兩司莫如即日停論 將一場紛拏
 付之一笑 而更不思之 則此非予之幸 實爾兩司之利也 君
 臣之間情如父子 故予今言之 若執迷不悟 論之不己 則予豈但
 默默而已乎 必將有不得已之舉 他固莫恤也 到此時也 其無
 悔乎 勿辭 兩司再避 臣等亦以祖宗朝世臣遺裔 沐浴殿
 下十七年養育之澤 今承下教丁寧 孰不感激 但是非不定
 則將來之禍 非殿下所能防也 臣等怯於一威之施 即日停論
 則固臣等之利 豈社稷之福乎 請亟命罷斥 答曰 今見
 啓辭 具悉其意 卿等有何私怨於彼 彼亦有何私怨於卿等
 以同是臣曹 在一堂談笑相許者也 不幸今日 偶因言辭 輾轉
 相仍 至於角立 有同楚越 卿等若回頭以思 實是一場可笑之事也
 既往之事 卿等不須追辨 彼亦何足以介懷 彼若介
 懷 則非其人也 卿等俱予侍從之臣也 其間或有侍講累年
 者 予實愛惜而發此言也 非偶然計也 其速克體予意 將來
 安有禍生之理 其勿疑焉 勿辭 政院啓曰 臣等身負重
 譴 方嫉罪之不暇 而第以臣子事君之道 一日在官 當盡一日
 之責 昨日太學儒生上疏之時 私相指囑 或教誘 或脅制 有
 異議者 或損徒 或削籍 迫逐紛拏 明倫之堂爲一戰場 士
 習悖亂 至於如此 自上何從而知之 下答之辭 反加褒獎 伏
 願聖明省念焉 傳曰 入直衛將權擘 鄭復始 差假承旨
 今日仕進承旨 朴謹元 金悌甲 李元翼 成洛 并遞即日爲
 政 李杻 李訥 朴崇元 柳永立 金宇顥爲承旨 初八日 兩司以政
 院並命遞差未安事上筭 答曰 在昔宋時 六賊當朝 李綱
 去國 太學生陳東等上疏極論 千載之下 聞其風節 尚不覺
 投袂而起 今茲館學儒生 目見朝論之乖宜 國事之日非 倡
 義相率 叩闕抗疏 其忠肝義膽 讀其疏有凜凜不可犯者 誠
 所謂不負所學 而橫流之砥柱也 太學首善之地 公議所在
 朝廷是非 可亂於一時 而太學之公論 焉得廢也 自予即位

以來 諸生上疏非一 其間豈無評直而逆耳者 予未嘗
 一示不悅之色 必以溫言慰諭而遣之 誠以國家之元氣在
 此 朝臣可罪 而諸生之氣 不可折也 設使狂生所爲 或有過中
 者 猶不可待之如此 況正直之氣 邁青松而孤節者哉 予
 以千乘之尊 尚屈己下之 彼么麼數臣 昵伏近密 恣爲朋
 比 杜絕人言 掩蔽聰明 乃敢目諸生以悖亂 是欲踵黃潛
 善之所爲 眞小人而無忌憚者也 予不卽舉流廢放殛之典
 將使魍魎之類 馳驚於昏夜 其爲失刑之甚 而終未免爲
 漢元之歸 爾兩司反爲伸救耶 初七日 幼學李廷友
 等上疏 論前日上疏 非太學公論云云 答曰 觀爾等之疏 是
 非糶糊 立論不正 爾等不過耻擯士類 爲之陳辨也 然旣
 有此意 則陳疏亦不妨也 但爾等未宜互相爭辨 角立詆
 斥 哆無窮之口舌 其何益於德業 但願爾等力學內
 省 致其良知 則是非之天 自了於胸中矣 十一日 幼學申
 ∞上疏 極論三司奸慝之狀 且指洪渾 禹性傳 金應南 朴
 謹元 金瞻 金粹 洪進 倡爲邪議云云 答曰 觀爾上疏 誠極
 忠款 直哉若人 今士氣如此 寔由祖宗培養之澤 朝廷邊
 鄙 非所當憂 爾弟申砬 盡忠報國 身守邊疆 虜不
 敢近 有古良將之風 爾又奮不顧身 抗疏斥邪有此奇
 節 是何爾一家 並生忠義 爲國效誠若此也 予用嘉焉
 傳曰 平安道巡撫御史 金粹當日發送 粹以名叅於申
 ∞之疏 上疏待罪請遞御史 傳曰爾侍講累年 性頗淳
 直 且有幹才 殊非爾兄之比 予誠推以赤心 將期多用
 不幸爾亦隨其中 予爲爾惜也 然人言之來必有其
 由 姑遵承前旨 出巡西方 往盡乃職毋替予命 金粹三
 疏請辭 不從 十三日 右相鄭芝衍病重 上遣右承
 旨李訥問病 且使陳其所欲言 舉所知以自代 芝衍啓
 辭 大槩李山海早有公輔之望 可大用 又曰無係好惡之
 偏 永享和平之福 上遣史官回諭曰 卿言儘是嘉猷 予
 當體念 十三日 特旨以洪汝諄爲昌平縣令 洪進爲龍
 潭縣令 金瞻爲知禮縣監 金粹爲吏曹正郎 鄭昌
 衍 吳億齡爲吏曹佐郎 右相鄭芝衍遣司錄啓曰
 朴淳被論 恐不無自取之事然淳自妙年立朝 以名節
 自持 至如三司所論恐是太過 臣實未安 知人難 然豈
 有若淳至於此等事乎 或有傳聞之誤多也 答曰 觀
 卿啓辭此言 尤當深嘆卿病中 不忘國家之忠也 領相
 之爲人 予豈有不知之理乎 卿更加安心調理事 遣史官
 諭之 十五日 政院啓曰 伏觀答申∞之疏 厚被誣罔 反加

褒獎 其眩亂之說 不足多辨 至如奸邪之徒 使其子弟
 陷利呈疏之言 無據已甚 至於歷舉朝臣 稱爲朋比壅
 蔽 以比指鹿之人 豈有脅制呈疏如之言乎 此疏與河
 洛疏 首末措意頗同 不過窺探聖旨 欲爲奇中之計也
 清流之禍 安保其必無乎 傳曰 知道 二十日 兩司遞差
 李陽元爲大司憲 白惟讓爲執義 鄭惟清 宋承禧爲掌
 令 丁允祐 成惇爲持平 金宇顥爲大司諫 鄭士偉爲司諫
 洪仁恕爲獻納 栢格朴弘老爲正言 湖南儒生等上疏言
 前日上疏 儒生柳拱辰等 盡爲宋應漑姪韓戡所停舉云 上命
 拿鞠 治以懷奸逞私無君不道之罪 二十八日 上命招正
 二品以上 引見于宣政殿 下教以近日 朝廷不靖 專由於沈義
 謙金孝元兩人之致 欲遠竄何如 左右皆以爲當初東西
 分黨 雖由於此兩人 今皆外補 不干與於朝政 不必罪之
 上又教以朴謹元 宋應漑 許筠三人 予知其奸 遠竄何如
 左右以如此之人 雖有過越之言 聖明之下 不可以言獲罪
 力爲伸救鄭[○] 進啓此人等 不可不明示其罪 以定是非
 於是命竄宋應漑于會寧 朴謹元于江界 許筠于鍾城
 上以鍾城方被兵 命移配甲山 以李壑爲長興府使 朴
 漢九爲昌原府使 金應南爲濟州牧使 皆特旨也 二十
 九日 以鄭惟吉爲右議政
 九月初二日 大司憲李友直 大司諫金宇顥啓 昨者三竄 責辭太重 夫此人等 固有
 罪矣 然不過躁妄過越而已 刑罰不中 誠非國家之長計
 當初李珥當國重任 才疎意偏 言論處置 動拂人心 言
 責之臣 隨事駁正 固其宜也 應漑 筠等 徒見珥之不是處
 彈劾之辭太不着題 且應漑既被指斥 而不自引咎 斥論
 朴淳與李珥成渾 多發不中之言 至於儒生上疏論議
 偏倚喉舌之臣 敷奏開陳 乃其職也 謹元等不能分析
 事理 多陳冗雜之言 此皆不能無罪者也 然推原本情 上
 恃聖明 有懷必達 不覺其過越爾 何可深罪哉 若以朋比
 壅蔽爲罪 則舉國皆知其冤矣 奈何不察諸大夫國人之同
 情 而取決於矢志怏怏 乘時陰陷之一言乎 請還收三竄之命
 濟州牧使金應南 久侍經幄 啓沃居多 及爲承宣 勤勞
 盡瘁 殿下之所嘗倚任而眷注也 罪名不彰而信浸潤之
 譖投畀魑魅之鄉 近來斥逐紛紜 名流殆盡 讒口抵隙 臺
 省一空 百僚寒膽 忠讜沮挫 大非社稷之福也 請收金應南
 濟州之命 答曰 國可亡 三奸斷不可貸也 應南予果悉其勤
 幹慎實 信之不疑 慶安面對 斥之亦不疑 厥後臨朝 偶教
 曰 應南能察職事 宋應漑輒極口贊之 到今見之 則應

漑乃奸之魁 而應南爲此賊所贊 其締結朋比 灼然可知而近來 以慶安之請對爲李珥所嗾云 如此之言 必應南輩憤其直斥其名 故做出邪說 誣陷之罪已著矣 予實痛之 故投之濟州 於其身幸矣 若革面圖新 他日未必不親寵也 初三日 修撰金弘敏在鄉家 辭職上疏 陳李珥失誤之事 答曰 觀此疏 只是謄寫三司啓辭 弘敏 亦郎僚中黨邪者也 無足怪也 至於以珥爲黨云 以此說動予意 噫 苟君子不患其爲黨 而患其黨之少也 予亦法朱熹之說 願入於珥渾之黨也 自今以後 輩以予爲珥渾之黨可也 若詆斥珥渾者 則必罪無赦 然此人姑置勿責 本職遞差 初五日 李珥在坡州上疏 答曰 噫 天未欲平治我邦耶 是何以卿之爲人而不得於時耶 意者天使卿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 將任舟楫霖雨之責耶 天之於卿 可謂曲成而玉汝矣 今日之事乃天所以獨厚於卿也 於卿何損焉 夫人言之嘵嘵 不滿一哈 卿何足介懷 安可遽出辭職之言乎 嗟呼 世已降矣 時已晚矣 鄭聲亂雅 傾陷成性 殺人之謗 未及於曾參 則其母之不爲投杼幸矣 卿不可不速來見予 兼陳懷抱 慰安衆情 在此一行 其速乘駟上來 領議政朴淳呈辭 傳曰 安心調理 招其郎廳言之 初六日 特拜成渾爲吏曹參議 因下教曰 爾既承召入京 一不入對 何以不辭於予 徑自還鄉 有若逃遁之爲耶 此良由待爾不誠 致有人言予過大矣 爾勿以雜言介懷 斯速上來 儒生朴濟上疏極論時事 金孝元 金應南 徐仁元 洪進 宋應漑 許筭 洪汝諄 洪渾 禹性傳 金瞻 鄭熙績 李景[○] 李徵 金宇宏 李山海 李壑 朴承任 朴漢元 等姦凶之狀 請並竄逐 且言金宇顛雖似良善 亦以其兄之故 未免誤入云云 答曰 有懷必達 則有之而其爲辭說妄矣 姑置之 大司諫金宇顛 以被朴濟指點辭職 答曰 不足與此人相較 予知爾之爲人矣 爾但恃我 不須來辭 第患不舉職事 如朴濟則置之於大度 洪造之下 亦不須責也 再避退待上命招 仍辭職 答曰 其人之言 豈可足數至於因此 而辭職退待 則反傷國體 且其人之言別無大段指斥 但以爾爲救其兄云云 爾豈知其兄 不知有予者乎 此理甚明 然爾不安於心 予不敢強焉 姑可退待物論 司諫院啓請出仕 從之 初八日 黃海道儒生等 上疏請罪三司 答曰 觀爾等上疏 忠義凜然 辭氣奮發 可謂未死姦諛 骨已寒矣 安得爾輩置朝廷也 予甚嘉歎 宋應漑等 已薄施譴罰 爾宜知之 特拜李珥爲吏曹判書 初九日 司諫院上劄極論東西角立之源

且言鄭[○]交構生禍無所不至 其前後儒生等疏章 皆自[○]之風旨 非公論云云 答曰 觀此劄辭 主論誤矣 予方務欲鎮物 而爾輩又激予之疑 必非朝廷之亨運故也 劄辭當留念 十一日 司諫院啓 近來朝著不靖 人心疑懼 鎮定之策失今不圖 則同寅之美 終不得致也 前日兩司論劾兵官 初非有意攻擊 持平李景??本以浮妄之人 不議同僚 自以己見 添入慢擅等語 以啓爭辨之端 掌令李徵又於避嫌啓辭 下語過當 此二人生事於前而宋應漑許筠等 輕躁激發 再誤於後 致有今日之騷擾 今應漑等得罪過重 人情矜愍 至於初非有意生事之人 亦皆紛紛補外 物議嗟惜而若景??等 論事乖當 以至債事而尙無譴罰 物情未便 請並罷職 以懲其失 禮曹判書鄭[○] 本以剛褊忌克之人 失勢之後 怏怏憤憾 多有不平之氣 交構煽亂使士類分裂 又乘時傾陷 無所忌憚 觀其處心積慮 必欲生禍搢紳 以逞私憾 情狀呈露 人人痛憤 今殿下務欲鎮物而此人在朝 陰行巧計 惹起紛紜 職爲亂階 請罷職以正其罪 答曰 無以爲也 諫院必爲人所教唆耳 予知此論之意矣 是不過欲去鄭漑 而並及一二前臺諫 使予見之 認以爲和平之論 而不疑之耳 如兩李者 何足道哉 不過以無識搖尾之人 得除言官爲邪黨之先鋒耳 今此輩情狀敗露 技窮術盡 欲歸罪於兩李 圖爲自脫 其謀可哀也已 實如啓辭 當初只欲駁正其事 初非攻擊之意 而城上所自以己意添入慢擅等語 則其時三司有何所難 而不爲駁正遞差 反肆邪說無所不至 必欲賊害忠良而後已耶 其平日旁伺猜然之心 蓋未嘗一日忘于懷 弟未得其隙爾 一朝見李珥之小失 挾彈睥睨之徒 雀躍而起 自以爲時哉不可復得 於是邪說充塞 四面圍合 小人之謀 可謂巧且慘矣而其實誠愚也 況其時憲府啓辭亦有此等之說 與李景別無異同云云而今此啓辭 乃曰自以己見添入云者是 何言耶 然此人既皆邪黨 依啓罷職 至於鄭漑之爲人 其心也正 其行也方 惟其舌也直故 不容於時 見憎於人耳 若其當職盡瘁清忠節義 草木亦知其名矣 眞所謂鵠班之一鶚 殿上之猛虎也 頃於引對之日 讜言斥邪予固知其今日得此謗 故卽回諭于漑 其果然矣 若罪鄭漑 是朱雲可斬也 爲今之計 莫如勿擯鄭漑 勿舉東西 勿言已往 則不求鎮定 而自當囿於和平之域 不然 前車之覆 恐移轍於後也 十二日 大司諫金宇

顯 司諫洪進獻納洪仁恕 正言李弘老避嫌 畧曰臣等目見
時事艱虞 夙夜殫思 務欲裨助聖慮 鎮定國論 何至受人
指嗾 以爲前臺諫圖脫之地哉 李景等乃敢目以
過情之語 其時同僚 以其既與同事之故 難於立異 此
其處事之失也 殿下以鄭澈爲忠清正直 至此於殿上
之虎 聖意所在 固非常情所知 但當初締結義謙者 此人
也 失志怏怏 交構搢紳者此人也 今以懷私逞憾之心 爲乘
時傾陷之謀 未知正人君子 亦忍爲此事否 臣等不能
開導聖心 抑邪清朝 罪當萬死 答曰 勿爲紛紛辭避 可
退而盡職 領相朴淳三度呈辭 傳曰 辭章三上 予心
瞿然 然卿之心事 奸臣之誣罔 予不必煩諭 今若許卿
辭退 則是欲濟川者 自折其楫耳 予雖愚暗 必不至
此 卿速爲出仕 撫定衆心 遣史官諭之 初九日 領相
朴淳上筭辭職 答曰 卿清慎雅操 愛人下士 正色立朝
允矣 鎮物之喬嶽 忠勤許國 展也濟川之舟楫 方切
倚任之志 詎容休退之告 速出治務 毋庸固辭 遣史官
諭之 二十日 大司憲李友直避嫌 臣意欲遞諫院而僚議
不一 請辭退待物論 弘文館上筭 請遞諫院及掌令
宋承禧等 李友直出仕 從之 二十一日 李海壽拜大諫
二十三日 禮曹判書鄭[○] 以被諫院重駁 上疏辭職 答
曰 卿別無所失 一時言官之言 不足介懷 速出供職 凡三疏不
從 二十五日 領相朴淳肅拜 以被重劾 不可在職爲辭 答曰
今聽卿言而許免 事體尤傷 仍引見 二十七日 司憲府啓韓
戴循私妄作 豈有無君不道之心哉 請停刑 答曰 韓戴乃宋
應漑之姪 爲惡無忌 至於此極 宋家一門 是戾氣所鍾 若
服其罪 猶於未減 不然 鞫未可已也 十月初九日 吏曹參議
成渾 上疏辭職 答曰 予雖不敏 何敢強屈爾志 責爾職事
只欲得聞啓沃 共濟時艱 近日鬼 之說 何足置齒牙間
哉 以爾道德 豈嫌於此乎 斯速乘駟上來 十三日 司諫院
啓 報恩縣監趙憲 愚妄刻迫 民多流散 請罷 答曰 前聞
此人善於治民 故不允 二十七日 吏判李珥入京肅謝 上引見
慰諭 仍教曰 予如漢元帝之爲君 不能斥遠小人 國幾亡矣
珥對曰 朴謹元 宋應漑 固邪人也 許筠則年少輕妄 其
才華可惜 非邪人也 此三人得譴太重 同罪之人 皆不自安
須從寬典 上曰 此事予已定之 卿不須言也 珥曰 譬如十人
作賊 三人獲重罪 而七人晏然 着紗帽行公 於王政偏頗
也 且此人等 雖放歸田里 豈能更爲濁亂朝政乎 且以

同罪之人 三人獨得罪無一人願與之同受其罪者 可見其無義氣也 上曰 予不知其盤據至此也 當其時 無一人立異者 假令當宋靖康德祐之初 必無一人死義者 是可歎也 珥曰 非如權奸當朝之時 若曰盤據 則不可也 一時自謂士類者 其論同然 是乃無識見而然也 彼輩自以爲士類故 雖成渾亦不饒之 士類所爲豈若是乎 然以奸邪 則不可也 奸邪之人 必探上意而巧中 彼輩則知上意不回而猶然固執 可知非奸邪也 大槩今之是西者 未必皆君子 是東者 未必皆小人 今者分別用之難矣 又曰 自古人臣得君行道 必如家人父子 讒言不得以間之 然後可以有爲也 近來年少輩 執朝權三十餘 年物極則反 今當總攬于上之時也 但官高者若主時論 則嫌於權奸 又其鄙夫則反附於年少輩以爲媒爵之計 此所以歸政於下也 必得重望鎮物者然後 可以付朝政而得其人難矣 如臣未厭人心 彼輩豈肯心服 成渾若上來則可以可否相濟 而此人豈能易致乎 上曰 既有卿矣予當悉任之 珥曰 當今人才眇然 文士中可用之人 尤爲難得 鄭汝立博學有才 此實可用但有凌厲之病耳 今者每爲注擬而不落點 無乃有讒間之言耶 上曰 固無毀譽 然此豈可用乎 凡用人不可徒取其名 必試用然後可知也 珥又曰 鄭逵可用 上曰 召之不來奈何 徐當更召之 珥曰 凡特召者 皆自上旨不敢承當 故不來 如成渾之不來 是矣 渾前則頓無官情 牢不就職 今則稍不如前之堅固 而但有病 不堪供職 若以閒官 兼叅贊官 或以特進官 入侍經可謂善人而是非 然至於置之死過矣 以無君不道爲罪名 責其招伏 所以不服也 上曰 若以予爲有 則敢爲如此之事乎 是無君也 假託前例 而實行胸臆 乃奸人也 非狂妄之人也 朴謹元壅蔽上下 猶趙高 戴則猶李斯也 政院託以蒙准 不爲卽納 疏章 亦是舊例 非謹元創開也 若破舊例則後必有謹元所爲也 又曰 主和平之論者 或以爲前日三司之人 皆可用也 臣意朝廷一朝廷 若並用此等人則議論多岐 終無歸一之時 不可盡爲復用也 三十日 吏曹叅議成渾入京 不爲肅謝 上疏辭職 上引見 渾請罷政院蒙准疏入啓之例 以防壅蔽之漸 命議于大臣以爲定例 十一月二十二日 特拜成渾爲吏曹叅判 十二月十四日 李增拜大司諫 甲申正月十六日 吏曹判書李珥卒 二月初六日 李山海以吏判肅謝 十一日 吏曹叅判成渾身病出謝辭職 答曰

頃失賢宰 寢不安席 方今共國政者 非卿而誰耶 勿遽
 爲退去之計再啓 不從 前兵使李濟臣 在義州獐山配所卒
 經筵官李友直啓請還給職牒 上命議于大臣 大臣皆以爲
 李濟臣 持身有清操 死後家無甌石之儲 且變起倉卒
 而乃能率殘兵 焚蕩賊巢 軍律甚嚴 士卒用命 雖有
 差誤之罪不可論以是律 請上裁 傳曰 李濟臣清操
 出常云極爲可嘉 人臣苟有清節 雖大罪猶當曲赦況其
 身已死者乎 職牒還給 十八日 尹根壽拜大司諫 二十
 一日 司憲府啓直提學李純仁趨合時好 以媒進取 素多
 物議 請遞 答曰 李純仁何事耶 回啓純仁乘時觀勢
 趨合取容搖颺未定 物議鄙之耳 答曰 純仁附於何人耶
 仔細回啓 回啓 純仁生疎迂暗 善於趨時 初附趙瑗 又附於
 潑至於李珥 乃其自少相善者而觀其冷暖 以爲向背 行
 已於此可知矣 答曰 純仁侍講不久 又不任事 予不知其爲
 人如何 故問之爾 依啓 二十三日 大司憲鄭澈 肅謝因
 上筭辭職 答曰 自許孤忠衆不與獨立敢言人所難 勿
 辭

三月初四日 傳曰 沈喜壽 予初見 固不知其爲何如人也 但其
 言辭頗詭怪 夫言者心之聲 因其言 可測其心矣 予於李珥
 身死之後 別無異待之事 而乃敢曰 待之之道 死生有異 想
 必自有其意云云 是陰試予深淺也 又曰 李珥排衆論而
 用之云 予之排之者 乃其奸臣構陷之邪說也 尚可曰排衆
 論也乎 至於庶孽許通事 則雖甚苟且 閱其祖宗田
 地亡在朝夕 爲是不得已之舉 珥豈預知其身之早死 而
 爲其庶子之所哉 今乃曰 人必以其子之故 而設此納粟
 之法也云 是泛託外人之說 實斥其所爲也 至於夢見
 竄謫之臣 形諸吟詠 隱然書入 無非陰術也 蟬噪之音 固不
 足數 而第人君用人之道 不可不辨之於早 大抵其爲人也 敏
 於言語 或出於偶然 是未可知也 然予意如此故 不得不言
 政院以爲何如耶 回啓 伏聞沈喜壽所達之事 非有他意
 平日景慕李珥誠心國事 不顧家計 身死之後 妻孥無依
 常懷痛惜之意 庶幾自上別示恩數 以酬其勞 而但言語
 輕率 不能裁度而已 少無他意於其間也 傳曰 知道 朝講
 領相朴淳所啓 李珥誠心國事 盡瘁爲期 不意身死 其
 愛君憂國之心 未得施設 誠可矜惻 似有追崇之典 傳曰
 議而爲之 大臣議請依朴淳啓辭施行 傳曰李珥予洞知
 其爲人 自下更無所達之事矣 官至贊成 其品已極 追贈
 何關 但其妻子向坡州又向海州云 今一路護送 永葬時諸

事顧護事言于其道

六月二十日 知禮縣監金瞻 曾往軍威縣 與縣監權應仁
 醉酒相諍 金瞻戲取軍威官舍雜物 因向安東 權應仁
 作通文 以爲大倘入縣官舍什物席捲而去 極其張皇 安
 東府使俞大脩 不知爲戲事 卽傳報列邑 不多日達于
 忠清道京畿江原道各邑 抄發民兵 戒嚴待變 京畿
 監司始聞其虛僞 啓聞其由 兩司請拿鞠 從之
 十一月 下教三公各薦賢才 朴淳薦辛應時 李山甫 徐益
 盧守慎薦李潑 金宇顥 韓準 白惟讓 尹先覺 鄭汝
 立 金弘敏 金晬 鄭惟吉薦尹先覺 權微 金晬 韓
 孝純 洪獬祥李大海
 乙酉五月念八日 義州牧使徐益上疏 論救朴淳 鄭[○] 李山
 甫 朴漸等 且論鄭汝立尊事李珥 而首爲背叛云 因
 借人言 並及盧守慎柳成龍等過失 且請釋宋應漑 朴
 謹元 許筠等三竄 傳于政院曰 觀此上疏 詭誕恍惚莫
 測 盖予之所謂賢者 李珥成渾也 故政此兩人者 必以爲邪
 也 但柳成龍亦一君子 予以爲雖謂之當今大賢可也 觀
 其人 與之語 予不覺心服之時多矣 豈有學識氣象如
 是 而乃爲巨奸之理乎 何物膽大者 敢爲如是之言耶
 至於鄭汝立之爲人 予數次相接 似是使氣者 而實不
 知爲何如人也 雖然汝立亦具四體 安有禮判指爲巨奸
 之理乎 必無是理 然汝立有通于李珥之書云云 則徐
 益之言 似爲有據矣 大抵人情紛紛 甚非美事 回啓 益
 之心果爲難測 成龍之爲人 自上旣已洞燭 臣等復何言
 鄭 汝立之通書 未知虛的 巨奸尙在之語 設或有之 益
 之於汝立 非得於耳聞 則何以知其成龍之爲指而有
 此言乎 以此推之 凡所云云 皆無可據 况以不近之說
 又及於盧守慎 其眩亂自恣之狀 尤無所不至 若無自上丁
 寧下教 則人心疑惑 無時可定 臣等不勝感激之至
 答曰 其疏辭頗爲可疑 鄭汝立之事 尤爲可疑 李珥
 賢 烏有聖人之理 而汝立謂之聖人 又以禮判謂之云云 汝
 立若發此言 是天地間一妖物 甚可怪也 至於李山甫雖
 質淳朴直 其才短矣 朴漸雖似謹厚 其學掃如 此二
 人者 久在近侍 其工拙 固不得掩 而益乃妄自推譽
 至以爲用前日手段 使言官 並將結舌畏縮 不得彈論
 以予見之 益之設心 險不可測 如此輩安知他日 不爲生事
 於朝廷 是可慮也 禮曹判書柳成龍 上疏辭職 答曰 若
 因此辭退 則鬼輩彈冠 適足以成其志也 勿辭 司憲府

啓徐益上疏 亂及朝廷之事 託爲人言 妄論是非 異日士林之禍 未必非此人啓之 請命罷罷斥 不允 司諫院上劄 論徐益設心陰險云云 答曰 見此劄辭 萬世不易之定論也 古人有言曰山有猛獸 藜藿爲之不採 朝有直言 奸臣爲之屏跡信哉 卿等但當盡心國事 如有可言事 當直言不諱 如益鬼輩 置之度外 獻納金權避嫌 啓曰 同僚欲劄論徐益上疏之非 而臣之所見 有異前者 三人既竄 李珣還朝 鄭汝立爲珣計 則當以和平鎮定 使無失中爲戒 而其書有曰 一二檢人 雖已竄遂 巨奸尙握朝論 樂禍之心 嚚然其未已 後日之禍 將有甚於今日 且焚坑之禍 迫在朝夕 此言果如何也 至於後日入侍筵中 則以不用前日之三司 歸咎於李珣 詆斥毀謗無所不至 若得其情 孰不以汝立爲無狀也哉 益初在南中 汝立議論無不知之 所以憤憤有此論說也 其意則主於和平 且言者不可深罪故 臣以僚議爲過中 勢不相容 請遞臣職 答曰 親見其書乎 回啓曰 臣目覩之矣 答曰 其書出於汝立詆斥李珣之前乎 其後乎 回啓曰 出於詆斥之後矣 答曰 爾則見其書 故以爲出於憤憤 同僚則必各有所見 故以爲託爲人言者 不妨也 但益之論汝立之事 設或雖是 其他則真邪說也 爾之以爲主於和平 則誤矣 但爾既觀其書 更無可疑然難測者人言也 蓋汝立之書 不近人情故也 退待物論 憲府請遞 從之 弘文館上劄 論徐益上疏之非 答曰 得見劄辭 深嘉謹直 此是不易之定論也 予復何言 所可痛者 爲一邊臣所玩弄 其辱甚矣 夫益之爲人 予嘗見之 固疑其麤厲之態 觀其辭章 陰謀詭秘設心陰慘 一以救解同類 一以排擯賢士 引攻擊之語 而脅制臺諫 使不敢糾劾官邪 試死義之節 而恐動君父 俾不得辨別是非 陽陳和平之策 實逞胸臆之術 一舉而有許多奸計 可謂鬼亦下矣 其布置能 而措辭巧 以此觀之 此人 必小人而有才者 如此之人 胡不可畏 予前日所謂 險不可測 又曰 生事於朝廷可慮者 以是也 第以人主之量 不可暴其情狀 故含容而不盡之耳 今觀人意 或有一種異說者 不得不明諭予意 使直臣無所懼也 大抵怪說紛紛 是鎮定者耶 醞釀者耶 玉堂爲予論思尙有所懷 今後極言不諱 傳于政院曰 鄭汝立通書李珣之事 是乎 承旨有見之者乎 回啓 汝立通書之事 閭巷間有行言 而臣等無目覩者 且聞其後汝立有絕交書于李珣 而臣等 亦不得見之矣

六月十六日 李景震上疏 畧臣聞 鄭汝立於筵中 詆斥臣叔父李珥 臣驚怪 自怪自言曰 天下安有是理 他人而毀之 則無足怪 如汝立必無是理也 臣閱家書 得汝立所遺叔父書 有曰自從者 慍于群小 狼狽出國 臥不安席 食不甘味 思欲披肝歷血 極言奸人媚疾誤國之狀 既而復思 則方以無狀 見棄於君父 義不强顏以言 而復有成丈爲之上章陳辨 立雖不言 亦無恨矣 繼聞成丈亦遭讒謗 裹足還山 焚坑之禍 迫在朝夕 忠憤自激 不可復止 方欲糾合同志 抗章北闕 旋聞聖心開悟 如日中天 魑魅之屬 將自退伏 又自隱忍而止 以今觀之 一二憮人 雖見貶逐 巨奸尙握朝論樂禍之心 囂然其未已 不幸而天不悔禍 則恐後日之憂 將有甚於今日 而不可救也 目今朋友 十分可恃者 甚少 區區所望於尊兄者 此前尤切 其志亦可哀也云 此乃癸未九月之書也 珥還朝後 又有一書 略曰 吾君獨排群議 至拔尊兄於衆惡之中 使爲蒙宰 任之不疑 此誠漢唐以來所未有之盛舉也 凡在聞見 孰不感激 而立之喜有甚焉云云 自茲距珥之歿 纔間一月 豈有絕交書乎 答曰 汝立所爲 不近人情 故予以爲或出流言 厥後聞之 則果非虛誣 已教反側無狀也 且在我無絕之道 則人雖絕之 有何傷乎 二十二日 大司諫崔滉啓曰 鄭汝立通于李珥之說 既有云云 而及其入對也 又有云云 其心雖自云 覺今是而昨非 其亦未免隨勢變遷 朝野嗤笑 人莫不知 而諫院之劄乃曰 出於往來行言 實無所據云 是欲護汝立 而欺其心也 曾何異於面謾之山甫乎 朝廷之不靖 實由於如此等事 不可與同僚相容 請罷臣職 答曰 勿辭退待物論 弘文館上劄 請並遞崔滉 韓顥 從之

七月 前成均博士鄭滌 上疏論時事 傳于政院曰 觀此上疏 以予爲好惡不一 抑揚太過 不知指何事而然也 予初無好惡與愛憎 視群臣如一家 惟賢者舉而用之 此朝廷之所共知也 惟其不學無識 故時或有自是之病 其偏疾邪人 且倚戚里爲勢者 則尤不喜也 李珥成渾 惟茲二人 實乃邦家之彥 舉朝之所共推薦者也 故予推誠而責任之 屈已而聘致之 非以偏私而用之 非以己見而舉之 噫 自古安有不禮其賢臣者乎 及其流言作媒 狙擊轉成 回互其辭說 陷之太甚 至於玩弄君父故 予怒而斥之 若其數三輩之交結匪人 挾勢縱恣 則尺童皆知而國人之所嗤罵者 第以人君之度 包涵不露 姑取其可用處 並驅而任使之 而心實鄙之 本非以此爲是也 及至於今日 人

言屢發 公論不可遏 則予安得以私之哉 惟其予心 無偏無我 故是者是之 非者非之 此豈抑揚不一哉 然假使一人之身 而有是有非焉 惡而知其善 好而知其惡 是曰是 非曰非 斯乃好惡之天理 不可以人君私意爲也 若以爲是也 則與其非者而是之 以爲非也 則與其是者而非之 此乃偏黨險詖者之所爲也 渠欲使予而爲此乎 近來紀綱不立 邪說充塞 陰試君心 慢侮無忌憚 不任痛惋也 他日釀成敗國者 必鎮定之說誤之也 宜知予意

八月十八日 兩司論啓 青陽君沈義謙 前日植黨朋比 胎禍士林 外而朝廷政令 內而宮壺舉措 無不指揮 方居父喪 規爲起復 假稱內旨 毒殺弟妻云云 請命罷職 答曰 處一人之是非 初非難事而緣茲朝廷紛拏 十年不決 其間所傷 何可量也 異哉前古所未有也 然若至於加罪 則不穩 又曰交結某某人 不可不使予知之也 當初源頭不明 卞而定 故做調停鎮定之說 惑亂上下之心 終致醞釀誤國 此雖由朝堂之無人 而豈非後車之明鑑乎 况身爲諫官 理當直言而畏懦不盡 責有所歸 然今日下問者 非有他意 只欲知之 以爲他日處事之權度耳 盖古人所謂傷於虎者也 於是兩司 以義謙與朴淳 鄭澈 李珥 朴應男 金繼輝 尹斗壽 根壽 朴漸 李海壽 辛應時等 結爲死生之交 權勢相倚 濁亂朝廷 窺覘形勢 將欲何爲云云 又曰如成渾 亦受其籠絡 終使朝廷 上下携貳不靖 無非此人之釀成 請定其罪 答曰 不可曲全之後允之 其時大司憲李杲 執義李由仁 掌令韓顥 洪仁憲持平沈岱 李時彥 司諫李養中 獻納鄭洪男正言趙仁得 宋言慎 只大司諫李潑在外未及來 二十五日 大司諫李潑肅謝後啓曰 頃日本院 論沈義謙之罪 自上下問交結之人 則爲諫官者歷數無遺 使聖上盡知其輩流可也 判書洪聖民 副提學具鳳齡 皆是義謙之親友 與被斥者何異而獨不歷數 非事君之道 不可相容 請辭退待物論 兩司因此俱避嫌 玉堂請並出仕 從之 二十七日 生員李貴上疏 論臺諫等以李珥成渾 爲交結沈義謙 欺罔啓達云云 答曰 觀爾上疏 汝言皆是而臺諫之並舉珥渾者 或出於偶然也 以義謙爲是者 邪論而以珥渾爲非者 亦非正論 故予曾爲言曰 若以爲是也 與其非者而是之 若以爲非也 與其是者而非之 此乃偏黨險詖者之所爲 予意盡出於此矣 李貴再疏 答曰 知道 海州生員趙光玆等上疏 爲李珥成渾伸冤 枉云云 答曰 具見爾等之意

丙戌十月二十日 公州教授趙憲上疏 極陳李珣成渾學術之正 忠國之誠 又斥時人妨賢誤國 累萬言 上留中數旬不下 憲又上疏極論答曰 因求言陳疏之誠 良用可嘉 二十二日 副提學丁允福等 上劄 論趙憲疏辭之謬妄 答曰 大槩與其侈無窮之口舌 爭無益之是非 莫若反己而自者幸矣 以玉堂夜深呈劄 傳于政院曰 昨夜三更 忽聞中官振鈴 被衣而起 自念夜深漏靜 禁門已鎖 安得有秦事 非有警急 必是邊報 趣左右出而應之 則乃一紙浪說也 此固非必於丙夜烏鼠皆眠之時 可上之書也 玉堂雖急於進言 不撥事體而政院 在出納之地 所當取其緩急 論以事體 姑待翌朝而上進 夫誰曰不可 今乃迷昏顛倒於驚夢之餘 惟玉堂傳令是趣 此果穩當乎 後日若踵今習 必有罰責 且宮門未昏而闔 已明而開 厥有其意 誰以萬乘之尊 見拒於守闕之吏 今之爲臣僚者 則欲使出入自如 隨手任意 視公門曾不若閭里之門 殊異於古之人矣

十二月初三日 領相朴淳以往浴溫井 在永平村家 上疏辭職 答曰 見卿上疏 卿以斂跡而不歸 其於自處得矣 一時風氣之象不好 前所以催卿上洛 不使顛仆于草莽之間者 非爲卿也 有旨到日 卽日上道 來居于京 斯速上來 十一日 趙憲以宋應澆葬其父母時 用隧道 僭用天子之禮云云 宋應澆上疏伸寃 傳曰 自有公論 如何輒來紛爭 使朝廷爲訟場 本當罰治 姑不究丁亥

三月初六日 儒生趙光珪 李貴等草疏極論 其師李珣爲時輩所誣 歷詆朝臣 累萬言未果上 珣之兄子李景震 以其名代呈 上問曰爾疏有曰浮躁好進之徒 爭起而傳會之 其時出入義謙之門 曉夕相逐 奴顏婢膝之輩 迎降而鑽入者 不爲不多 又曰 前日附義謙之徒徒 一時納款於東人 倒戈以攻義謙云云 指何人耶 事君無隱古之道也 爾可悉數以對之 貴以文字未能詳實 請面對 傳曰 倉卒如不能書啓 則姑退而書啓 李貴書啓 亡師李珣 平生赤心憂國 一忤時論 橫謗百出 此臣所以不計利害 惟以暴白珣之本心爲志者也 若使珣之心事 少有發明 臣雖萬被誅戮不計也 所謂浮躁好進者 白惟讓 盧稹 宋言慎 李好閔 盧稷此輩 若歷陳則豈止於此數輩乎 前日趨附義謙 失勢之後 反攻義謙者 朴謹元 宋應澆 尹毅中 此輩不足道也 又有相識非珣之比者 李山海也 以識義謙爲罪 則何不攻山海而攻珣也

其不攻山海者 徒以不忤於時輩故也 山海與珥 自少故
 舊而無一言救珥 此臣之所大憾也 珥之不與義謙締
 結 非他人知之 此人所深知也 山海贈義謙詩曰洛下春來
 重見札 山蹊夜黑慣相迎云云 此果不識義謙者乎 此臣
 所謂曉夕相逐者也 所謂奴顏婢膝者 鄭熙績也 十一日
 吏曹判書李山海啓曰 小臣壬戌春 入玉堂 沈義謙癸亥
 入玉堂 甲子春 又爲書堂同番 自此同直於玉堂書堂者 不
 久矣 不曾追逐 又不參其論議 故甚被疎忌 常詆臣曰
 李某非玉堂 乃土堂也 此則人所共聞也 然而義謙爲
 人極厚 凡在同朝之士 無不欲相結 則心雖忌臣 而豈不
 欲外示慙歉乎 臣於丙午年丁憂時 義謙爲開城留守
 因人致慰 及爲湖南方伯 求別詩於臣 且躬到臣家 臣或
 諱而不見 臣適仕罷暮還 義謙伺候於臣家後洞山
 路 而迎之 厥後 又乘昏來見 赴湖南後 伴書 又追索別
 詩 臣不敢堅拒 竟以一詩答之 其贈義謙之句 大槩是
 眞述也 被人醜詆 臣實自取 請賜罷斥 答曰 勿辭
 大司諫李潑避嫌 極論前日與李珥 書疏往復 論議始
 同而終異 今者李貴 摺撫往復之書上疏顯被詆斥 請
 辭 答曰 大槩人臣 不可有反覆之態也 退待物論 諫院請出仕
 從之 潑請辭遞 初九日 李山海上疏辭職 答曰 予嘗自
 詫得人 以爲國家之不至顛覆者 能用卿等數人故耳 安可
 以一書生之言 有所疑阻 轉撓於其言乎 原其人之志
 不過痛厥師之被誣於時輩 叫閭陳訴 亦無害也 卿但體
 予委寄之意盡心國事而已

十月二十一日 上以日本國 廢放其國王 立新君 乃篡弑之國 不
 可接待其來使 當以大義開諭入送 命從二品以上議其可
 否 秘密入啓皆以爲化外之國 不可責以禮義 使臣出來當
 依例接待云云 十一月趙仁得拜大司諫

戊子正月 前縣監趙憲上疏 論及盧守愼 鄭惟吉 柳堧
 李山海 權克禮 金應南等 黨比病國云云 且論朴淳 鄭
 澈之賢 見棄遐荒 宜速宣召 又論宋翼弼 徐起等 俱
 有將帥之材云云 備忘記曰 今見趙憲之疏 乃人妖也天之
 譴告至深 不勝兢惕 豈非寡昧於賢相名卿 平日不能待
 以至誠 委任不專 有以致此耶 尤不勝慙慙 疏不可不下
 而此疏不忍下一下所損甚多 予寧受過 已焚之矣 願
 史官大書予過 以戒後世足矣 司憲府啓請云 趙憲
 削去仕版 答曰 但當置之而已 不足與較 弘文館上筭
 請罪趙憲 答曰 予雖不敏 固非一憲所動 渠亦豈可以其

說之得行乎 第其心術有在 正欲傳其疏辭也 予焚其疏 乃焚其心也 若以焚疏爲非 則予當甘心受責 後當爲戒 若縷縷相較 與之對辨 則恐反爲朝廷之羞 徒傷大體 甚非予所喜也 當更加留念 京江上至廣津 水色黃濁 如血數日

己丑十月初二日 黃海監司馳啓密狀 是夜命召三公及六承旨入對 復命入直都總管及玉堂上下番皆入侍 獨檢閱李震吉命勿入侍 榻前以黃海道秘狀 下示諸臣 乃安岳載寧等官上變事也 大槩全州居前修撰鄭汝立謀叛逆 爲魁首 其同黨安岳趙球密告云 分遣義禁府都事于海西湖南等道 命下李震吉于義禁府

初七日 義禁府都事柳湛馳啓 受命馳到全州府 發兵圍捕鄭汝立家 則汝立知幾 已脫身逃竄矣 初八日 黃海道罪人等拿來 命於闕庭鞠之 十七日 宣傳官李用濟 內官金良轉等 以搜討鄭汝立 馳到全州 聞汝立與其子玉男 及同黨安岳校生邊汜 朴延齡之子春龍 匿于鎮安竹島 縣監閔仁伯領官軍 跟捕圍住 則見汝立三賊環坐巖谷間 仁伯欲其活擒 諭以上命 戒官軍勿逼 汝立先以刃斫邊汜 卽死 又斫其子玉男 刃接其頸 不死仆地 仍以劔柄植地 自就刃上割頸 聲如牛吼 官軍急進 已無奈何 獲二彊屍二生賊以來 二十日 上親鞫玉男 春龍 朴延齡等 俱就服與汝立同謀叛逆事情 磔于軍器寺前 又磔汝立死屍 命百官序立

十一月初三日 生員梁千會上疏 論鄭賊與朝紳交密者 頗多 今皆晏然行呼唱於道路云云 初四日 禮曹正郎白惟咸上疏 論李潑 李沽 金宇顥等與逆賊交通云云 初七日 兩司論劾 右議政鄭彥信 吏曹叅判鄭彥智 與逆成親厚請罷 從之 初八日 有政 鄭[○]拜右議政 成渾拜吏曹叅判 白惟咸爲獻納 崔滉爲大司憲 十二日上親鞫鄭彥信 鄭彥智 洪宗祿 鄭昌衍李潑等 以出於汝立之姪 鄭緝之招也 彥智宗祿 潑 并遠竄 彥信中道付處 昌衍放送白惟讓 李沽 亦遠竄

十二月初四日 兩司啓及第鄭彥信 當其變作之初 榻前面對之時 已有營護逆賊之意 及推鞫之時 亦有終始眩亂之迹 至以推治元告爲言 欲使獄事稽緩 請命遠竄 及第任國老附會彥信 多有營護逆賊之迹 獄事疎漏 皆由此人 豈可止於削奪官爵 請命門外出送 并從之 初六日 獻納白惟咸啓 行護軍洪汝諄爲人 陰險猜忌貪

婪 曾爲守宰 培克無厭 刑杖濫酷 殘傷百姓 兇威所極
 蔑視道主 人之視之 有同豺虎 其包藏伎害之狀 實是朝
 著間一賊 請罷職不敘 不允 初八日 傳曰 故執義李敬中 曾
 爲吏曹佐郎時 當逆魁盛有名稱知其爲無狀 極力排之 不
 通清顯 竟被論劾其先見之忠 不下古人 其追贈判書 賜
 美諡以褒之 初十日 傳于左相李山海 略曰汝立交結之人
 論之誠是矣 近日氣象 似有波及之漸 其論議過中之人 使
 之裁抑 或請面對云 持平黃赫避嫌啓曰 自上下相臣
 之教 其欲鎮定之意至矣 第今者逆賊 遽出於一時所謂
 名流 其平昔締結推獎 助其聲勢 釀成此變者 揆以
 王法 自有其罪 言官據所聞 次第論列其波及之患 臣等
 亦嘗有慮 猶恐一人之或非其罪 況四五年來 朝著不靖 收
 司之律 一節深於一節 至於師友姻婭之親 並被中傷
 人皆扼腕 而不敢言久矣 當此更化維新之始 孰敢以言論
 同異 乘時傾軋 以自陷小人之覆轍也哉 其間如有貪虐民
 物 大段無狀之人 則不得不隨罪按劾 臣欲具由陳達 通問
 大司憲崔滉 答語不遜 待諸僚如郎吏 臣雖冒忝 請辭職 答曰 崔滉之意 斯爲得體 汝何敢爲如是不靖之言
 若然則必生
 事 勿辭 退待物論 大司憲崔滉 掌令尹暹 沈喜壽 持平
 申礪 皆避嫌而退 盖赫欲駁洪汝諄 而滉不從也 十一日
 執義成泳啓 請崔滉黃赫並出仕 答曰 黃赫遞差 崔滉以
 黃赫遞差 未安再避 答曰 赫之言 不過數行 而其心已露
 予安得不遞 十二日 校生宣弘福家 搜出文書 有與逆賊
 鄭汝立相通之迹 拿問就服 處死 弘福招引李潑 李洁
 白惟讓 又云 李震吉得讖書於柳德粹處 命拿鞠
 德粹訊斃 李潑 洁 白惟讓等 發向配所 再被拿鞠
 並死於杖下 十四日 全羅道儒生丁巖壽等上疏 論李
 山海 柳成龍 極其詆斥 上引見山海成龍 慰諭之 命
 拿致巖壽等于王獄 後因臺諫所啓 及館學儒生等
 上疏論救 更命勿鞠 十五日 趙憲自謫所放還 中道上
 疏 湖南儒生梁山璫等上疏 大槩皆指斥時宰也 傳曰 此
 數人陳疏 盡斥朝臣 而獨贊右相鄭○以下數人 自以爲
 直言 而反露其情狀 可哂也 趙憲奸鬼 尚不畏戢 輕蔑
 朝廷 益肆無忌 此人必將再踰磨天嶺耶 又傳曰 趙憲奸
 鬼也 其心甚慘 其得免顯戮幸矣 而係于言路 又經
 大赦 故特命放送 而如此之人 不稟上旨 汲汲收斂 眩亂
 人心 極爲非矣 其日仕進吏曹堂上遞差 判書 洪聖民也
 十六日 特旨 以柳成龍爲吏曹判書 權克禮爲禮曹判書

傳曰 私奴宋翼弼兄弟 蓄怨朝廷 期必生事奸鬼趙
 憲陳疏 無非此人指嗾云 極爲痛惋 况以叛主逃竄不現
 尤爲駭愕 捉囚窮推事言于刑曹 兩司廷論 請上尊
 號 獻納白惟咸 獨以爲不可 避嫌 因呈辭 遞職 此在十三日
 二十日 弘文館上筭 請上尊號 答曰 玉堂與予講學 今幾
 年矣 尙未知予意乎 今此之事 只是承奉祖宗指揮 初無
 片功可紀而至爲過當之言 有若眞有大功者然 慚負
 天地 貽譏後世 非細事也 設使萬一謂予稍有微勞 亦不
 可爲此不必爲之事 三代則已矣 如漢高光武及我高皇
 帝 再造區夏 功莫與京 未聞有稱號之舉 惟唐德宗
 輩 乃敢爲之 及其顛沛 反爲削號之不暇 至今千載 使人
 鼓掌而笑 予雖不淑 稍知書史 亦安敢迫於群下 以負五
 心哉 玉堂諸儒 宜體予意 斯速停止
 庚寅二月十一日 上大殿尊號曰 正倫立極盛德弘烈 中殿
 尊號曰 章聖 十二日 先是 上命朴忠侃 李軸以下 及推鞠諸
 臣等 并錄平難功勳 兩司論其太濫 持平尹洞啓辭 有
 曰先朝錄勳 亦有改之於十年之後者 曷若正於厥初之爲愈
 哉云云 物情駭之 十八日 傳于大臣曰 中樞盧守慎 甲申
 年在政府 承命薦賢 乃以金宇顒 李潑 白惟讓 鄭汝立
 薦之 披見此薦 不覺髮豎 自古有如此大臣乎 此卿 予
 素優待 而興亡所係 予不得掩覆 從朝廷公論處置 十
 九日 左議政鄭[○] 右議政沈守慶回啓 伏覩聖教盧守
 慎事 不勝驚悚 守慎蒙不世之遇 被無前之寵 所當盡心
 王室 爲國薦賢 而其所薦者 率多逆賊流輩 方邪議
 橫行 釀成逆豎聲勢之時 未嘗以一言 禁戒制伏 而一聽
 時輩作弄 反自薦舉 其罪固難逃矣 及其變作之後
 猶不知待罪 而猶以歇后數語 泛然陳啓而退 其衰耗甚
 矣 然不過知不明 爲一國氣勢所壓而然也 况守慎以四
 朝舊臣 老病已甚 方以腫脹 命脉如縷 自上待舊臣
 不可不存始終之義 宜示以寬容 答曰 知道 大司憲洪聖
 民 大司諫李山甫合啓曰 盧守慎承薦賢之命 乃以逆賊
 應命 當時逆節 雖未盡露 其兇譎陰邪之狀 人或有的
 知者 而至以爲薦 助成逆豎陵駕之心 未嘗以一言折其
 萌孽 而反爲之推引 及乎變作之後 不以誤薦引咎 以
 從容處置爲辭 其終始誤事之罪 大矣 請爲削奪官爵
 答曰 罷職 連啓三日 不允
 四月初一日 司諫院啓 汝立包藏禍心 非一朝一夕之故 而銓
 曹曾擬金堤郡守 黃海都事等望 以副其願求之計

幾至變出不虞 其時堂上郎廳 並罷職 答曰 騷擾 不允
 (李山海爲判書時 擬金堤望 李陽元爲判書時 擬黃海都事望
 時正言黃慎主此論 初以爲公罪 罷推而止 辛卯禍本由於此)
 五月二十四日 特除黃慎高山縣監 李山海辭職 批答慰諭備至
 六月十九日 傳曰 鄭彥信欲斬告者之說 公然發說 事之
 駭愕 莫甚於此 而朝廷無一人言之 因儒生陳疏 始得聞
 之(全州梁誦上疏) 是亦可愕 彥信身爲大臣 敢肆欺罔 其兄彥
 智 卽效之 此兩人 其心無君 不勝痛憤 推鞠廳回啓 彥
 信此說 傳播已久 遲延不以上聞 臣罪大矣 彥信之說
 旣已現發 不可置而不問 卽招他大臣議罪 傳曰 依啓
 上命 招推鞠同參大臣 及禁府堂上 問彥信發言 廳聞與
 否 金貴榮以爲左耳偏聾 不得聞之 李準以爲坐處稍遠
 不得聞之 李山海以爲日久 不能記憶 黃海監司狀啓 回啓時
 彥信之言 似發於此時矣 兪泓洪聖民 皆以爲聞之 大
 司憲洪聖民啓曰 彥信發言時 臣實抗之 李山海亦言 其
 不可 顧語臣曰 吾與判書之意 同矣 彥信再三唱說 則山
 海稍屈曰 更思之 以直截之事言之 則右相之言 是矣 彥信
 欲請推黃海監司 臣力言其不可 其事遂寢 今者山海
 之啓 有曰不能分明記憶 此必山海大病之餘 昏忘而致此
 也 然不能無怪焉 天日在上 鬼神在傍 欺罔君父 何以爲生
 臣有此懷 今始陳達 與彥信 厥罪惟均 請伏司寇之刑 答
 曰 卿旣觀見 則初不卽 而今乃因儒生之疏 多費辭說
 甚不合理 凡可否之際 人言之或左或右 不是異事 若其
 彥信之言 則固爲悖逆 而豈可因一人之言 而將欲橫嫁於
 他人之啓乎 予實未曉卿意也 旣爲辭職 依啓遞差
 二十日 李山海呈辭 傳曰 卿何有此呈辭乎 百計圖卿之
 態 予已知之悉矣 雖萬人攻之 可也 吁 卿去 則他卿 亦不
 能自全也 是豈美事 卿勿復呈辭 速爲出仕 則事多悔矣
 不然 則人必有悔之者矣
 辛卯二月二十九日 吏曹判書兪泓 叅判李增 因推考 命
 遞之 叅議李德馨病 未肅謝 命招爲政 不來 特旨
 以右相柳成龍 兼吏曹判書 崔興源爲吏曹判書 副提
 學李誠中爲忠清監司 行護軍李海壽除驪州牧使
 海壽曾守驪州 瓜滿而遞 今再赴
 閏三月初六日 司憲府啓 吏曹正郎柳拱辰 人物鹿庸
 檢閱李春英 爲人浮妄 出入宰相之門云云 請並罷職 從
 之 十四日 兩司合啓 領敦寧鄭[○] 擅弄朝綱 裁制
 一世請罷 從之 十六日 傳曰 古者罷黜大臣 榜于朝

堂 所以昭示罪狀于國人之耳目 而懲後人也 今此鄭[○]
罷職 承傳依古事 榜示朝堂 襄陽 三陟蔚珍等
地 有蟻蟲蔽海而出 瀾滿海岸 圍合如戰 有生氣者 輒
飛去 五月 善山地人家 有雀小如柳葉 產雛如老鴉
大 五色爛然俱備 既長 飛去固城山中 亦產白雉 皆慶尙
監司馳啓之
六月二十二日 爲都目政 以前舍人白惟咸 前正郎柳拱辰
並擬學官 自上震怒 以爲罪重之人 擬于師長之望
欲試上意淺深 問何郎官出言擬望乎 堂上難於現告
再三詰問然後 以正郎尹暎先出言爲對 上命下義禁
府推考 削職放送 二十三日 大司憲李元翼 執義金
功在外 掌令趙仁得 尹覃茂 持平李尙毅 鄭光績 大司諫
洪汝諄
司諫權文海 獻納金敏善 正言李廷臣 尹擘
等合啓 鄭[○] 白惟咸 柳拱辰 李春英等 交相朋比 濁亂朝
政 欲陷異己之人 教誘儒生上疏 名卿士流 驅入逆流
欲盡殲滅云云 請並遠竄 從之 鄭[□]配晉州 白李初配
西道 上命移配 於是 晉州改以江界 白惟咸竄慶興 柳
拱辰竄慶源 李春英竄三水 南部幼學柳謐家庭
中 忽有黑物遍布 就視之 則黑蟻也 死者相藉
或斷頭 或折腰 或有白翼黑身者云 二十五日 兩司合啓 右贊成
尹根壽 判中樞洪聖民 驪州牧使李海壽 襄陽府使張
雲翼等 黨附鄭澈 引進奸邪 請並削奪官爵 門外出
送 從之 後 洪聖民于富寧 李海壽于鐘城 張雲翼于
穩城
七月初二日 兩司合啓 兵曹判書黃廷彧 承旨黃赫 柳根
戶曹判書尹斗壽 黃海監司李山甫 司成李洽 兵曹正
郎任鉉 禮曹正郎金權 高山縣監黃慎 司果具
等 黨附鄭[○] 傷人害物 且論 廷彧父子 橫恣貪濁 請
並罷職 上以廷彧赫 風聞未必實 斗壽寬厚有才智 根壽
文學之士 可惜 不允 餘皆依啓 初五日 先是 湖南丁巖壽上疏 指
斥李山海 柳成龍等 平日與逆魁交厚云云 上招李柳
入對慰諭 以巖壽等 連名參疏者多 不可盡罪 其名在上
列者十人 命拿致王獄推鞠 兩司論執不可 太學生等 亦
上疏論救 得釋 至是兩司論劾 其時臺諫 承權奸指嗾
論救巖壽等 請並罷職 上初以許多人並罷騷擾 不從
後依啓 其時大司憲崔滉 執義成泳 掌令沈喜壽 尹
暹 持平申礪 禹俊民 大司諫李增 司諫吳億齡 獻納

白惟咸 兪大進 正言姜燦 李洽也 十七日 傳曰 奸臣鄭
○所構陷排斥者 如有其人 並收斂擢用 二十日 義禁府
都事李台壽 行到順安 馳啓 鄭○病重 不得遽程押
去云 傳曰 李台壽不畏朝廷 押去奸賊不嚴 任意自行
徘徊留連 拿鞫 遣他都事押去 鄭○賦性 狡猾奸毒
既到配所 交通雜人 未知作何等罪狀 嚴加圍籬 可也
七月初八日 兩司連啓 請罪尹斗壽黃赫 又啓 上護軍
朴漸 黨附鄭○ 爲吏曹參議 汲引儉邪 布滿要津
助煽兇焰 請削奪官爵 忠清監司李誠中 以士類中
人 往來鄭○門下 與聞謨議 請罷職 舍人禹性傳 好
生詭異之議 脅持公論 使不得行 且黨護鄭○ 請罷職
黃赫得罪朝廷 國婚不可下行於行若狗彘之家 請改
定 答曰 尹斗壽 黃赫 已罷 不須遠竄 朴漸李誠中 依啓
禹性傳素多人言 出於賊招賊札者 非一 此人近十餘年
徘徊於外 頃者一再入侍 爲人甚陰險 且黨護鄭○云
不可止罷其職 削奪官爵 婚事 匹夫不可失信 况千乘
之主乎 不可改卜 尹斗壽後依啓遠竄 黃赫削黜
李誠中爲副學時 上筭論建儲事 禍本由此

[현대역]

관시록

○ 1683 정월 2일. 이징, 최영경을 지평으로 임명하고 안자유를 대사헌으로 임명하고, 22일 이발을 대사간으로 임명했다. ○ 병조판서 이이(李珥)가 몸이 아파 출근하여 사직을 청하니 답하시기를, “우리나라 병력이 실로 전조에 미치지 못한데다가 평생 태평을 누리 병정(兵政)이 해이해진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이를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말길 사람을 얻지 못했는데, 경이 경장(更張)을 하고 기강을 고치겠다고 하여 전후 간곡한 말을 해왔다. 이제 능히 기모(奇謀)를 발휘하여 유래해온 폐단을 모조리 고치고 양병하는 법규를 만들어 준다면 국가에 다행이 될 것이니, 경은 노력해서 병 조리를 하고 공무를 집행하여 일을 다스리고 사직을 말라.” 했다. ○ 함경감사 정철이 절하고 하직하면서 상소를 하니 답하시기를, “기특하도다, 경의 말이여! 이제 경이 멀리 조정을 떠나게 되므로 이렇게 충성스럽고 간곡한 말을 하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유념을 하리라. 가서 직무를 잘 수행하라.” 하였다. ○ 2월 7일. 북병사 이제신이 사람을 달려보내 아뢰기를 경원의 변호가 작란을 하여 경원과 아산보를 포위했다고 했다. 왕이 삼공과 비변사 당상관들을 불러들여 보시고 논의한 끝에 파산 무신인 오운과 박선을 기용하여 조방장을 삼아 용사 팔천 명을 거느리고 우선 달려가게 하고 경기감사 정언신으로 우참찬 도순찰사를 삼고, 이용으로 남도병사를 삼고, 김우서로 방어사를 삼았다. 9일에 적이 경원과 ∞원을 함락시켰다. 사실이 알려지자 ∞∞∞∞부사 김수와 판관 양사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진의 앞에 효수해 보여 군율을 세우라고 명했다.

○ 대신들에게 전교하시기를, “전일 경등으로 더불어 대면하여 논의할 때에 혹은 □한 이유로 ‘변호가 결코 배반할 리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 적세를 보니 변호가 배반한 것이 의심이 없다. 육진을 호인들로 울타리를 삼은 것은 비록 그 사려가 심원했다고 하지만 팔쪽 밑과 겨드랑이 아래의 우환거리를 양성한 격이 되었으니, 어찌 다만 시운의 불행으로만 돌릴 일이겠는가? 그런데 육진이 변호의 막이가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지키기가 어려울 터이니, 그들 중에 우리나라에 성심을 바치는 자는 그대로 어루만져 주고 배은망덕을 하는 자는 군사를 내어 토벌을 하여 한번 노여워하는 위엄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만약 죄를 묻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재앙이 오늘보다 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들의 죄악을 성토하고 우선 토벌을 하여 그들 소굴을 소탕한 뒤에 그중 순종한 자들을 골라 다시 번병(藩屏)을 만들고 은위으로써 어루만지는 것이 좋은 방책일 것이다. 논하는 자가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유생들의 말이다. 반란하는 자가 있는 데 토벌하지 않고 능히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했다. 회계하시기를, “앞드려 성교를 받자오니 참으로 시의에 적합합니다. 북로의 흉역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그냥 놔두고 그 죄를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순찰사로 하여금 본도의 병력과 군량을 헤아려 보게 한 뒤에 천토(天討)를 행하게 하소서. 또 북병사 이제신은 비록 재략이 있다지만 실은 서생이라서 혼자만 가게 하기는 어려우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김우서가 여러 번 국경수비의 임무를 맡은 바 있고 재지도 출중하니 우서로 방어사를 삼아 즉각 절제의 곳에 달려가서 구원케 함이 좋을 듯하온데 어떠하온지요?” 했다. 전교하시기를, “계한 대로 하라.” 하였다.

○ 12일. 병조사목에 ‘육진에 자원하여 가서 적을 방어하는 자는 만 3년이 되면 서자도 과거의 응시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공사천은 양민으로 만들어 주되 사천을 잃은 집에는 공천을 대신 주기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을 양사가 거행하지 말기를 청하여 그 말을 따르셨다. ○ 13일. 비변사가 계하시기를 “이제신이 서생으로서 변방의 변에 대응하기에는 방략을 조치함이 소루함을 면치 못

하니 청컨대 파직을 시키고 김우서로 대신케 하소서.” 했다. 전교하시기를 “체직시킬 필요가 없다.” 했다. ○ 북도의 병사가 사람을 달려보내 계하기를 “적이 훈융진을 포위함에 첨사 신상절과 온성부사 신립이 역전하여 적의 수급 50여급을 베고 쫓아 강을 넘어가 부락을 분탕했다.”고 했다. ○ 비변사가 계하기를 “이제 북병사의 계를 보니 이번 훈융진의 싸움에서 신립이 용맹을 떨치고 역전하였다 하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마땅히 먼저 포상하여 전사들을 격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병사가 우선 응원병이 오기를 기다려 반란한 호병들을 토멸하려고 포치를 해두어 군세가 점차로 확장되고 있다 하니 타인으로 대신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교의 체직치 않으신다 함이 실로 사의에 합당하였습니다.” 했다. 또 계하기를 “김수 등이 복패한 죄가 있으나 주장의 명령으로 즉시 형벌을 시행해버렸다면 할 수 없으나 이제 주장의 명령으로 공을 세워 보라 하여 외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의 머리 ○○○급을 베었으니 비록 공이 죄를 속할 수는 없지만 만약 조사하여 국문해 보지도 않고 문득 정상참작의 형벌을 시행한다면 군의 사기를 상할 우려가 있을 듯하므로 신등이 동의하여 감히 계하나다.” 했다. 그러나 윤희치 않았다.

○ 14일. 전교하시기를, “이제 조정의 계획을 보니 전도되고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경원의 한 부가 적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도 한 가지의 기발한 꾀를 내서 천리 밖의 결승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적을 물리쳐 백성을 편케 하고 위엄을 세워 먼데 있는 적을 굴복시키지는 못하고, 그저 성을 함락당한 장수만 구해주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병사를 바꾸자는 것도 그렇다. 비록 그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김우서가 기왕 방어사가 되어 정도의 임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았으면 이제신이 비록 군사 일에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김우서로 더불어 기각의 세를 이룬다면 저절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어늘 쓸데 없는 말로 요동질을 하여 경솔하게 파직을 청한단 말인가? 설사 제신에게 죄를 줄지언정 지금이 어찌 그럴 때인가? 그래서 내가 따르지 않았던 것인데 나중에 저녁의 보고를 보고는 그제야 ‘주상의 말씀이 윤택했습니다.’라니 그 하는 것이 뭔가? 이런 뜻을 색승지(당직승지)는 알려 주라.” 하였다. ○ 양사가 계하기를 “북병사 이제신이 거칠고 깃갈이 세어 일을 처리하는데 전도함이 많은 데다가 북문(국경)을 지킨 뒤로부터 오로지 위엄과 포학을 일삼아 여러 성보의 마음이 떠나고 있으니 변호가 원망하고 배반하여 오늘의 변이 생기게 된 것도 실은 제신의 소위입니다. 그 변란이 일자 그는 겁을 먹고 움추려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외로운 성이 결단나고 있는 데도 거리가 겨우 수식(數息)의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달려가 구하지 않아 장사들의 존망이나 사람과 가축들의 약탈당함을 전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장계한 일도 전도되고 착란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으니, 그 군기를 그르치고 성이 함락 당하여 나라를 욕되게 한 죄가 큼니다. 청컨대 잡아와 법률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답하길 “이제신을 어찌 이렇게 논하느냐? 비록 우선 천천히 논할 것이로되 지금은 결코 따를 수가 없으니 내 뜻을 살피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했다.

○ 사간원이 계하기를, “비변사와 병조 당상이 근일에 건의한 것은 하나도 잘한 계책이 없고 대부분 구차한 것이 많으니 청컨대 추고하소서.” 하니 따르시지 않았다. ○ 16일. 이에 앞서 병조판서 이이가 건의해 말씀드리기를, “상변 군사와 입방 군사가 피폐하기 때문에 복마를 제해 주기를 명해 주소서 하고, 또 외방 무과에 과거 보러온 거자가 시험을 본 뒤에 즉시 새로 뽑은 정로위로 정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요해처를 나누어 알게 하니, 이 때문에 벌열 자제들이 모두 괴롭게 여겨 무과에 응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사들이 걱정하니 조금 혁파를 명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동지 신익이 상소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논의하라고 명했다. ○ 17일. 양사가 계하기를, “병조판서 이이(李珥)가 피론 중에 있으면서 대궐에 나아가 대죄를 했으니, 공론을 경멸한 것으로 청컨대 추고하소서” 하니, 따르셨

다. ○ 19일. 사헌부가 계하기를 “도승지 이해수의 근일 하는 바가 사람들의 소망에 차지 않은 바가 많으니 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자 따르셨다. ○ 20일. 북병사가 사람을 달려보내 계하기를 “적호가 재차 훈응진을 포위했으나 패퇴시켰고 사살된 자도 심히 많았다.”고 했다. ○ 23일. 이이가 탐전에서 비변사에 대해 진언한 6조로써 전교하시기를 “이 상소의 말은 나라를 위하는 성심이 지극하다. 나도 일언으로써 단정을 하겠노니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관절(봉비)과 간청(청탁)의 사가 없어진다면 자연 일없이 치평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이른바 현능에게 말기는 것도 여기에 있고 군민을 기르는 것도 여기에 있고 재용을 족하게 함도 여기에 있고 변방을 튼튼히 함도 여기에 있고 전마를 준비함도 여기에 있고 교화를 밝힘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도 시행될 바가 없어 비록 옛 법을 고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헛수고만 할 뿐인 것이다.” 했다.

○ 24일. 양사가 계하여 이제신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니 따르셨다. ○ 28일. 북병사가 사람을 달려보내 계하기를 “16일에 장사를 시켜 적호의 부락으로 들어가 공격하여 거의 다 탕멸을 하고 호인의 수급 150여를 바쳤습니다.” 했다. 왕이 비변사에 전교하시기를 “이제신을 내가 실로 이미 이럴 줄 알았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므로 나 역시 뜻을 지키지 못했더니 이제 이미 공을 세웠으니 그를 잡아온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논의하여 계하라.” 했다. 회계하기를 “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다만 도사를 이미 발송하였으니 중도에서 다시 중지시킨다면 또한 갈팡질팡한 것이 되니 잡아온 뒤에 왕이 판단하심이 어떨겠습니까?” 했다. ○ 30일. 북병사가 치계하기를 “적호의 부락을 분탕하여 65급을 참수하여 바쳤습니다.” 했다. 비변사가 계하기를 “탁두부락이 가장 험악한 곳이고, 또 악의 우두머리가 사는 곳인데 김우추 등이 승세해서 진병을 하여 이곳을 분탕하고 나서 그가 숨어 있는 곳까지 쫓아가 참획을 많이 하고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으니 나라의 수치를 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등이 당초에 오운에게 말한 바는 다만 무고한 자에게 함부로 형을 가하여 그곳 번호로 하여금 서로 선동을 하게 할까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적호야 어찌 토벌을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신의 계책을 실시한 것은 실로 적절하게 잘한 것이니 도순찰사가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기를 기다렸다가 상을 내리심이 어떨겠습니까.” 했다. 윤2월 5일. 선전관 이극선이 김수 등에게 형을 시행하고 돌아와 서울에 들어왔다. 계하기를 “신이 행영에 이르러 유지를 북병사 이제신에게 보여주자 그가 말하기를 ‘대명률에 무릇 사형 죄인에게 형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3일을 경과하고 나서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하므로 3일을 머물렀다가 형을 시행했습니다.” 했다. 그러자 전교하시기를 “선전관이 내려갔는데도 즉시 형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이제신의 이 죄가 더욱 중하다. 추고를 하라.” 하시고 이극선도 아울러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 15일. 조강에 병조판서 이이가 입시하여 계하기를 “신이 생각한 바를 진술하고 싶지만 경연은 반드시 글을 강한 뒤에 일을 아뢰게 되기 때문에 전좌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뢰기가 미안하오니 청컨대 한가하신 때에 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한가한 날 불러서 대하도록 하겠소.” 했다. 그때에 입시했던 사간 권극지와 장령 황성이 모두 피형 의사를 표현하면서 계하기를 “이이가 만약 계달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경연에서 진계해야 합니다. 만약 조강은 입시한 자가 많아서 차분하게 진계를 못한다면 혹 낮이나 저녁의 강연에서 계달을 해도 안 될 것이 없거늘 이제 때가 없이 대하기를 청한다면 후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신등이 그때에 미쳐 바로잡지 못했으니 청컨대 신등의 직을 체차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너희들이 군신의 사이를 가로막고자 하니 심술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생각지를 못했다. 사직은 말고 물러가서 여론을 기다리라.” 했다. 사간원이 이들의 출근을 청하자 답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체직시켜야 한다.” 하고 윤택하지 않다가, 재차 청하자 따르셨다

○ 22일. 병조판서 이이가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답하시기를 “사직하지 말라.”하고 이날 인사이동을 한 뒤에 불러들여 보냈다. ○ 23일. 북병사 이제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니 판결해주기를 ‘전의 죄는 기각하고 김수 등을 즉각 가형하지 않은 죄목만 감사(減死)의 율로 정한다.’ 했다. ○ 사간원이 계하기를 “성이 함락 당하여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실로 주장에게 있거늘 지방을 지키던 신이 이미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신만 홀로 죄를 면할 이치가 없을 뿐더러, 또 그 멋대로 선전관을 머물러 두어 삼 일까지 이르렀으니 명을 거스르고 법을 폐한 죄가 더욱 중합니다. 청컨대 감사의 명을 거두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논의하는 바의 뜻은 내가 이미 알았다. 단 만약 이제신에게 성이 함락되게 하고 나라를 욕되게 했다 한다면 지나친 것이다. 이제신이 창졸간에 변을 당하여 주선하고 대응했던 공로가 있었으니 이제 죄를 다스릴 수는 없다. 오직 표신을 머물러 두었다가 후일에 형을 시행한 일은 관계된 바가 극히 중하니 죽여 마땅하다. 그러나 그 정상을 참작한다면 망령된 헤아림에 불과했던 것이므로 이 청을 윤택치 않는다.” 했다.

○ 3월 12일. 왕이 비변사로 하여금 각기 인재를 추천하라고 했다. 그러자 박순은 성훈의 재덕이 모두 우수함과 정개청의 재식이 밝고 통달함과 김여물과 최경회와 서익의 문무재능을 천거했고, 김귀영은 유장인 김수와 무장인 양대수를 천거했고, 정지연은 성훈을 재학탁이로 유조린을 총효대절로 성윤해를 은거축덕으로 천거했고, 정유길은 유장 윤선각과 무장 서득운을 천거했고, 정종영은 유학 이충가를 천거했고, 이이는 성훈을 경륜을 맡길 만하다 하고 성윤해는 일민으로 재덕이 있는 자라 하고 정구는 영재가 있다 하고 유전까지 천거를 했고, 심수경은 유극량을 천거했고, 강성은 박종남과 유극량을 천거했고, 이준민은 성윤해와 서익과 김여물을 천거했고. 곽흠은 이추와 유극량과 이즙과 김응상을 천거했고, 박호원은 유극량과 민사준과 박지진을 천거했고, 홍연은 김외천을 천거했고, 김명원은 윤귀수와 이지시와 유홍을 천거했고, 이전은 성훈을 천거했고, 최원은 유극량을 천거했다. 4월 1일. 사헌부가 계하기를 “예조판서 정철이 술을 즐겨 예의를 잃으므로 전일에 탁자에 오르면서도 사람들의 말썽이 많았는데 반년도 되지 못하여 갑자기 종백(예조판서)으로 뛰어오르니 물정이 편치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했으나 윤택치 않았다.

○ 9일. 정탁이 대사헌이 되고 이우직이 대사간이 되었다. ○ 14일. 송응개가 대사간이 되고 이식이 대사헌이 되고 이개가 부제학이 되었다. ○ 이이가 폐단을 진술하는 소문을 올리니 답하시기를 “내가 우연히 경의 연전에 올린 소문을 열람하다가 이제 소문이 마침 와서 보니 전후의 소문이 모두 간곡하여 깊이 경의 용렬한 임금을 잊지 않는 외로운 충성을 가상이 여기게 되었노라. 국사는 어진 대신이 당연히 말아야하는 것이니 남행인 대간의 일에 대하여는 기왕에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고 있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으로도 너무 심하거든 어찌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리오? 공안의 일을 조정에서 논의해 보니 그 의론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고칠 수가 없다. 설사 개정을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일이 많을 때에 함께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군적의 일은 본조가 이미 명을 받았으니 오직 경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주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과연 과매하고 경천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른 폐단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감히 이로부터 변경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경이 권하고 청하기를 마지않으니 마땅히 시험을 해보겠다. 감사는 오랫동안 임명한 관직으로 창설하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미뤄 지금까지 왔으니 이 또한 경의 계책을 따르기가 어렵지만 우선 양남부터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다. 서얼들에게 과거에 응시하는 길을 터주는 일은 사변의 때에 현책을 하므로 즉시 시행하라고 명했으나 연관들이 논란을 하므로 마땅히 다시 비변사에게 물어 상의해서 거행토록 하겠다.” 했다. ○ 17일. 경안령 요가 면대하기를 청하여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동서로 분당이 되어 정치가 여러 사람

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유성룡.이발.김효원.김응남이 동인의 괴수로서 멋대로 놀아나는 것이 있으니 억제하기를 청한다 하고 시사에 대해서도 이모저모로 논했다. 양사가 논하기를 “요가 근거 없는 말을 부풀려서 일망타진할 시초를 만들고자 하니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요의 진술한 바가 또한 꾀이나 유리한 말들이다. 내 비록 극히 과매하나 또한 전혀 어두운 임금은 아니니 그를 죄 줄 리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어찌 나의 귀에 들려온단 말인가. 윤희치 않겠노라.” 했다.

○ 18일. 참지 성훈이 파주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상소를 하여 사직을 청하자 답하시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병이 있어서 즉시 올라오지 못한다는데 지금은 일기가 온화하니 그대는 조리를 하고 올라와서 누워서라도 국사를 논의해준다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내가 그대를 기다림이 참으로 기갈과도 같으니 아주 숨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찌 그대의 본심이겠는가. 더구나 지금의 병조판서는 바로 그대의 친구이니 내가 그대를 참지로 발탁한 것이 어찌 뜻이 없겠는가.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함이 바로 오늘에 있거늘 그대는 어찌 금방 올라오지 않고 나의 고대하는 소망을 저버리려 하는가?” 했다. ○ 28일. 왕이 양사를 체직케 명하고 이양구로 대사헌을 삼고 흥흥으로 대사간을 삼았다. 5월 18일. 전라감사 김명원이 사직을 하고 인하여 전주부윤인 심의겸을 천거하기를 “그는 지려가 심원하고 일찍이 본도의 감사가 되어 폐단 병폐를 잘 알고 있으니 청컨대 감사로 옮겨 제수하소서.” 했다. 전교하시기를 “스스로 그 대임을 천거하여 건방지게 장계를 하니 이는 번신의 감히 할 바가 아니다. 자못 기탄이 없으니 일이 몹시 놀랍도다. 뒷날에 반드시 폐단이 되리라. 그러나 우선 덮어두고 묻지 말라.” 했다. ○ 20일. 양사가 계하기를 “김명원이 사체를 모르고 조정을 가볍게 보아 모욕을 했으니 청컨대 파직을 시키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이런 버릇이 뒷날에 반드시 번신의 발호하는 시초가 될 것이다. 명원이 감히 의겸을 들어 자기를 대임시키려 하여 그 말이 기탄이 없었으니 마땅히 그 실정을 국문할 것이로되 단 지금은 남방의 방어가 바야흐로 긴급하니 우선 놓아 두라.” 했다. 뒤에 대간의 계에 따라 잡아다가 심문을 했다. 특별히 구봉령을 임명하여 전라감사를 삼았다.

○ 27일. 전 참지 성훈이 대궐에 나아가 사직을 청하니 특별히 이조참의를 제수하고 또 은대를 하사했다. 훈이 또 상소를 하여 사직을 청하고 아울러 은대의 하사도 사양하자 답하시기를 “이 상소를 보니 내가 몹시 서운하다. 그대가 어찌 생각이 없고 또 아울러 하사한 띠까지 사양을 하는가? 예에 어른이 주거든 어린 자나 천한 자는 감히 사양치 못한다 하였거늘 하물며 인군이 준 물건을 어떻게 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가 마땅히 이를 띄고 배사를 하는 것이 예절에 맞으리라. 사양해서는 안 된다.” 했다. 6월 11일. 왕이 변사를 논의코자 하여 병조의 당상관들을 불러들이라 명했는데 판서 이이가 병으로 내조까지 들었다가 승정원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 정원이 이런 뜻으로 아뢰자 왕이 내의를 보내 병을 보게 하고 물러가서 병을 조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양사가 논하기를 “이가 소명을 받고 대궐에 왔다가 다만 내조에만 들고 지척의 거리인데도 끝내 정원에 나아가 상교를 받지 않았으니 임금에게 버릇없는 죄가 큼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하고 여러 날을 논했으나 따르시지 않았다. ○ 17일. 이이가 논핵을 당한 뒤로 연일 상소를 하여 사직을 청하니 왕이 위안하고 달래기를 간곡하고 지극하게 하였고 삼공도 와서 계하기를 “지금에 일이 때에 이이가 사양하여 피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니 청컨대 출근하도록 간곡히 타이르소서.” 하였다. 그러나 이가 오히려 병을 칭탁하여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다가 이날에야 처음 나와서 숙배를 하고 계하기를, “신이 죄를 짓고 황공하여 감히 출근을 못했습니다. 무릇 권병을 휘두르고 군상께 무례한 짓을 한 것은 바로 인신의 한 가지 죄입니다. 전일 대신들이 신을 위해 변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대간들의 말이 과당하다고는 하지 않았습시다. 신이 이런 극도의 죄를 짓고 본병의 자리에 있으면서 장사들을 호령한다면 사방으로 소식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놀랄 것이

니 청컨대 척출하여 파면시켜 주소서.” 했다. 왕이 위안을 하여 답해 주었다. 지평 이경률이 계하기를 “신이 성상소에서 이이를 논할 때에 조어가 지나쳤지만 여회의 선견이 밝은 것에도 살며시 논의한 자가 많았으니 당개처럼 알직한 죄를 신이 실로 당하겠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했고 헌부의 전수가 피험하여 이경률과 다르지 않는 말을 하며 체직을 청하고 모두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성영이 와서 계하기를 대간의 말이란 차라리 과격할지언정 유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경률 등이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출근케 하소서. 하니 따르셨다.

○ 19일. 양사가 논계하기를 병조판서 이이(李珥)가 갑자기 높은 반열에 올라 나라의 중임을 맡았으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진심을 해야 할 것이어늘 군정 같은 중대한 일을 먼저 시행한 뒤에 나중에 아뢰는가 하면 이미 내조에 들어와 놓고 끝내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범한 바를 살펴본다면 뚜렷이 제멋대로 놀아난 짓입니다. 인군에게 무례한 죄를 대간이 논하여 탄핵한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에요. 이이(李珥)로서는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살피기에 바빠야 할 것이어늘 먼저 스스로 의심을 품어 속으로 분노를 품고 여러 날 소문을 올려 사기가 불평하여 기어코 대간들의 논한 바를 거짓 꾸민 것으로 돌리려 하고 심지어는 대신들이 대간들을 물리치지 않은 것으로 잘못이라고까지 하고 있으며 또 모든 좌우와 대부들에게 경중을 헤아리기를 바라고 있어 마치 승부를 겨루려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연관들을 척출해 내보내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대간이란 말로써 책임을 삼고 있는 것이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임금도 오히려 수용을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인신의 열에 있는 자가 그 허물 듣기를 싫어하여 스스로 옳다 하고 강변을 하여 연관을 협박 억제하여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니 그 대간들을 멸시하고 공론을 가볍게 봄이 심합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 하소서.”했다. 답하시기를 “윤허치 않노라.” 했다. 홍문관이 또한 차를 올려 논했으나 비답을 심히 엄중하게 하셨다.

○ 20일. 삼공에게 전교하시기를 “이이(李珥)를 경등이 비록 두고 쓰라고 청하지만 이가 출근할 리가 만무하다. 병사의 업무가 심히 급하니 우선 그 관직을 채하여 이의 마음을 편안케 해 줌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북방의 변경 소식이 들어와 국가가 망하게 생긴 때에 조정이 어지러워 현사가 구분되지 않으니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간단 말인가? 내가 속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 이일은 내가 뒤에 처리할 터이니 의정부로 하여금 논의해서 계하도록 하라.” 했다. ○ 양사가 삼공에게 전교하신 뜻이 미안하다 하여 혐의를 일컫고 사직을 청하며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 21일. 영상 박순이 의를 내기를 “이이(李珥)가 어찌 끝까지 출근을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체직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했고 김귀영은 의를 내기를 “병무가 바야흐로 급하니 이이(李珥)의 진퇴가 어렵다면 체직을 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했고 정지연은 의를 내기를 “이이(李珥)가 끝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체직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일은 상께서 공평한 마음으로 조처를 하시면 조정이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염려되는 바는 다만 조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이(李珥)를 위하여 착한 이름을 보존하려고 유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병조판서를 속히 체차하라.” 이이는 이미 나라를 그르친 소인으로 모함되었는데 무슨 착한 이름이란 것이 있겠는가. 우상의 논의는 어찌 그렇게 우월한가? 그 마음속을 내가 자못 헤아릴 수가 없도다. 내가 비록 어두운 임금이지만 소인으로 더 불어 일을 함께 하기는 좋아하지 않노라. 아, 이는 고향으로 잘 돌아가 흰 구름 속에 높이 누워있을 것이니 누가 묶어둘 수 있겠는가?”했다.

○ 정원이 계하기를 “앞드려 대신과 옥당에게 답하신 전교를 보니 미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의 헌의는 반드시 심원한 우려가 있어서이고 옥당의 진차도 또한 국민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거늘 상께서

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박절한 교를 내리시기까지 하시어 현저하게 압도하는 뜻을 보이시니 자못 평일에 성명께 소망했던 바가 아닙니다. 시사의 어렵고 위태로움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신등이 어리둥절하고 망설여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들으니 권덕여 등이 스스로 죄책을 당할 것을 짐작하고, 물러나 대죄를 하고 있어 한번이 궤원이 되고 있는데, 대간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느라 아직도 처치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청컨대 권덕여 등을 패초하시어 하여금 출근케 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홍문관 관원도 패로 부르는 때가 있었더냐?” 했다. 다시 계하기를 “양사가 오늘 처치를 안 하면 직무를 비운 셈이 되니 미안합니다. 청컨대 홍문관도 패로 불러 처치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시기를 “권덕여 등 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볼 일이 있으니 혹은 와서 대답을 하고 혹은 그대로 있고 그밖은 불려서 나와 근무케 하라.” 했다.

○ 옥당이 차를 올려 양사를 모두 출근케 명하기를 청하니 따르셨다. ○ 22일. 양사가 취직하여 이이를 논하기를 여전히 하다가 26일에 이르러서 정계를 하니 심수경으로 병조판서를 삼았다. ○ 7월 2일. 정청에 전교하시기를 “전부사 김수가 어둡기가 토괴와도 같거늘 김성일이 전일 여사가 되었을 때에 감히 이런 사람을 천거하여 하여금 포장케 하고 거진을 맡는 벼슬을 올려 제수케 하여 결국 군을 패하고 성을 전복시켜 지금까지 국가의 형세가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그 근원을 더듬는다면 사단은 성일로 말미암았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다시는 시종을 삼을 수 없으니 나주목사로 제수하라.” 하였다. ○ 15일. 성훈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답하시기를 “소문의 말이 충분히 격렬하여 만약 간사한 자로 하여금 듣게 한다면 족히 그 간담이 깨지게 할 만하다. 참으로 군자의 일언이 나라의 경중이 될만하다. 또 그대가 이미 서울에 와서 있으니 병을 조리해 가지고 경연을 출입하여 과매한 나를 깨우치고 도와주어야지 그냥 빨리 물러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삼공을 부르라고 명하시니 영상 박순과 좌상 김귀영은 명을 받아 대궐에 나아가고 우상 정지연은 병으로 오지 못했다. 대신에게 전교하시기를 “내가 과매하고 무식한 사람으로서 용렬하고 어두워 민첩지 못해 총사를 알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일 경등에게 물었더니 경등이 그저 어물쩍거리는 말만하니 내가 실로 경등의 마음을 매우 통절하게 안다. 그리고 뒤에 조처하라는 가르침도 이미 경등의 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성훈이 올린 소문을 보니 대신의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당초 이이를 배척해 내쫓을 때에 누가 봉간의 유가 된 것인가? 각기 구분을 해서 알려주고 다시는 어물쩍거리 국가의 수치가 되게 하지 말라.” 했다. 회계하기를 “청컨대 면대를 하겠습니다.” 하니 그에 따르셨다.

○ 16일. 대사간 송응개가 계하였다. 앞드려 성훈의 상소 글을 보고 또 영상 박순이 성훈의 장두의 말로 인하여 허봉과 신신을 지척함을 들으니 신이 언책의 관으로써 묵은 원한을 품고 시기를 이용하여 현자를 내쫓기를 도모한 자가 되어 죄가 마땅히 한번 죽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이기 생각하옵나니 신의 가세는 육대가 과거에 올라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눈으로 성명께서 한편 말만 편벽되이 들으시고 간특함이 생겨 장차 양화의 시초가 되려는 것을 보고 차라리 한 말씀하고 죽을지언정 어찌 차마 구차하게 모면하여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이는 본시 검은 옷 입고 머리 깎은 중이었습니다. 임금이오 아버지고 끊어버리고 인륜에 죄를 얻은 사람이니 만약 그 죄를 논하자면 선유가 실로 정론이 있었습니다. 몸을 변하여 속계로 돌아와 권세의 문에 길러지니 일세의 청류가 용납해 주지 않았고 처음 상사에 뽐혀 알성을 할 때에 성균관의 많은 선비들이 같이 서기를 부끄러워하여 통알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심통원이 그 아들 화를 보내 서둘러 주선해준 힘으로 행할 수가 있었고 출신을 한 뒤에는 심의경의 천발한 바가 되어 청현직에 오르고 심복으로 서로 맺어 사생을 맹세하게 되었으니 평생과 입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자칭 학문에

향한다 하여 문장으로써 꾸미고 스스로 당시의 이른바 사류라고 하는 박순 같은 무리에게 따라붙어 사생의 친구를 맺고 간 허파를 기울여 체결하여 시국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심의겸은 외척의 권세를 빙자하니 왕망.양기의 세력을 빌려 입에 천헌(天憲)을 물고 손에 국명을 쥐어 이준경은 고명 원로 임에도 그가 위엄으로 억압함을 분히 여겨 암암리에 욕하고 물리쳐서 하여금 그 자리에 편히 있지 못하게 하고, 정대년은 선대의 원로이고, 김난상은 을사년의 직신(直臣)인데도 의겸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해서, 모두 현저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만약 자기에게 친근한 줄 알면 일개의 낭관이 보임으로 나가도 온 조정이 만류를 청하고 당비하고 사원 하여 못할 것이 없으며 조정의 명령이 조정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의겸과 박순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때에 전하께서는 대통령을 입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록 속을 아는 자가 분통을 했지만 누가 감히 그의 권세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면류관 아래에 아뢰어드리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이이(李珥)가 비록 산야인으로 자처하였지만 실은 모주가 되어 안팎에서 서로 짜고 하였으니 이는 의겸이 이이(李珥)에 대해서 일을 성취해준 잊지 못할 은혜가 있는 것이요, 이이(李珥)는 의겸에게 성세로 서로 도와준 힘을 입은 것입니다. 이는 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환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이(李珥)가 감히 소야한 모습으로 산림의 사이를 출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헛된 이름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흔히 믿고 의혹을 합니다. 이이(李珥)가 이에 출처와 진퇴에 곧잘 전현들을 인가하며 스스로 당세에 특립하여 시비의 밖에 초연한 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겸이 청의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에는 이이(李珥)가 비록 분개한 뜻을 품고 있으면서도 마치 서로 상관하지 않은 듯하여 우선 전리로 물러나 앉아서 시세만 보며 팔뚝을 걸어 부치고 말을 내세워 조제보합(調劑保合)과 동인협공(同寅協恭)의 말로 온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소를 하여 의겸의 단점과 김효원의 장점까지를 견하여 들어서 지극히 공정한 명분을 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이(李珥)가 아래로는 당세를 속이는데도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바요, 위로는 전하를 속이는데도 또한 깨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 마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여러 사람의 마음은 속이기 어려운 것이고, 전하는 속일지언정 귀신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이이(李珥)의 가슴속은 국민이 이미 그 허파, 간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일 장령 정인홍이 의겸을 탄핵할 적에 이이(李珥)가 장관으로서 사사로이 인홍을 보고 극력 말렸으나 인홍이 듣지 않았다

그 뒤에 뜻을 굽혀 따라 마치 애당초 의겸의 죄상을 몰랐던 것처럼 덮었는데, 나중에 인홍은 정철이 의겸에 아부한다 하여 함께 논하니 이이(李珥)가 또 말하기를 “철은 의겸과 정분은 비록 깊지만 기미 심사는 훨씬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철을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지만 실은 자신을 발명한 것입니다. 공론이 이미 터져 나오자 이이(李珥)가 비록 감히 뚜렷하게 다시 의겸을 위해 돕지는 못하면서도 그가 애쓰는 바는 모두가 의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진정시키려고 힘쓰심을 힘입어 동서의 설이 겨우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이가 감히 두드러지게 배척을 하고 상소의 말에도 나타내 걸로는 조제의 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경함의 꾀를 하고 있으니 그 계교가 실로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양비의 설을 들고 나오더니 다음에는 의겸을 변명하여 심지어 “의겸이 선을 향한 사람이다. 별로 죄악이 없다.” 하고 나중에는 “정철로 더불어 훨씬 다르다.” 하니 이의 전후 의겸을 논함이 세 번이나 그 설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향리에 있을 때도 일찍이 영치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러 고을 뇌물들이 그 문에 폭주를 하였고 재리를 구하고 다투어 송곳 끝 칼날 끝 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해택(海澤)의 이(利)와 관선(官船)의 세(稅)까지도 차지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도의 공서를 대명으로 받아내고 첨지가

세경(世耕)해 온 땅을 고소했으나 비리로 억탈을 해버리고 그 형은 고소한 노복을 때려죽이기까지 했는데 관에서 묻지도 못했다 하고, 대사간이 되어 불려올 때에는 공공연하게 곡식 백석을 지나는 고을에서 받아 본가로 수수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데는 흑시라도 손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며 돌아보거나 기탄한 바가 없었으니, 이는 만구가 다같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원근이 웃음거리로 전하면서 타매가 길에 가득합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방자하여 몸 가지기를 형편없이 함이 이 지경인데도 박순은 바야흐로 입을 모아 칭찬을 하여 전하를 속이고 있으니 그 뜻을 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이(李珥)의 본심이 오직 이렇기 때문에 몸이 은총을 입고 지위가 높은 반열에 올랐는데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남을 시기하고 이기려는 심성만 부러 윗사람을 속이고 사를 행하기를 못할 짓이 없으니 크고 작은 기무에 반드시 사지를 부리려 하고 시행하고 조처하는 즈음에 곧잘 인심을 거슬러 국사를 맡은 지 반년 동안에 원망이 창생에게 미치고 이조판서가 된 지 1년만에 벼슬길을 혼란케 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나라를 팔아먹는 간신이요, 흑자는 왕안석에게 비하는데 안석이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삼공이란 전하께서 믿고 의지하여 나랏일을 하는 자인데 영상 박순은 이이(李珥)를 중시 붙잡고 보호하니 실로 믿을 것이 없거니와 천위와 지척인 곳에서 반복해서 찬예를 하다가 거듭 천청을 속여 심지어는 ‘비변사에서 일을 같이한 연후에야 비로소 서로 알게 되었다.’고 까지 하여 그 말이 마치 지극히 공평한 자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진댄 무슨 짓이라고 차마 못하겠습니까?

신이 전번에 이 말을 듣고 놀랍고 분함을 금할 수가 없어 박순까지 함께 논할려고 동료들 중에 말을 내기도 하고 또 간혹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믿는 바는 성명께서 비쳐보시지 못한 바가 없으시고 끝까지 진정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므로 흑시나 소요를 일으키게 될까 두렵기로 은인자중 하였사오니 신의 무기력함이 죽어도 여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탐전에서 신의 성명을 들어 피험하지 않는다 하니 신이 이이(李珥)와 당초에 은혜도 원망도 없는 처지였고 또한 이이(李珥)가 신의 허물을 말한단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현저하게 지적함을 당하고 나니 짐작컨대 흑시 신의 박순을 논하려 했다는 말이 박순의 귀에 떨어졌는가 싶습니다. 실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본시 배우지 못해 혼미하고 용렬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과거에 올라 누차 대관 시종에 들게 되니 죽은 아비 선신 기수가 신의 우졸함을 알고 항시 훈계하기를 절대로 시론에 아부하거나 따르지 말라 하였습니니다. 그래서 비록 젊어서부터 같이 유학하는 자일지라도 신 또한 항상 조용함을 지키라고 권면했고, 동료들일지라도 의경이나 이이의 무리를 추종하는 자가 흑 있으면 신은 그들이 외척으로 더불어 교유함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흑은 꾸짖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을 미워하여 늘 신의 허물을 말했던 모양인데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성훈에 이르러는 박순 등의 추천한 바가 되었지만 실은 의경과 대대로 친후하게 지내왔고 또 박순과 교의가 깊고 긴밀하며 이와는 정의가 골육간보다도 더합니다. 혼은 오직 이 삼인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공론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무릇 이이(李珥) 등이 논한 바는 혼이 반드시 흑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옳다고 하여 그 평일 논의가 한 입에서 나온 듯합니다. 전일 상소문 속에서 말한 바가 경상들을 차근차근 꾸짖어 모두 유속배라 하고 일인에게 말기기를 원하였으니 그 뜻은 바로 박순과 이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칭찬을 하고 서로 성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의경의 죄를 논하면 이가 나와서 구해주고 만약 이의 잘못을 공격하면 순과 혼이 또 서둘러 구해주어 서로 당기고 끌어주어 천총을 속이고 가리우며 감히 삼사의 논하는 바로써 불공 불평하다 합니다. 혼의 마음은 과연 공평한데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원의 관이 주상의 하교에 ‘이의 죄가 이와 같다면서 다만 파직을 청하였으니 을사간인들의 소위와 다르지 않다.’ 하셨기 때문

에 미안함을 금하지 못하여 ‘법대로 죄를 논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혐의를 피해 세 번 사직을 청했을 뿐이요, 주상께서 당초에 어찌 참으로 죄를 가할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성훈은 대간들의 과격하게 논한 죄를 다스리고자 하여 스스로 자신이 너무 심한 법문으로 주장했음을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아, 신 같은 주육(走肉)이 이런 자리에 웅거하여 목은 원한을 품고 사람을 배척하여 현인으로 하여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죄가 실로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삼사만은 바로 전하께서 고문으로 두신 이목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기에 조종 수백 년 이래로 일시의 인재를 애석해 하여 우대를 하고 존숭을 하여 국가의 명맥을 삼고 있는 것이어늘 훈이 어떤 사람이기에 스스로 산야인의 이름을 지고 감히 당비의 꾀를 행하여 바로 삼사로써 장상영 윤색에게 비하니 이는 전하의 온 조정 신하로서 모두 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의정 김귀영은 구별을 해서 계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므로 감히 이이를 군자라고 하지 않은 것이나 그 뜻하는 바가 있는 것이어늘 주상께서 도리어 엄준한 하교를 대신에게 내리셨습니다. 신 같은 미약하고 소원한 자는 이 말이 나가면 화가 닥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일신의 이해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 종묘 사직을 어찌합니까. 전번 경안군 요가 면대했던 일도 밖으로 흘러나온 소문으로는 모두가 이이(李珥) 등이 사주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저 이들이 체결된 자가 이미 오래되어 밑뿌리가 이미 깊으므로 다만 당을 위해 죽을 마음만 알고 다시는 전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윗 분을 속이고 사를 행함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으며 다시는 기탄이 없음을 상제(上帝)가 내려다보고 계시니 신이 실로 통분해합니다. 신이 사람의 지척을 받아 명기를 수치스럽고 욱되게 했으니 일각이라도 그대로 머물러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설사 모두 옳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불충이다. 본직을 체차하라.” 했다.

○ 사헌부가 피혐하여 계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병조의 일이사를 논한 것은 당초 잘못에 따라 바로잡은 것에 불과했던 것인데 조어의 사이에 몇 글자로 인하여 차츰 차츰 옮겨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위로는 군부께 죄를 지었고 아래로는 상신을 거슬리게 하였으며 초야에서 온 사람까지도 또한 상소를 하여 죄를 청하기에 이르러 기어코 삼사의 사람을 모조리 치우려고 하니 신등이 그대로 웅거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했다. ○ 특지를 내려 송응개로 장흥부사를 삼고 허봉으로 창원부사를 삼았다. 그리고 전교하시기를 “장흥부사 임진과 창원부사 정걸은 모두 경직으로 붙이고 박승임으로 대사간을 임명한다.” 했다. ○ 비망기: 왕이 명을 기하여 승지에게 전한 것. 임금이 데리고 나라 일을 하는 자는 대신이다. 그래서 나라의 안위가 대신에 달려있으므로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상신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제 내가 총사를 알 수가 없고 시비를 알 수가 없어서 대신에게 물었더니 좌상 김귀영이 감이 옳다 을이 그르다 하기를 꺼리고 감히 어정쩡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지었었다. 일찍이 예로부터 대신이 이런 사람을 보았는가? 그 몸이 이미 대신의 지위에 있는 이상 무릇 현과 사를 구분하고 인물을 진퇴 하는 것이 바로 그 소임이다. 만약 모른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짓이요, 알고도 곧바로 아뢰지 않았다면 이는 불충이다. 어떻게 만백성이 쳐다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원은 잘 알라.

○ 정원이 계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하교를 뵈고 서로 돌아보며 놀라고 황공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성명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좌상 김귀영은 마음으로 사림들이 딴 뜻은 없으니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여 애써 구해주고 성명께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랐던 것이니 그 말은 비록 명쾌하지 않았으나 주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상의 뜻에 두고 계심이 이상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도리어 귀에 거스르게 되어 어정쩡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근자에 천위가 바야흐로 진동하시어 사류가 외롭고 불안하여 조석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귀영이 만약 어정쩡하고 어물쩡할 생각을 두었다면 당연히 주상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기가 바빴을 터인데 도리어 외롭고 불안한 사류들에게 어정쩡하고 어물쩡한단 말입니까? 상께서 그의 실정을 헤아리시지 못하고 문득 박절한 교를 더하시니 이 글로 하여금 용납할 바가 없게 하십니다. 대신은 평상시 의지하고 든든해한 바이거늘 일언이 뜻에 거슬렀다 하여 엄한 꾸지람이 이에 이르신다는 것은 다만 성명에 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국사도 이로부터 그릇될까 하오니 상께서는 조금 위로를 끄시고 마음을 순평히 하여 살피고 생각하소서. 그러면 아마도 풀리실 것입니다. 또 삼사는 공론이 있는 바니 국가가 믿는 바요, 원기로 삼는 데입니다. 권간이 나라를 쥐고 시키고 사주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논의가 발하여 모의 없이 동의가 되었다면 이것을 공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흔의 상소문 속 허다한 설화는 비단 주의만 편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원한을 끼었다.’ 했고 혹은 ‘부합했다.’ 했고 혹은 ‘동류가 되어 고자 질하고 교묘하게 중상을 했다.’ 했고 혹은 ‘공교롭게 덮을 놓았다.’ 하여 현란하고 현혹하여 언척자들을 죄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온 조정을 들어서 사로 지목하고 있으니 나라를 온통 비울 재앙이 불일간에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친다 함이 바로 이를 말합니다. 그 아니 참담합니까? 옳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속을 비우시고 도리를 살피어 깊이 시비의 근원을 연구하소서. 그러면 다행하기 그지없겠나이다.” 했다. 답하시기를 “이 계사를 보니 가위 동쪽을 가리켰는데 서쪽을 답한 격이로다. 어제 내가 이이의 현사를 묻자 좌상이 말하기를 ‘신은 모릅니다.’ 했고 나중에는 ‘사람을 알면 철.’이란 말로 꾸며냈다. 이는 그의 마음을 길가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바이거늘 내가 모를 줄로 아는가? 무릇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사람마다 두고 있는 것이니 이는 천성에 근본한 것이어서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임금의 묻는 말에 대신이 된 몸으로 모른다고 대답을 한단 말인가. 슬프다. 임금이 정승을 둔 것이 어찌 다만 부지(不知) 두 글자를 가지고 평생 정승의 일을 삼도록 하고 말았을 것이냐? 모른다는 몇 마디 말로써 족히 고풍경절(高風勁節)이 될 것이란 말인가? 모른다는 말이 어떻게 천하의 인심을 복종케 한단 말인가? 예로부터 임금이 신하의 현사를 대신에게 물었을 때에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은 듣지를 못했다. 진실로 이럴 때에는 임금이 스스로 자기의 총명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저 상신을 필요로 하였겠는가. 무릇 대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실로 임금의 본심이지만 의지하는 것은 그가 조정(중신의) 현사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시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임금의 앞에 들어와 대답한다는 소리가 첫째도 모른다, 둘째도 모른다하니 슬프다 과매하고 어두운 임금으로써 모르는 승상을 만났으니 이는 봉사가 봉사에게 보아달라고 청하여 천하의 빛깔을 바로잡으려는 격이니 장차 서로 휩쓸려 넘어지고 거꾸러져 구하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무릇 내가 과매한 자품으로써 큰 기업을 지키면서 상신의 잘못과 국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포함하고 용납해주는 소절에만 구구하게 매달리고 한번도 발언을 하여 후세의 인신이 된 자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의 대신만을 위하고 중요 사직을 잇는 셈이다. 경중의 세를 잃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말을 앓고 조종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나의 원하는 바이리요, 부득이함이다.” 했다.

○ 17일. 헌납 유영경과 정언 이주가 계하기를 “이이의 사류에게 의심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전일 논한 바 몇 가지의 일은 불과 공사장의 실수를 인하여 논했을 뿐인데 나중에 이이가 사피할 즈음에 먼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시기하여 불평한 말을 많이 발하였고 언자로 더불어 그 곡직을 다 투고자 했습니다. 그런 뒤에 삼사가 분노하여 상의 없이 동의가 되어 비로소 그의 심적이 의심스럽다는

발단을 냈던 것이지 당초에는 그 일로 인해서 쳐서 내쫓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드려 성훈의 상소를 보고 또 박순이 연중에서 아뢴 말씀을 들으니 혹은 ‘봉당 지어 고자질하고 닳을 놓았다.’ 하고 혹은 ‘원한을 끼고 부합했다.’ 했으며 심지어는 언관들에게 죄를 가하려 하여 온 조정을 사로 지목하고 있으니 이는 일시의 명류들을 일망에 모조리 때려잡으려는 속셈입니다. 동서의 말은 뿌리 없는 항간의 말에서 나왔는데 필경은 사람의 화태가 되었습니다. 무릇 심의겸은 서인의 우두머리인데 이이(李珥)와 순은 의겸과 잇기 어려운 은혜가 있고 훈도 의겸의 평생 친구입니다. 이 몇 사람이 서로 붕비가 되어 그 기미와 모의함이 일인과 같습니다. 이는 국인이 모두 같이 아는 바입니다. 이제 이이(李珥)가 논핵을 당하자 훈이 그 억울함을 논하고 순으로 그 일을 증거대고 있으니 과연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대간의 일시에 한 말이 비록 혹 과중했을지라도 스스로 공론이 있거늘 순 등이 감히 현란한 말을 하여 임금의 귀를 현혹케 하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사람을 경함한 뜻이 참혹합니다. 신등이 이미 내쫓겼고, 또 전의 대사간 송응개가 일찍이 판결 자리에서 근원을 밝히려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신등이 애써 진정을 시켜 말렸으니 신등의 유악한 죄가 더욱 큼니다. 청컨대 파척을 명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했다.

○ 18일. 사간 성락과 정언 황정식이 계하기를 “전번에 이이가 주병의 관으로써 망령된 일을 많이 하여 그 일로 인해 규정을 했으니 이는 심상한 탄핵이거늘 이이가 먼저 스스로 의혹을 하고 언자로 더불어 쟁변하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사설을 늘어놓아 공론이 더욱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이의 성격이 소통하지만 주견은 편벽되고 고집스러워 분분히 뜯어고침이 과하고 조용히 헤아려보는데 짧아 무릇 시설한 바에 곧잘 물정에 어긋난 짓을 해놓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하의 일을 담소하는 속에서 정할 수 있다 하고 나의 역량이 그 형편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국사를 담당하지 오래지 않아 안팎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그 사는 즐거움을 잃고 말았으니 오늘 논하는 바는 모두 이가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성훈이 그로 더불어 가장 친하기 때문에 좋아하여 그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상소를 하여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여러모로 그를 구해줌으로써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불안하게 하며 합의된 공론을 들어 원한을 끼고 닳을 놓는 지경에 귀결되었습니다. 박순의 면대한 말은 비록 스스로는 화평을 주장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치우쳐 도리어 언자를 제재하고 누르려 하며 심지어 그 이름까지 들어서 지척을 하니 또한 대신의 국가대계를 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송응개가 궁원의 눈을 하려함에 영경 등이 말렸으니 이 또한 일을 임해 신중하여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곳에서 잘못이 없기를 구한 것이니 대간은 별로 잘못함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사헌 이개와 집의 홍여순과 장령 이징과 윤승길과 지평 이경률과 조인후와 헌납 유영경과 정언 이주 등을 모두 출근케 명하소서.” 하니 따르셨다.

○ 19일. 양사가 합동으로 계하기를, “영상 박순은 본시 속 좁은 사람으로서 문목의 작은 재주를 끼어 마음을 씌어 사곡하고 몸가짐도 간사하여 득실에 급하고 영치를 돌아보지 않아 항상 심의겸으로 더불어 복심이 되어 무릇 조정의 시행 조치와 인물의 진퇴를 하나 한결같이 의겸의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국권을 휘두른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이(李珥)와 성훈도 또한 의겸의 문객이며 친근히 지낸 벗입니다. 그래서 순이 이 사람들로 더불어 사생을 결탁하고 서로 안팎이 되어 순과 이이(李珥)는 훈을 산림의 높은 선비라고 찬양하고 훈은 순과 이를 일대의 현신이라고 추켜세워 안으로는 척리(戚里)에 의탁하고 밖으로는 헛된 명예에 가탁하여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성세가 장황하니 일시의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기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는데 오직 이준경, 김난상만이 박순과 의겸의 권세가 날로 성하여 장차 국사를 그르치게 됨을 보고 준경은 늘 사람을 대해 말하기를 ‘의겸이 아무리 극력 순을 추천하여 서둘

러 꼬집어올리지만 순은 작은 그릇이다.

만약 경상의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반드시 국사를 그르칠 것이다.’ 했습니다. 순이 그 때문에 감정을 품고 공연히 그를 헐뜯어 하여금 뜻을 펴지 못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상은 간관이 되었을 때 순의 사생을 결탁한 벼를 논하려 했다가 또한 순의 얽어 넣음에 빠져 출세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밖에도 배척한 수를 모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정을 혼란케 하고 나라의 명맥을 상하며 망친 바가 또한 심합니다. 오직 다행히도 성명께서 위에 계시어서 간과가 뜻을 잃었으니 이로부터 늘 앙앙불락하고 한갓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절실함만 느끼고 공론이 무섭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이(李珥)의 무리들과 매양 어두운 밤이면 미복으로 서로 찾아다니며 어떻게 했으면 사류들을 모함할까, 그리고 의견을 회복시킬까만 꾀하여 못할 짓이 없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종시 진정시킴을 힘입어 그들의 생각대로 행해지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에 성총을 현란시킬 것을 우선의 계책으로 삼아 성상께서 신진들의 경예함을 싫어하심을 짐작하고 사류들을 부박 편당하다고 지적하고 남들이 그 말을 공평치 않다고 할까 염려하여 이번에는 사람을 사주하여 면대케 하고 사람을 시켜 상소케 하여 드디어 성명으로 하여금 거기에 쪼아들게 하여 마침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근일의 일인 천노(天怒)가 바야흐로 엄함으로 인해 틈을 타고 기회를 노려 경함의 계를 이루려고 한 것이니 전후 탐전에서 계한 바가 아주 음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이(李珥)와는 당초에 알지 못하다가 비변사에서 함께 일한 뒤에야 비로소 그 위인을 알았다.’는 것을 가지고 말해보겠습니다. 순이 이이(李珥)와 본디부터 체결하여 정의가 골육 사이보다 더하다는 것은 실로 국인이 모두 아는 바이어늘 천위의 지적에서 기망하기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그밖에 주상을 속이고 사를 행함은 이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언책의 관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고 전조(銓曹)의 선출을 파하기를 청하고 심지어 차를 지은 사람까지 다스리고자 하였으니 모두가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당여를 많이 심어 맘대로 제 뜻을 행해 보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천위가 모조리 꿰뚫어보아 간계가 이룩될 수 없게 되자 또 성총을 사주하여 장두의 말을 내놓게 하여 아주 앙큼하고 비참한 음모를 썼고 혼은 대신을 불러다가 물어보시라고 했고 순은 혼이 감히 지론을 했다 하여 이에 탐전에서 다시 전일에 못다 한 간사한 음모를 다한 것입니다. 송응개가 늘 자기를 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은연중 이이(李珥)를 시기한 것으로 돌려 지목을 했고 또 허봉의 부친 엽이 늘 순으로 더불어 틈이 있었는데 이제 봉이 차를 지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또한 이를 미워해서 지었다고 했으니 실상은 스스로 목은 원한을 보복하려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전후의 계사가 계산이 아주 험악하니 일시의 사류를 모조리 치워 전부 함정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나 의견을 위한 도리는 지극하다 할지언정 군부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의 마음 씀과 일하는 것은 이미 옥당의 차와 송응개의 계사에 다하여 성명께서 이미 훤히 보셨으니 이제 새삼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가 평일에 통원의 집에서 환양이 되고 의견의 문에서 출신한 것으로 보아도 위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종시 자기를 후대해준 곳을 돌아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공론을 꺼려 두렵하게 사를 행하지는 못하고 동서를 조제한다는 말을 가식하여 공을 핑계하고 사를 이루려는 꾀를 행하고 있어 그 말한 바가 또한 전후가 반복되어 세 번이나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정인홍이 의견을 논하려할 때에 이가 현장이 되었는데 가만히 구하려 했으나 되지 않자 공론에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따랐는데 그가 사류들을 배척 경함하려는 생각은 이때부터 더욱 결정을 했던 것이요 작위가 이미 높아진 뒤에는 더욱 기탄이 없어져 위로 성총을 받고 아래로 공의를 멸시하여 옛 법도를 변란하고 스스로 편견을 옳다 하여 그 잘못을 말하는 소리는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는 자를 내치니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해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몸가짐도 삼가지 아니하여 관절(비

리)을 자행함으로써 뇌물을 받음이 많고 남의 전토를 빼앗고 공해를 무조건 차지했으며 심지어 방납(公賈)을 선납한 것의 관물을 내어 팔아 이익을 취하는 일등 못할 짓이 없으면서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었으니 그 행径이 없기가 심합니다. 매양 거취를 오직 의대로 한다는 말을 전후로 아뢰어 놓고도, 전번에는 남에게 탄핵하는 말을 당하자 거짓 물러간 척하면서 살며시 머물러두기를 청하라는 뜻을 남에게 부탁을 했으니, 은총을 굳게 잡으려고 임금께 요구하는 짓으로 간사하고 바르지 못하기가 지극합니다. 이의 위인이 대개 이와 같은데 당초에 감히 아뢰지 못한 것은 다만 화평과 진정의 계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이가 늘 세상일을 자담할 것을 힘써 그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를 해낼 것만 같았고 또 이런 성명의 때를 당하여 반드시 그 사계를 부리지 못한 것이라 싶고 혹시 능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있어서 우선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일이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이제 몸이 병관이 되어 가지고 나라에 일이 많을 때를 당하여 계려하고 주책하는 것이 대개가 망작이 많아 안팎이 소란스러워 조석을 보장할 수 없으니 외구(外寇)가 오기 전에 나라의 근본이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책을 맡은 자가 일을 따라 규정을 하는 것은 바로 원칙적인 직분에 해당되는 일이거늘 이이(李珥)가 먼저 스스로 의심하고 시기하여 많은 사실을 늘어놓음으로써 주상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순은 여기에서 한갓 이를 구한 것이 급한 줄만 알고 국사가 날로 그릇되어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아 그 이미 드러난 과실을 덮고 있지도 않는 아름다움을 들춰내니 순의 천청을 기망함이 심합니다. 성훈으로 말하면 자칭 산림의 사람이라 하여 몸이 증명을 지고 성상의 은권을 받음이 천고에 뛰어났습니다. 훈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지공 지정하고 진성 진총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요, 하물며 지금 변경이 바야흐로 급하거늘 일찍이 한 가지의 기묘한 대책도 내어 잠 못 주무시고 북쪽을 걱정하시는 성상의 마음을 풀어 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한사람 벗이 탄핵을 당한 것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밤마다 애를 써서 구해 주기만을 꾀하고 감히 ‘부합’이니 ‘원한을 끼었다.’느니 ‘봉참을 한다.’느니 ‘교묘하게 중상한다.’는 등의 말로써 성청을 현혹시켜 기어코 일시의 사류들을 일망타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훈이 의경을 탄핵하려 할 때에 훈이 서둘러 구하기를 몹시 지극히 했으므로 인훈의 말이 ‘이이(李珥)와 의경은 동조의 분의(分誼)가 있으니 구하는 것이 혹 당연하겠지만 그대는 산림에서 온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척리의 용사한 자와 그렇게 정의가 두터운가?’ 하니 훈이 말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그가 의경과 시종 좋게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은 산야에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도 서찰은 도하에 연달았으며 조정의 정령과 인물의 진퇴를 간여하고 참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부잡한 무리들이 무리로 모여 시사를 평론하고 경상들을 날날이 헐뜯고 일세의 사람들을 무시하여 유속배로 지목을 하고 그 찬양하는 바는 오직 순의 무리 한두 사람뿐입니다. 성상께서 부르심이 아무리 근하여도 반드시 순의 무리가 편지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오니 그들 거취가 과연 군부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도하에 오는 것은 다만 순과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 상소를 하고 서둘러 구함은 국인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훈의 위인은 실로 많이 책할 것이 없습니다. 순 같은 사람은 바야흐로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 화평의 계책은 세우지 않고 오직 사당에 부합하기에만 급급하여 나라를 비울 화를 열고 있으니 장차 종묘 사직으로 하여금 전복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 하루라도 백성들이 모두 쳐다보는 자리에 그대로 웅거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되니 청컨대 박순을 빨리 파직토록 명하소서. 했으나 윤택치 않았다.

○ 22일. 양사에서 박순의 열 가지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파직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대사성 김우옹이 상소를 하여 삼사를 부조하다고 하니 양사가 피험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 이 희득을 사간으로 임명하고 특지로 김효원을 안악군수로 권덕여를 성주목사로 홍적을 장연현감으로 임

명했다. ○ 23일. 사간 이희득이 숙배를 한 뒤에 양사를 처치하는 계를 하기를 “김우옹이 구구하게 편벽된 말을 하여 삼사의 한 바를 부조하다고까지 지목했으니 한사람의 간혹하고 편당스러운 말로써 함부로 대간을 체차할 일이 아니니 청컨대 양사를 모두 출근토록 명하소서.” 했다.

○ 파주에서 한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하나의 머리 하나의 얼굴에 네 개의 눈 네 개의 귀 두 개의 코 두 개의 입 네 개의 손 네 개의 발 두개의 자지 두개의 불알이 붙어 있었고 낳은 뒤에 곧 죽었다 한다. 8월 5일. 정원이 계하기를 “하락이 이이, 혼으로 더불어 가장 친후하거늘 감히 이의 위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아주 턱을 잘 놀려 주상의 뜻을 공교롭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가 향곡에 있을 때에 재리를 노리고 의리를 망치며 읍재를 협박하여 재리를 뜯어내고 사류들을 미워하여 해치므로 사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또 그 상소문 끝에도 범람하고 외설스러운 말이 많으니 그 앙큼하고 아첨스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등은 직책이 근밀한 데 있어 나라를 망칠 화가 조석간에 있음을 목격하고 감히 계합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어떤 승지가 이 글을 초했는가?” 하니 회계하기를 “원중이 동의해서 계하였습니다.” 했다. 전교하시기를 “모든 승지가 일시에 붓을 잡고 기초를 했던 말인가?” 하자 회계하기를 “비록 붓을 든 자가 있기는 했지만 그의 의견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꾸만 물어서 썼습니다. 붓을 잡은 원이 황공하고 미안하기 그지없어 합니다.” 했다. 전교하시기를 “이제 계한 말을 보니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막으려 하고 나의 귀와 눈을 가리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여 결국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냐? 내가 비록 어둡고 용렬하지만 어찌 너희들이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이더냐? 내가 너희들도 다스리지 못할 줄로 아느냐? 대저 공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마치 물이 땅속에 있음과 같은 것이니, 꼭 대간의 말이라 해서 옳고 꼭 나무꾼이나 꿀 베는 자의 말이라 해서 그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공평하면 그 말도 공평한 것이다. 자고이래로 대간 시종의 이름이 어느 시대이든 없지를 알지만 공론이 조정에 있는 적은 드물다. 무릇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다스려지는 것이고 조정에 있지 않으면 어지러운 것이니 이래서 백대에 선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너희 대간들의 하는 말에는 인심이 불복하고 의사가 소매를 떨쳐 장차 사면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서 미봉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했다. 성균관 유생 유공진 등이 상소를 하여 이이와 성흔의 현함을 논하니 답하시기를 “내가 과매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어 큰 기업을 지키면서 지는 족히 현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주는 족히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여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시비가 혼탁케 하고 있으니 책임이 나에게 있다. 다시 무어라 말하리요. 이제 상소의 말을 보니 충직함이 격렬하다. 그대들의 의기가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국사를 근심하리요. 정원은 추요의 자리에 있거늘 기무를 살피지 못함이 많다. 비록 인재가 단장이 있다지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는다면 이러지는 않으리라 싶다. 잡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우선 직무 일이나 부지런히 하라.” 했다.

○ 양사가 정원에 비답한 말씀이 미안하다 하여 인피를 하거늘 답하시기를 “너희 양사가 논계한 이후로 내가 일언도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입이 말더듬이가 아니다. 어찌 한마디쯤 위엄을 부릴 수가 없겠는가. 군신의 사이에 손상될 바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에 어려움이 많고 생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그대들 양사 중 누가 이씨의 신하가 아닌가. 그런데 이 대신인 공경들과 모두 일시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형처럼 아우처럼 지내면서 어째서 공을 먼저하고 사를 뒤로하지 않으며 사사 뜻을 통쾌히 버려 얼음 풀리 듯하고 화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왕실에 힘을 다하지 않는가? 그대들 양사가 부디 즉일로 논쟁을 정지하고 일장의 다툼을 한바탕의 웃음거리로 치고 다시는 생각지 말라. 그러면 이는 나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실로 그대들 양사의 이로움이 되기도 한 것이다. 군신의 사이는 정이 부자와 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이다. 만약 고집을 부리고 깨닫지 못하여 논쟁을 마지않는다면 난들 어찌

그냥 묵묵히 있기만 하겠는가. 반드시 장차 부득이한 조처가 있을 것이요, 딴것은 생각해줄 수가 없다. 그때에 가서 후회가 없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했다. 양사가 재차 피형하고 아뢰기를 “신등이 또한 조종조의 세신 유예로 전하의 17년간 양육해 주신 은택에 목욕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정녕하신 하교를 받자오니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장래의 화는 전하께서 능히 막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신등이 일시의 시행에 겁을 먹고 즉일로 논쟁을 정지한다면 실로 신등은 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사직의 복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파척을 명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이제 계사를 보니 그 뜻을 잘 알겠다. 경등이 무슨 사원이 저들에게 있으며 저들도 무슨 사원이 경등에게 있겠는가. 똑같은 신조로써 일당에 있으면서 서로 담소하고 사권 사이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우연히 말로 인해 옮겨지고 돌려지고 하여 대립을 하기에 이르러 마치 초월과도 같게 되었다. 경등이 만약 고개를 돌려 생각한다면 참으로 한자리 웃음거리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 기왕 일은 경등이 다시 변론할 것이 없다. 그러면 저들도 어찌 개의를 하겠는가. 저들이 만약 개의를 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경등은 모두가 나의 시종한 신들이다. 그간에는 혹 여러 해를 시강한 자가 있으니 내가 실로 애석해 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우연한 뜻이 아니다. 모두 속히 나의 뜻을 헤아려라. 장래에 무슨 화가 생길 리가 있겠는가. 의심치 말라. 그리고 사직하지 말라.” 했다.

○ 정원이 계하기를 “신등이 몸에 무거운 견책을 지고 바야흐로 사죄를 하기에 여가가 없지만 그래도 신자의 임금을 섬기는 도리로써 하루 관에 있으면 하루의 책무를 다해야겠습니다. 어제 태학 유생의 상소할 때에 사사로서 서로 시키고 부탁하고 혹 가르치고 달랬으며, 혹은 협박 강제를 했다 하며, 이의를 하는 자가 있으면 혹 손도(損徒)를 하고 혹 삭적(削籍)을 하여 핍박이 어지러워 명륜당이 하나의 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슴의 패란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리신 답의 말씀이 도리어 포장을 더하셨으니 옳드려 원하옵건대 성명께서는 살피옵소서.” 했다. 전교하시기를 “입적위장인 권벽, 정복시를 가승지로 차출하여 오늘로 출근케 하고 승지 박근원, 김제감, 이원익, 성락은 모두 체직하라.” 하고 즉일로 정(인사이동)을 하여 이식, 이린, 박송원, 유영립, 김우옹으로 승지를 삼았다.

○ 8일. 양사가 정원을 모두 체차케 명하심이 미안타하여 차를 올리자 답하시기를 “옛날 송나라 때에 육적이 조정을 쥐고 이강이 나라를 떠나자 태학생 진동 등이 상소하여 극론을 했는데 천년의 뒤에도 그 풍절을 들으면 오히려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게 한다. 이제 이 관학의 유생이 조정 의론이 틀어지고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감을 목격하고 두들기고 상소를 한 것은 그 총의의 간담을 볼 수가 있다. 그 소문을 읽어보면 능률하여 범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았다 할 것이요, 횡류 속의 지주이다. 태학이란 수선의 땅이요 공의가 있는 데다 조정의 시비는 일시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태학의 공론이야 어찌 폐한단 말인가? 내가 즉위한 이래로 제생들의 상소가 한두 번이 아니니 그 간에 어찌 남의 사를 파내어 곧은 체하여 나의 귀를 거스르게 한 자가 없었겠는가만 내가 일찍이 안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반드시 따뜻한 말로 달래고 타일러서 보낸 것은 실로 국가의 원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요, 조정의 신하는 죄를 줄지언정 제생의 기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광생의 소위가 혹 지나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러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정직한 기운이 푸른 솔의 외로운 절개보다 과함이라. 내가 천승의 높은 지위로서도 마땅히 몸을 굽히고 낮춰야 할 터이거늘 저 조그만 몇 신하가 근밀한 곳에 가까이 옳드려 있으면서 방자하게 작당을 하여 사람의 말을 막아 끊고 왕의 총명을 가리워 감히 제생들을 패란이라고 지목하니 이는 황장선의 하는 짓을 따르려는 것으로 참으로 소인의 기탄이 없는 자다. 내가 즉시 유폐 방극의 법전을 써서 도깨비 같은 무리로 하여금 어두운 밤

거리에 쏘다니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실형을 하여 결국 한나라 원제(元帝) 같은 꼴이 되었거늘 그 대들 양사가 도리어 친구를 하려는가?” 했다.

○ 7일. 유학 이정우 등이 상소하여 “전일의 상소는 태학의 공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자 답하시기를 “너희들의 소문을 보니 시비가 모호하고 입론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들은 불과 사류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기왕 이런 뜻이 있었다면 상소를 한 것도 무방하다. 다만 너희들이 서로 쟁변을 하고 대립을 하여 꾸짖고 배척하고 하여 끝없는 구설을 나붙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것이 덕업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다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학문을 힘쓰고 속으로 반성을 하여 양지를 얻도록 하라. 그러면 시비의 천성이 스스로 가슴속에 환해지리라.” 했다. ○ 11일. 유학 신업이 상소하여 삼사의 간특한 상황을 극진히 논하고 또 홍훈, 우성전, 김응남, 박근원, 김침, 김수, 홍진을 지목하여 이들이 주창하여 사의를 한다고 했다. 답하시기를 “너의 상소를 보니 진실로 충심이 극진하다. 곧은 사람이다. 지금도 사기가 이와 같은 것은 실로 조종의 배양해온 힘이다. 조정과 변방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너의 아우 신립이 진충보국 하여 몸으로 변경을 지키는 바람에 오랑캐가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고 있으니 옛 양장의 풍이 있거늘 네가 또 떨치고 나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소문을 올려 간사한 자를 배척하여 이러한 기질이 있으니 이 어찌 일가에 충의가 함께 나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이렇게 바치는가? 내 가상히 여기노라.” 했다.

○ 전교하시기를 “평안도 순무어사 김수를 당일로 발송하라.” 하니 수가 이름이 신업의 상소문 속에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소를 하고 대죄를 하며 어사의 체직을 청했다. 전교하시기를 “그대가 시강하기를 여러 해를 했는데 성격이 펍 순직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재능도 있으니 자못 그대 형과는 다르다. 내가 실로 적심으로 미루어 장차 많이 쓰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들 속에 빠졌도다. 내가 그대를 위해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썽이 오는 것은 반드시 그 연유가 있는 것이다. 우선 전의 명을 따라서 서방으로 나가 순무하되 가서 너의 직책을 다하여 나의 명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했다. 김수가 세 번이나 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으나 따르시지 않았다. ○ 13일. 우상 정지연의 병이 중하여 왕이 우승지 이린을 시켜 문병케 하고 또 그가 하고싶은 말을 진술케 하고 아는 사람을 천거하여 자대케 했다. 지연의 계사 내용은 대개 이산해가 일찍부터 공보의 물망이 있었으니 크게 쓰시라는 것이었고 또 말하기를 호오의 편벽된 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영구히 화평의 복을 누리시라고 했다. 왕이 사관을 보내 회유하시기를 “경의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니 내가 마땅히 영념을 하겠다.”고 했다. ○ 13일. 특지로 홍여순을 창평현령으로 홍진을 용담현령으로 김침을 지례현감으로 김수를 이조정랑으로 정창연과 오억령을 이조좌랑으로 발령했다.

○ 우상 정지연이 사록을 보내 계하기를 “박순이 논을 당한 것은 스스로 취한 바가 없지 않은 듯 싶지만 그러나 순이 묘년으로부터 조정에 서서 명절로 자신을 지켜왔으니 삼사가 논하는 바는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신이 실로 편치 못합니다. 사람을 알아보기란 어려운 것이지만 어찌 순 같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혹시 전해들은 바가 잘못된 것이 많은 듯 싶습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경의 계사 말을 보니 더욱 깊이 경이 병중에도 국가를 잊지 못하는 충성에 감탄을 하겠도다. 영상의 위인을 내가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경은 더욱 안심하고 조리를 하라.” 하고 사관을 보내 일렀다. ○ 15일. 정원이 계하기를, “앞드려 신업의 소에 답하신 말씀을 보니 잔뜩 무망을 당하시고 도리어 포장을 더하셨으니, 그의 현란한 말은 족히 많은 변론을 하잘 것이 없고, 간사한 무리들이 그 자제들을 시켜서 이익으로 꼬여 소를 내게 했다는 말은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심지어 조신들을 차근차근 들어서 봉당지에 옹폐한다 하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던 사람인 조고에게 비하였으니, 어디에 임금을 위협

하여 상소하기를 신업과 같이 한 말이 있겠습니까? 이 상소가 하락의 상소와 수말의 말이 거의 같아 불과 성상의 의중을 떠보고 중상을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류의 화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했다. 전교하시기를 “알았노라.” 했다. ○ 20일. 양사를 체차하여 이양원이 대사헌이 되고 백유양이 집의가 되고 정유청, 송승희가 장령이 되고 정윤우, 성돈이 지평이 되고 김우옹이 대사간이 되고 정사위가 사간이 되고 홍인서가 헌납이 되고 유격 박흥로가 정언이 되었다

○ 호남의 유생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전일에 상소했던 유생 유공진 등이 모조리 송응개의 조카 한인(韓載)에게 정거(停學)되었다 하니, 왕이 그를 잡아다가 국문하고 간특함을 품고 사를 부리며 임금을 무시한 부도한 죄로 다스리라고 명했다. ○ 28일. 왕이 정이품 이상을 부르라 명하여 선정전에서 인견하고 하교하시기를 근일 조정이 불안한 것은 오로지 심의경과 김효원 두 사람의 소치이므로 이들을 멀리 귀양보내고자 하니 어떠냐고 했다. 그러자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당초에는 동서의 분당이 비록 이 두 사람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외적으로 나가 있어 조정에 간여치 않고 있으니 반드시 죄줄 것은 없다고 했다. 왕이 또 하교하시기를 “박근원, 송응개, 허봉 등 삼인은 내가 간인으로 알고 있으니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그러자 좌우가 말하기를 “이 같은 사람은 비록 지나친 말은 했지만 성명의 아래에서 말 때문에 죄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강력히 신구를 했다. 그러자 정철이 나아가 계하기를 “이런 사람은 불가불 분명히 그 죄를 밝혀 시비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이에 송응개는 회령으로, 박근원은 강개로, 허봉은 종성으로 귀양을 보냈다. 왕이 종성은 지금 전쟁 중이라 하여 갑산으로 이배할 것을 명했다. ○ 이개로 장흥부사를 삼고 박한구로 창원부사를 삼고 김응남으로 제주목사를 삼으니 모두 특지였다.

○ 29일. 정유길로 우의정을 삼았다. 9월 2일 대사헌 이우직 대사간 김우옹이 계하기를 “어제의 세 귀양보냄은 꾸짖은 말씀이 너무 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하고 망령되고 지나친 것뿐입니다. 형벌이 적중하지 않음을 실로 국가의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이가 나라의 중임을 맡아 재주는 부족하고 뜻은 편벽되어 언론과 처치가 곧잘 인심을 거스르므로 언책의 신이 일을 따라 논박하고 바로잡은 것이니 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개와 봉 등이 오직 이의 옳지 않은 곳만 보고 탄핵을 한다는 말이 너무나 걸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응개가 이미 지척을 당하고 나서 스스로 허물을 자복하지 않아 박순과 이이와 성흔을 공척하여 논하면서 적중치 못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생이 상소하여 논의할 때에는 오직 후설의 신인 것만을 믿고 그대로 펴서 개선하는 것이 직분이거늘 근원 등이 사리를 분석하지 못하고 너저분한 말을 많이 진술하였으니 이는 모두 죄가 없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심정을 추구해본다면 위로 성명을 믿고 있는 생각을 반드시 아뢴 것이요, 그것이 지나쳤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깊이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봉당을 지어 성상의 총명을 가리웠다고 죄를 주신다면 온 나라가 모두 그 억울함을 알 것입니다. 어찌 모든 대부와 국민의 동정은 살피시지 않고 그저 뜻을 잃고 앙앙불락 하다가 기회를 노려 음함하는 한마디 말에 결정을 취하십니까? 청컨대 삼찬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 제주목사 김응남은 오랫동안 경악을 모시어 계옥해 드린 바가 많았고 승지가 되어서는 근로하고 진력한 사람으로서 전하가 일찍이 믿고 의지하시어 정을 쏟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명이 드러나지도 않은 채 짓어든 고자질 말을 믿고 도깨비나 사르고을로 쫓아낸단 말입니까? 근래에 내쫓음이 분분하여 명류가 거의 없어지니 참소하는 입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 대성이 온통 비어버리니 백료의 간담이 서늘하고 충직한 사람의 기가 꺾이니 이는 대단히 사직의 복이 아닙니다. 청컨대 김응남에게 내린 제주의 명도 거두어 주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나라가 망할지언정 삼간인은 결단코 용서해줄 수 없다. 그리고 응남은 내가 실로 그가 근간하고 신중하며

진실한 것으로 알아 믿고 의심치를 앓았었다. 그래서 경안군이 면대할 때에 그를 공척했으나 역시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내가 조정에 임하여 우연히 말하기를 “응남이 능히 직무 일을 잘 살핀다”고 했다더니 송응개가 금방 나서서 극구 찬동을 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응개는 간인의 괴수인데, 응남이 이 적의 찬양한 바가 된 것을 보면 그들이 체결하고 봉당지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래 경안군의 면대를 청한 것을 이이가 사주한 것이라고 한 말들도 반드시 응남의 무리가 제 이름을 바로 지척한 것을 분하게 여겨 감사한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무함의 죄상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내 실로 통분하게 생각하므로 제주에 던진 것이니 제 자신에겐 다행인 것이다. 만약 그가 얼굴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진다면 뒷날 다시 친총치 않으리란 법도 없다. 했다

○ 3일. 수찬 김홍민이 고향집에 있으면서 사직상소를 올려 이이의 잘못된 일을 진술했다. 답하시기를 “이 소문을 보니 다만 삼사의 계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러니 홍민도 낭료 중의 감사한 자와 적당한 자로 족히 이상할 것이 없다. 심지어 이이(李珥)를 작당했다고까지 하여 이로써 나의 뜻을 움직이려 하다니! 아, 참으로 군자라면 그가 봉당을 지은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당이 적은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나도 주희의 말처럼 이 훈의 당에 들어가기 바란다.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이 훈의 당이라고 해도 좋다. 만약 이 훈을 혈뜯고 배척한 자는 반드시 죄를 주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놔두고 책하지 않겠으며 본직만 체차한다.” 했다.

○ 5일. 이이가 파주에 있으면서 상소를 했다. 답하시기를 “아, 하늘이 우리나라를 평치코자 않으시는가? 어찌 이렇게도 경 같은 위인이 시국에 뜻을 얻지 못한단 말인가? 아마도 하늘이 경으로 하여금 심성을 시달리게 하고 단련케 하여 그 부족한 바를 더 보태게 하여 장차 주집(舟楫)과 임우(霖雨)의 책임을 맡기려 함이리라. 하늘이 경에게 요모조모로 성취시켜 옥돌로 만들고 있다고 하겠도다. 오늘의 일은 바로 하늘이 경에게만 후하게 하는 것이니 경에게야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남들 말의 시끄러운 것이야 한번 웃음거리도 될 것이 없으니 경이 어찌 족히 개의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 갑자기 사직의 말을 내는가? 아, 세상이 이미 내려갔고 때가 이미 늦었다. 음란한 음악이 정악을 어지럽혀 올바른 인성을 망가뜨리니 사람을 죽였다는 비방의 소리도 증상 같은 현인이 아니라면 그 모친이 베 짜던 복을 내던지지 않은 것이 요행이다. 경은 불가불 속히 와서 나를 보고 경하여 회포도 진술을 하라. 여러 사람의 심정을 위안함이 이 한번의 행차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 오라.” 했다. ○ 영의정 박순이 병으로 사직서를 바치니 전교하시기를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여 그 낭청을 불러 일렀다. ○ 6일. 특별히 성훈을 임명하여 이조참의를 삼고 인하여 하교하시기를 “그대가 이미 부름을 받고 서울에 들어왔거늘 한번도 들어와 대하지 않고 어찌 나에게 하직도 없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마치 도망치듯 하였는가? 이는 실로 그대를 대우함이 정성스럽지 못하여 남들의 말썽이 일게 한 탓이니 나의 허물이 크도다. 그대는 잡언들로 개의치 말고 속히 올라 오라.” 했다.

○ 유생 박제가 상소하여 시사를 극진히 논했는데 김효원, 김응남, 서인원, 홍진, 송응개, 허봉, 홍여순, 홍훈, 우성전, 김침, 정희적, 이경률, 이징, 김우굉, 이산해, 이개, 박승임, 박한원 등의 간혹한 실상을 말하고 모두 귀양보낼 것을 청했다. 또 말하기를 “김우옹은 비록 착한 듯하지만 역시 그 형 때문에 잘못 들어감을 면치 못했다.”고 했다. 답하시기를 “생각이 있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 말은 망령된 말이다.” 하고 “우선 그대로 내버려둬라.” 했다. ○ 대사간 김우옹이 박제에게 지적을 당했다 하여 사직을 청하니 답하시기를 “이런 사람과 계교할 것이 없다. 내가 그대의 위인을 아니 그대는 다만 나를 믿고 사직하지 말라. 다만 직사를 제대로 거행치 못할까만 생각하고 박제 같은 사람은 도외에 두라. 홍조(대치)의 아래에서 또한 꼭 꾸짖을 것이 없다.” 했다. 그러나 재차 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니 왕이 부

르기를 명했다. 그러나 그대로 사직을 청했다. 답하시기를 “그 사람의 말을 어찌 족히 나무랄 것이 있는가. 이를 인해서 사직을 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린다면 도리어 국체에 손상이 된다. 또 그 사람의 말이 별로 대단하게 지적한 것이 없고 다만 그대가 그 형을 구하려했다는 것뿐이니 그대가 어찌 형이 있는 줄만 알고 내가 있음을 모르는 자인가. 이 도리가 심히 분명하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에 불안하다면 내가 감히 억지로 만류하지는 않겠으니 우선 물러가서 물론을 기다리도록 하라.” 했다. 사간원이 계하여 출근케 해달라고 청하니 따르셨다. ○ 8일. 황해도 유생 등이 상소를 하여 삼사에게 죄를 주라고 청했다. 답하시기를 “너희들의 상소를 보니 충의가 능연하고 사기가 분발하여 가이 죽지 않은 간사한 무리들의 뼈가 오싹해지겠도다. 어찌하면 너희의 무리를 조정에 둘 수 있으리요. 내 심히 가상히 여기고 탄식하노라. 송응개 등을 이미 조금 책벌을 가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알라.” 했다. ○ 특별히 이이를 임명하여 이조판서를 삼았다. ○ 9일. 사간원이 차를 올려 동서의 대립한 근원을 극진히 논하고 또 말하기를 정철이 없어서 화가 생기게 하여 못할 짓이 없었다 하고 그 전후 유생 등의 상소문도 모두가 철의 입김을 받고 한 짓이요, 공론이 아니라고 했다. 답하시기를 “이 차사를 보니 주론이 틀렸다. 내가 바야흐로 물의를 진정시키려고 하거늘 너희가 또 나의 의심을 격동시키니, 이는 반드시 조정의 형통한 운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사는 마땅히 유념을 하리라.” 했다.

○ 11일. 사간원이 계하기를 “근래 조처가 안정되지 않고 인심이 의구하고 있으니 진정의 대책을 지금 놓치고 도모하지 않으면 동인(同寅)의 미를 마침내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일 양사가 병관을 논하고 탄핵한 것을 당초에 공격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지평 이경률이 부망한 사람으로서 동료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스스로 사건으로 만이니 천이니 등의 말을 첨가해 넣어 가지고 쟁변의 단서를 열어놔고 장령 이징은 또 피험하는 계사에서 말을 적기를 지나치게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이 앞에 일통을 냈고 송응개, 허봉 등은 경조하고 과격하게 말을 내어 재차 뒤에 그르침으로써 오늘의 소요가 일게 하였습니다. 이제 응개 등이 죄를 얻기를 과중하게 하여 인정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 당초 일통을 내는 데 뜻도 안 둔 사람마저 모두 분분히 외직으로 내보내지니 물의가 애석해합니다. 그리고 경률 같은 사람은 일을 논하기를 온당치 못하게 하여 일을 전복시키기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견책이 없어 물정이 편치 못하니 청컨대 같이 파직하여 그 잘못을 징계하시고, 예조판서 정철은 본시 강하고 속 좁고 시기 많은 사람으로서 실세한 뒤로 양양 분개하여 불평한 기가 많아 엮고 선동하여 사류들을 분열케 하고 또 기회를 이용하여 모함하며 기탄한 바가 없으니 그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것을 보면 기어코 진신에게 화를 일으켜 사감을 풀어야 말 걱정입니다. 그 정상이 드러나 사람마다 통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진정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 사람이 조정에 있어 살며시 공교한 계책을 써서 어지러움을 야기하여 난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을 시켜 그 죄를 바로 잡으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그러지 말라. 간원이 반드시 어떤 사람의 교사를 받았으리라. 내가 이 의논의 뜻을 안다. 이는 불과 정철을 내보내고 아울러 한두 사람 전 대간에까지 미쳐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것이 화평의 논임으로 인정하여 의심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양이(이경률과 이징) 같은 자야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는가. 무식하여 꼬리나 흔드는 사람에게 불과하여 연관으로 제수되어 사당의 선봉이 되었을 뿐이다.다.

이제 이들의 정상이 패하고 드러나 기술이 궁하고 다하자 양이에게 죄를 돌리려고 하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 하니 그 꾀가 불쌍하도다. 사실이 계사와 같아 당초에 그 일만 논박하여 바로 잡으려 하고 공격할 뜻이 아니었는데, 성상소에서 제멋대로 자기 뜻으로 만(慢)이니 천(擅)이니 하는 말을 첨가해 넣었다면 그때에 삼사는 무엇이 어려워 논박하여 고치지를 않고 도리어 사특한 말을 못할 바가 없이 내

둘러 기어코 총량한 사람을 해치고만 말 작정을 했던가? 그 평일 옆에서 노려보고 으르렁대던 마음이 하루도 가슴속에 잊지 않고 있으면서 다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일조에 이이의 조그만 잘못을 보자 탄환을 끼고 노리던 무리가 참새 뛰듯이 일어나 ‘때는 왔다. 이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설이 꼭 차서 사면으로 둘러싼 것이니 소인의 꾀는 공고하고도 잔인하다 할 수 있는데 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물며 그때에 헌부의 기사에도 또한 이런 말이 있어 이경률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이제 이 기사에 ‘자기 소견으로 첨가해서 넣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모두 사당이니 기사대로 파직시킬 것이요, 정철의 위인만고는 그 마음이 바르고 그 행실이 단정하다. 오직 그 허가 곧기 때문에 당시에 용납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직무에 임하여 진력을 하고 청렴하며 충성한 절의는 초목도 그 이름을 알만하다. 참으로 이른바 완반(조신의 반열) 속에 하나의 악(수리)이라고 할 수 있고 전상의 맹호라 할 수 있다. 지난번 인대한 날에 직언으로 간사한 무리들을 배척해서 내가 이미 오늘 이런 비방을 얻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즉시 철에게 회유를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도다. 만약 정철을 죄준다면 이는 주운(漢의 直臣)을 배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철을 내치지 말고 동서를 거론하지 말고 이왕의 일을 말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면 진정되기를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화평의 지역으로 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앞 수레의 엮어진 결과가 다시 뒤 수레로 옮겨질 것이다.” 했다.

○ 12일. 대사간 김우옹과 사간 홍진과 헌납 홍인서와 정언 이흥로가 피형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이 시사가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낮이나 밤이나 생각을 다하여 성려를 도와드리려고 하며 국론을 진정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터인데 어찌 남의 지주나 받고 전 대간들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경률 등이 지나친 말을 했다고 지목한 것은 그때의 동료로서 이미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따로 설 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사의 잘못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정철을 총칭 정직하다 하시어 전각 위의 범에 비하기까지 하셨는데 성의의 있는 바는 실로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는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의견과 체결한 자가 이 사람입니다. 뜻을 잃고 앙앙불락하여 사대부들을 엮어맨 자가 이 사람입니다. 이제 사를 품고 감정을 풀려는 마음으로 기회를 이용하여 모함을 하는 꾀를 하고 있으니 정인 군자도 차마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성심을 개도하여 사특을 누르고 조정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죄가 한번 죽어 합당합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시끄럽게 사피하지 말고 물러가 직책이나 다하라.” 했다.

○ 영상 박순이 세 번째 사직서를 올렸다. 전교하시기를 “사장이 세 번 올라오니 내 마음이 놀래지는도다. 그러나 경의 심사와 간신들의 무함은 내가 굳이 말할 것이 없다. 이제 만약 경의 사퇴를 허락한다면 이는 강을 건너려는 자가 스스로 그 노를 꺾는 셈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어둡지만 결코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니 경은 속히 출근을 하여 중심을 어루만져 안정시켜 주도록 하라.” 하고 사관을 보내 일렀다.

○ 9일. 영상 박순이 차를 올려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경은 청고하고 신중하고 바른 지조를 지녀 사람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며 안색을 바로 하여 조정에 서니 참으로 만물을 진정시킬만한 교약이요, 충성스럽고 근면하여 나라에 몸을 허락하니 진실로 강을 건널 주춧이라. 바야흐로 의지하고 맡겨려는 뜻이 간절하니 어찌 물러가 쉬겠다는 청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속히 나와서 업무를 다스리고 고사할 생각을 말라.” 하여 사관을 보내 일렀다. ○ 20일. 대사헌 이우직이 피형하기를 “신의 생각이 간원을 체직케 하려고 하는데 동료의 논의가 통일되지 않으니 청컨대 사퇴하여 물론을 기다리겠나이다.” 했다. ○ 홍문관이 차를 올려 간원과 장령 송승희 등을 체직하고 이우직을 출근케 할 것을 청하니 따르셨다.

○ 21일. 이해수를 대사간으로 임명했다. ○ 23일. 예조판서 정철이 사간원의 무거운 논박을 당한 이유로 상소하여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경은 별로 잘못된 바가 없다. 일시 언관의 말을 족히 개의할 것이 없으니 속히 나와 직무를 수행하라.” 했다. 무릇 세 번이나 상소하여 사직했으나 따르시지 않았다. ○ 25일. 영상 박순이 숙배를 하고 중한 탄핵을 받았으니 직에 있을 수 없다하여 사직을 청했다. 답하시기를 “이제 경의 말을 들어 면직을 허락해준다면 사체가 더욱 손상이 된다.” 하고 인하여 인견을 하셨다. ○ 27일. 사헌부가 계하시기를 “한인이 사를 쓰고 망녕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 임금을 무시하는 부도의 마음이야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형을 정지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한인은 바로 송응개의 조카가 되는 자로서 나쁜 짓을 하기에 기탄이 없기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송가 일문(一門)은 바로 몹쓸 기운이 모아진 바니 만약 그 죄를 자복하면 오히려 말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국문을 멈출 수가 없다.” 했다.

○ 10월 9일. 이조참의 성흔이 상소하여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감히 억지로 그대의 뜻을 굽혀 그대에게 집무의 일을 책하리요. 다만 계속해 준 말이나 듣고 함께 이때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함이다. 근일 귀역 같은 무리의 말들이야 있는가. 그대 같은 도덕으로 어찌 이것을 혐의하겠는가.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 오라.” 했다. ○ 13일. 사간원이 계하기를 보은현감 조현이 어리석고 망녕되고 각박하여 백성들이 많이 유산(流散)한다 하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전에 들으니 이 사람이 백성 다스리기를 잘한다고 했다. 그래서 윤택치 않노라.” 했다. ○ 27일. 이조판서 이이가 서울에 들어와 숙사를 했다. 왕이 인견하여 위유를 하고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원제 같은 임금이 되어 소인을 척출하여 멀리하지 못함으로써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가 대하기를 “박근원, 송응개는 실로 간사한 사람입니다만 허봉만은 나이가 젊어 경망할 뿐 그 재주는 아까우니 간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견책을 받음이 너무 중하여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불안해하니 너그러운 법전을 써주소서.” 했다. 왕은 “이 일은 내가 이미 결정을 하였으니 경은 말하지 말라.” 했다. 이가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열 사람이 도적질을 했는데 세 사람만 중죄를 받고 나머지 일곱 사람은 편안하게 사모를 쓰고 공무를 행한다면 왕정에 편파적이란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비록 전리로 쫓아보낸다 한들 어떻게 다시 조정을 혼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서 오직 세 사람만 죄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그 죄를 같이 받기를 원하는 자가 없으니 그들에게 의기가 없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나는 그들의 서리고 웅거함이 이렇게까지 된 줄을 몰랐다. 그때에 한사람도 딴 말을 하는 자가 없었으니 만약에 송나라 정강, 덕우의 초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한 사람도 의리를 위해 죽을 자가 없었을 것이니, 이것이 개탄스럽다.” 했다. 이가 말하기를 “이번 상황은 권간이 조정을 쥐고 있을 때와는 같지 않으니 서리고 웅거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일시 스스로 사류라고 한 자들이 그 의론이 똑같은 것뿐이니 이는 식견이 없어서 그리된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사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흔 같은 사람마저도 용납을 못한 것이니 사류가 어찌 이런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간사로 본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반드시 주상의 뜻을 더듬어 공교롭게 맞추는 것인데 저들은 주상의 뜻이 돌지 않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고집을 하고 있으니 간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지금의 서를 옳다한 자도 꼭 모두가 군자는 아니요, 동을 옳다는 자도 꼭 모두 소인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분별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인신이 임금을 얻어 도를 행함이 반드시 가인 부자와 같아 참조하는 말이 끼어 들지 못해야만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나이가 젊은 우리들이 조정의 권력을 잡은 지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물건이 극에 이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 이제는 주상께서 모든 것을 움켜잡으셔야 할 때입니다. 다만 버

슬 높은 자가 만약 시론을 주장하면 권간의 혐의가 있고 만약 또 비부가 자리에 있으면 도리어 연소배들에게 빌붙어 벼슬길이나 매개해주는 짓을 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 국정이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한 물망이 있어 인물들을 진압할 만한 자를 얻어야만 조정을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 같은 자는 인심에 불만족스러우니 저들이 어찌 심복을 하려 하겠습니까. 성훈이 만약 올라온다면 이쪽 저쪽을 어울려서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을 오게 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했다. 왕이 말하기를 “이미 경이 있으니 내가 마땅히 모두를 맡기겠다.”고 했다. 이가 말하기를 “당금에 인재가 아주 적어 문사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얻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여립은 박학이고 재주가 있으니 이 사람이 실로 쓸만하나 다만 남을 능멸하고 기가 드센 병이 있습니다. 이제 매양 주의(薦望)를 하는데도 낙점(裁可)을 안 하시니 혹시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말이라도 있습니까?” 했다. 왕이 말하기를 “전혀 훼예함은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찌 쓸만하겠는가? 무릇 사람을 쓸 때에는 한갓 그 이름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을 해본 뒤에라야 아는 것이다.” 했다. 이가 또 말하기를 “정구가 쓸만합니다.” 하니 왕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가? 천천히 다시 불러보겠다.” 했다. 이가 말하기를 “무릇 특지로 부른 자는 모두가 주상의 뜻을 감히 받들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마치 성훈의 안 오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훈이 전에는 전혀 벼슬에 뜻이 없었으나 지금은 전같이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이 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니 만약 한관으로 참찬관을 겸하거나 혹은 특진관으로 경연에 입시케 하여 천총을 계속케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선의 관자쯤 어찌 아낄 것이 있습니까?” 했다. 왕이 “김우옹은 어떤 사람일고?” 하시자 이는 “선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비가 밝지 못한 사람입니다.” 했다. 또 말하기를 “한인은 광망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짓은 실로 죄가 있지만, 그러나 사형에 처하기까지 한다면 과합니다. 무군 부도로 죄명을 삼아 공초에 자복하기를 책하니 그래서 불복을 한 것입니다.” 했다. 왕이 “만약 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감히 그런 짓을 했겠는가. 이는 무군이요, 전례를 가탁하여 제 생각을 실행했으니 이는 간인이지, 광망한 사람이 아니다. 박근원은 상하를 옹폐했으니 조고와 같고 한인(韓戴)은 이사와 같다. 정원은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하고 즉시 소장(奏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구례(舊例)이지 근원이 처음 열어 놓은 것이 아니다. 만약 구례를 파했다면 뒤에 반드시 근원의 하는 짓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했다. (이이가) 또 말하기를 “화평의 의론을 주장하는 자는 혹 전일의 삼사 사람들을 모두 등용해야한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은 하나의 조정뿐이거늘 만약 이런 사람들을 함께 등용을 한다면 의론의 갈림이 많아서 마침내 하나로 귀결될 때가 없으리니 모두를 다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했다.

○ 30일. 이조참의 성훈이 서울에 들어와 숙사를 하지 않고 상소하여 사직을 하니 왕이 인견을 했다. 훈이 정원에서 소문이 준을 받아야 입계하는 예를 파하여 옹폐의 점을 막을 것을 청하니 대신들에게 논의하여 정례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11월 22일. 성훈을 특별히 임명하여 이조참판을 삼았다. 12월 14일. 이증을 대사간으로 임명했다.

○ 21일. 사헌부가 계하기를 직제학 이순인이 시세의 좋아함에 쫓아다니며 부합해 진취를 도모하고 본시 물의가 많으니 청컨대 체직을 시키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이순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 회계하기를 “순인이 때를 노리고 형세를 보아 쫓아가 합하고 용납되기를 취하여 출랑대고 안정되지 못하여 물의가 비루하게 여깁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순인이 누구에게 부합하였느냐? 자세히 회계하라.” 했다. 회계하기를 “순인이 모든 일에 생소하고 어리석어 어두우며 시세에 달려가기를 잘합니다. 처음에는 조원에게 붙었고 또 발(李潑)에게 붙었으며 이이와는 소년시절부터 좋은 사이였는데도 그 냉란(得

勢失勢)을 보아 향배를 하니 그 몸가짐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순인이 시강한 지가 오래지 않았고 또 일을 맡겨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위인이 어떤지를 몰라서 물었노라. 계한대로 하라.” 했다.

○ 23일 대사헌 정철이 숙사를 하고 인하여 차를 올려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스스로 고충을 기약하는데 중인들이 허여하지 않고, 홀로 서서 감히 말하니 사람들의 어려운 바라, 사직하지 말라.” 했다. 3월 4일. 전교하시기를 “심희수를 내가 처음 보아 실로 그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른다. 다만 그 말이 자못 간사하고 괴이하다. 무릇 말이란 마음의 소리다. 그 말을 인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 나는 이이가 죽은 뒤에 별로 다르게 대우한 일이 없었더니 그가 감히 말하기를 ‘대우하는 도리는 사생이 다르니 상께서 반드시 생각을 두고 계실 줄로 압니다.’ 했다. 이는 슬그머니 내 속의 깊이를 떠보려는 것이다. 그가 또 말하기를 ‘이이(李珥)를 중론을 물리치고 등용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물리친 것은 바로 간신들의 무함하려는 사설이었거늘 오히려 중론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얼의 길을 터주자는 것은 비록 심히 구차스러운 말이지만 그 조종의 전토가 조만간에 없어지게 생겼으므로 이런 부득이한 일을 한 것이지 이가 어찌 그 몸이 일찍 죽을 것을 알아서 그 서자의 처지를 생각해 둔 것이겠는가.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반드시 그 자식 때문에 이런 납속의 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는 범범하게 외인의 말인 듯 칭탁을 하고 싶은 그 소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꿈에 귀양간 신을 보았다 하여 그것을 시로 읊어 나타내서 은연중 써서 넣은 것도 모두가 앙큼한 술법이다. 매미의 울어대는 소리를 실로 탓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인군의 사람을 쓰는 도리는 불가불 일찍 판단을 해야한다. 대저 그 위인이 말에 민첩하니 혹시 우연하게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정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다. 회계하기를 “엎드려 듣자옵건대 심희수가 아뢰었던 일은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옵고 평일에 이이가 국사에 성심을 기울여 가계를 돌보지 않았으므로 몸이 죽은 뒤에 처자가 의탁할 데가 없음을 경모하여 늘 통석해한 뜻을 품고 있다가 행여 주상께서 따로 은수를 베풀어 그 공로에 보답해 주실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단 언어가 경솔해서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했을 뿐이요, 조금도 그 속에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했다. 전교하시기를 “알았노라.” 했다

○ 조강에 영상 박순의 계한 바가 이러했다. “이이는 국사에 성심을 기울여 온몸을 다 바칠 것을 기약했는데 불의에 몸이 죽었으니 그 애군 우국의 마음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습니다. 마땅히 추송의 전이 있어야할 듯합니다.” 전교하시기를 “논의를 해서 하라.” 하니 대신들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박순의 계사대로 시행을 하소서.” 했다. 전교하시기를 “이이는 내가 그 위인을 흰히 아노니 아래서 다시 아릴 일이 없다. 관은 찬성에 이르렀으니 그 품이 이미 극하였다. 추증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 처자가 파주로 향하고 또 해주로 향한다 하니 이제 일로(一路)를 호송해 주도록 하고 영장을 할 때에는 모든 일을 봐주고 보호하도록 그 도에 일러라.” 했다. 6월 20일. 지례현감 김침이 일찍이 군위현에 가서 그곳 현감 권응인으로 더불어 술에 취해 서로 희학을 하다가 김침이 장난으로 군위관사 안에 있는 갖가지 물건들을 취해 가지고 그대로 안동으로 갔다. 그러자 권응인이 통문을 만들었는데 ‘큰 당이 현의 관사에 들어와 기구들을 석권하여 갔다.’고 아주 장황하게 써서 냈다. 그러자 안동부사 유대수가 그것이 장난인 줄을 모르고 즉시 여러 읍에다 전해 알리니 얼마 안 가서 충청 경기 강원도의 각 읍에 전달이 되어 민병을 뽑고 계엄을 하여 변란에 대비를 했다. 그러다가 경기감사가 처음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그 사유를 계문하니 양사가 그를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해 따르셨다. 11월 하교를 하시어 삼공에게 각기 현재를 천거케 하니 박순은 신응시, 이산보, 서익을 천거하고 노수신은 이발, 김우옹, 한준, 백유양, 윤선각, 정여립, 김홍민, 김수를 천거하고 정유길은 윤선각, 권징, 김수, 한

효순, 홍린상, 이대해를 천거했다. 을유 5월 28일. 의주목사 서익이 상소하여 박순, 정철, 이산보, 박점 등을 논하여 구하고 정여립이 이이를 높이고 섬겼는데 맨 먼저 배반을 했다고 논했으며 남의 말을 빌려서 노수신, 유성룡에게도 미쳐 그 과실을 말하고 또 송응개, 박근원, 허봉 등의 상찬을 풀어 줄 것도 청했다. 정원에 전교하시기를 “이 상소를 보니 간사하고 허황되고 황홀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대저 내가 현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이와 성훈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공격한 사람은 반드시 사인이라고 한 것이다. 단 유성룡도 또한 하나의 군자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비록 당금의 대현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한다. 그 사람을 보고 더불어 말을 해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심복이 되는 때가 많다. 어찌 학식과 기상이 이러한데 거간이 될 리가 있겠는가. 어떤 간담 큰 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정여립의 위인에 대해서는 나도 몇 차례 대해 보았는데 기를 부리는 자 같았으나 실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립도 사체를 갖춘 자이거나 어찌 예조판서를 거간이라고 지목했을 리가 있는가. 반드시 그럴 리가 없다. 또 여립이 이이에게 통한 편지가 있다고 한 것은 서익의 말이 근거가 있는 듯하다. 대저 인정이 분분한 것이 심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했다. 회계하기를 “익의 마음은 과연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룡의 위인은 상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니 신등이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립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확실한지 헛소문인지 알 수가 없고 거간이 아직도 있다는 말은 설혹 있었다 하더라도 익이 여립에게 귀로 들어본 것이 아니니 어찌 그것이 성룡을 가리켜서 한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이로 미루어본다면 그가 말한 갖가지 말은 모두가 근거가 없는 것이요, 더구나 가당치도 않은 말로 노수신에게까지 미쳤으니 그 현란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상태가 더욱 못할 짓이 없습니다. 만약 주상께서 정중하신 하교가 없으시다면 인심의 의혹이 진정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감격의 지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그 상소의 말이 자못 의심스러운데 정여립의 일은 더욱 의심스럽다. 이이가 비록 어질기는 하나 어찌 성인일리아 있겠는가. 그런데 여립이 성인이라고 했다 했고 또 예조판서를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여립이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이는 천지간에 하나의 요물로서 심히 괴이한 일이다. 그리고 이산보는 순박하고 정직하기는 하지만 그 재주가 짧고 박점은 비록 근후한 듯하지만 그 학문이 아무것도 없다. 이 두 사람이 오래 근시로 있어 그 공졸을 감출 수가 없거늘 익이 망령되어 칭찬을 하여 전일의 수단을 씌으로써 연관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움츠려 감히 탄핵을 못하게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익의 마음가짐은 험악하기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무리가 어찌 다른 날 조정에 일통을 내지 않을 줄 아리오, 이것이 염려스럽다.” 했다.

○ 예조판서 유성룡이 상소하여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만약 이를 인해 사퇴를 한다면 귀배들이 좋아 날뛰어 그들의 뜻을 이루어준 격이 되리니 사직하지 말라.” 했다. ○ 사헌부가 계하기를 “서익의 상소가 어지럽게 조정의 일에 미쳤고 남의 말을 칭탁하여 망녕되어 시비를 논했으니 뒷날 사림의 화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터진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파척을 명하소서.” 하니 윤택치 않았다.

○ 사간원이 차를 올려 서익의 마음가짐이 앙큼하고 험악하다고 논하니 답하시기를 “이 차사를 보니 만세에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에 맹수가 있으면 나물을 캐지 못하고 조정에 직언이 있으면 간신이 자취를 감춘다.’고 했는데 사실이다. 경등은 다만 국사에만 진심을 하고 만약 해야 할 말이 있거든 곧바로 말하고 숨기지 말며 익 같은 귀배는 도외에 두라.” 했다. ○ 헌납 김권이 혐의를 피하며 계하기를 “동료들이 차로 서익이 상소한 잘못을 논하려고 하는데 신의 소견은 전과 다른 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미 귀양을 가고 이이가 조정에 돌아왔으니 정여립이 이를 위한다면 마땅히 화평하고 진정하여 하여금 중을 잃지 말도록 경계를 해야 할 것이어늘 그의 편지에 ‘한두 간세한 사람이 비록 이미 쫓겨났지만 큰 간신이 아직도 조론을 쥐고 있어 재앙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요란스럽게 그치지

않고 있으니 후일의 화가 장차 오늘보다 심할 것이요, 또 분갱(焚書坑儒)의 화가 조석간에 닥칠 것입니다.’ 했으니 이 말이 과연 어떨습니까? 그리고 뒷날 경연에 입시했을 때에는 전일 삼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이이에게 탓을 돌려 헐뜯고 배척하고 훼방하기를 못할 바가 없었으니 만약 그의 실정을 안다면 그 누가 여립을 형편없는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익이 당초 남녘에 있으면서 여립의 말한 바를 모두 알았기 때문에 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니 그 뜻만은 화평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자를 깊이 죄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은 동료들의 논의를 지나치다 한 것인데 형편상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청컨대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직접 그 편지를 보았느냐?” 하자 회계하기를 “신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그 편지가 여립이 이이를 꾸짖고 배척하기 전에 나온 것이더냐? 그 뒤에 나온 것이더냐? 하니 회계하기를 꾸짖고 배척한 뒤에 나왔습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너는 그 편지를 보았기 때문에 (서익이) 분해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동료들은 반드시 각기 소견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로 칭탁했다.’ 했던 것이니 그도 무방한 것이다. 단 익의 여립을 논한 일이 설혹 옳았다 하더라도 그밖에 말은 참으로 사실인 것이다. 네가 그를 보고 화평을 주장한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단 네가 이미 그 편지를 보았다 하니 다시 의심할 것은 없다. 그러나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인정이다. 그것은 여립의 편지가 인정에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했다. 헌부가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따르셨다

○ 홍문관이 차를 올려 서익의 상소한 잘못을 논하니 답하시기를 “차사를 보니 곧은 말이 깊이 가상스럽다.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내가 다시 무어라고 말하겠는가. 가슴아픈 바는 한날 변경을 지킨 신하에게 놀림을 당한 셈이니 욕됨이 심하다. 무릇 익의 위인을 내가 일찍이 보았는데 그가 거칠고 드센 듯한 느낌을 주더니 그 사장을 보니 음모가 간사하고 숨겨졌으며 마음가짐이 앙큼하고 잔인하다. 한편으로는 동료를 구해하려 하고 한편으로는 어진 선비를 배척하며 공격하는 말을 가지고 대간들을 험박 억제하여 하여금 감히 관의 간사한 자를 탄핵하지 못하게 하고 의에 죽은 절의를 들어 군부를 겁주어 하여금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겉으로는 화평의 책을 진술하고 있지만 실은 제 생각을 펴 보려는 심술이다. 한번의 거동에 허다한 간계가 들어있으니 가위 귀신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리라. 그 버려놓음이 능란하고 말을 함이 공교하니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소인이지만 재주 있는 자이다.” 이 같은 사람이 어찌 두렵지 않으리오? 내가 전일 말했던 험악하여 헤아릴 수 없는 자이다. 또 조정에 일통을 낼 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임금의 도량으로써 그 정상을 폭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용을 해주고 다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뜻을 보니 간혹 일종의 이상한 말을 하는 자가 있어 부득불 나의 뜻을 알려주어 곧은 신하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하겠다. 대저 괴이한 말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을 하는 것이냐? 어지러움을 빚고있는 것이냐? 옥당은 나를 위해 생각한 바를 논하되 혹시 감회가 있거든 앞으로는 극진히 말하고 숨기지 말라.” 했다.

○ 정원에 전교하시기를 “정여립이 이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는데 사실이냐? 승지 중에 본 사람이 있는가?” 했다. 회계하기를 “여립의 편지를 보낸 일은 여항 간에 떠도는 소문일 뿐 신등은 목격한 자가 없습니다. 또 들으니 그 뒤에 여립이 이이에게 절교하는 편지도 냈다고 하는데 신등은 역시 보지를 못했습니다.” 했다. 6월 16일. 이경진이 상소를 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들으니 정여립이 연중에서 신의 숙부 이이를 헐뜯고 배척했다 하니 신은 놀라고 괴이히 여겨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헐뜯는 것은 족히 괴이히 여길 것이 없지만 여립 같은 사람은 결코 그럴 리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집안의 편지들을 뒤져보니

여립이 숙부에게 준 편지가 나왔는데 ‘귀하가 여러 소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허둥지둥 서울을 떠나신 뒤로 누워도 자리가 편치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간담을 헤치고 심혈을 짜서 간인들의 투기하여 나라를 그르친 상황을 극진히 말하려고 했으나 이윽고 다시 생각해 보니 바야흐로 무장(無狀)하여 군부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의로 보아 두꺼운 얼굴로 말할 수도 없거니와 또 성장이 글월을 올려 변론을 하고 있으니 여립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보니 성장마저도 참소 비방함을 당하여 발을 싸매고 산으로 돌아갔다 하니 분서갱유의 화가 조석간에 다가올 듯합니다. 충분(忠憤)이 스스로 충격이 되어 다시 그만둘 수가 없기로 막 동지들을 규합하여 북궐에 글월을 올리려 했던 바 곧 들려오기를 성상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 날이 중천에 솟아오른 듯하고 도깨비의 무리가 제대로 물러날 것이라 하므로 또 참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한두 간세한 사람은 비록 내쫓겼지만 큰 간신이 아직도 조정의 의론을 틀어쥐고 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요란스럽게 마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하여 하늘이 화를 누우치지 않는다면 혹시 후일의 화가 오늘보다도 심하여 구할 수 없을 것인가 싶습니다. 지금의 봉우 중에 십분 믿을 만한 자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존형에게 바라는 바가 전보다도 더욱 간절하니 그 뜻이 또한 애절합니다.’ 했습니다. 이는 계미년 구월의 편지입니다. 이이(李珥)가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 또 한 장의 편지가 있었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이 홀로 여러 논의를 물리치고 존형을 여러 사람이 미워하는 속에서 뽑아 총재(冢宰)를 삼아 맡기고 의심치 않으시니 이는 참으로 한당 이래로 없었던 성거(盛舉)입니다. 무릇 듣고 보는 사람들이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마는 여립의 기쁨은 더욱 심합니다.’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이의 죽음까지가 겨우 일 개월의 간격인데 어찌 절교한 편지가 있었겠습니까. 했다. 답하시기를 “여립이 했다는 바가 인정에 가깝지 않으므로 내가 혹시 유언에서 나온 것인가 했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으므로 이미 반측무상한 자라고 말을 했다. 또 나에게 절교를 당할 만한 리가 없다면 남이 비록 절교를 한들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했다.

○ 22일. 대사간 최황이 계하기를 “정여립이 이이에게 보낸 편지의 말이 있는 데다가 그가 입대했을 때에 또 그런 말도 했으니 그 마음은 비록 스스로 ‘지금의 옳고 어제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지만 그 또한 형세를 따라 변천함을 면치 못했으므로 조야가 비웃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모르는 이가 없거늘 사간원의 차가 ‘오가는 떠돈 말에서 나왔고 실은 근거가 없다.’고 했으니 이는 여립을 변호하려 하여 그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얼굴을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산보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조정의 안정되지 않은 것은 실로 이런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이 동료들과 서로 용납되지 못하리니 청컨대 신의 직을 파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했다. 홍문관이 차를 올려 최황과 한옹을 함께 체직할 것을 청하니 따르셨다

7월 전 성균박사 정업이 상소하여 시사를 논했다. 정원에 전교하시기를 “이 상소를 보니 나더러 호오가 한결갈지 못하다 하고 억양도 너무 지나치다 했는데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당초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함이 없고 여러 신하 보기를 한집 식구처럼 하여 오직 어진 자는 들어서 쓰고 있으니 이는 온 조정이 다함께 아는 바이다. 오직 배우지 못하여 무식하기 때문에 간혹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병폐가 있고 유난히 사인을 미워하며 척리나 믿고 세도를 부리려는 자는 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이이와 성훈의 두 사람만은 실로 국가의 큰 선비로서 온 조정이 함께 추천한 자다. 그래서 내가 성심껏 맡기고 몸을 굽혀 초빙을 한 것이요, 편사한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며 나의 소견으로 들어올린 것이 아니다. 아, 예로부터 어찌 그 어진 신하에게 예우를 하지 않은 자가 있던가. 그러나 유언으로 고자질을 하고 남을 저격하는 짓을 하며 말을 요리조리 돌려 무함질을 심하게 하고 군부를 농

락하기에 이른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어 내친 것이니 그 중 서너 무리의 못된 자와 교결하여 권세를 끼고 놀아난 것은 척동도 모두 알고 국인들이 비웃고 꾸짖는 바이다. 다만 임금의 도량으로 포함해주고 들춰내지 않아 우선 그 쓸만한 곳만 취해서 함께 시키며 말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상 비루하게 여기는 것이지, 이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의 말이 자꾸만 나오고 공론을 막을 수가 없으니 낸들 어떻게 사정을 줄 수가 있겠느냐? 오직 내 마음은 편(偏)도 없고 아(我)도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억양을 한결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가사 일인의 몸에도 옳고 그른 것이 있으므로 미워하여도 그 잘한 점은 알아주고 좋아해도 그 악한 점은 알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니 이것이 호오의 천리로 임금이라고 해서 사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옳다 하여 그 그른 것까지 옳다 하고 그르다 하여 그 옳은 것까지 그르다 한다면 이는 편당을 지은 험피한 자나 하는 짓이다. 저들이 나더러 이런 짓을 하라고 원하는 것이냐? 근래에 기강이 서지를 못하여 사설이 짝 차고 슬그머니 임금의 마음을 떠보고 무례하여 기탄이 없으니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다. 뒷날 나라 망치는 화를 빚는 것은 반드시 진정이란 말이 그르칠 것이다. 마땅히 나의 뜻을 알라.” 했다.

8월 18일. 양사가 논계하기를 “청양군 심의겸이 전일에 당을 심고 봉비를 하여 사림에 화를 끼치고 밖으로는 조정의 정령과 안으로는 궁중의 거조를 모두 지휘했고 부친상중에 있으면서 옆사람을 시켜 자신을 기복(喪中起用)시키게 하고 거짓 내지(王妃命)라 칭하여 제처를 독살했다하니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한 사람의 시비를 조처하기가 본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정의 어지러움이 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동안 상한 바를 어찌 헤아릴 수가 있는가. 참으로 전고에 없는 바이다. 그렇다고 죄를 준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모인과 교결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당초 원두를 분명하게 분석하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니 진정이니 하는 말을 만들어서 상하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어지럽혀 결국 빚어서 나라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조당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만 어찌 후거의 명감도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몸이 간관이 되었으니 도리상 마땅히 직언을 해야 할 것이어늘 두려워하고 망설여 할 말을 다하지 않았으니 책임의 소재가 있다. 그러나 오늘 하문을 하는 것은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알고자 함이니 이것으로 뒷날 일을 처리하는데 권도를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옛사람의 말한 바, 범에게 상해본 자의 격인 것이다.” 했다. 그러자 양사가 말하기를 “의겸이 박순, 정철, 이이, 박응남, 김계휘, 윤두수, 근수, 박점, 이해수, 신응시 등으로 더불어 교결하여 죽기 살기의 친교가 되어 군세로 서로 의지하여 조정을 혼란케 하고 형세를 엿보았으니 장차 어찌자는 것이었겠느냐?” 하고, 또 “성훈도 역시 그의 농락한 바가 되어 마침내 조정으로 하여금 상하가 틀어지고 안정되지 못하게 했으니 모두가 이 사람의 빚어낸 것입니다. 청컨대 그 죄를 정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기껏 온전해진 뒤에 이 청을 윤택할 수 없다.” 했다. 이때에 대사헌은 이식, 집의는 이유인, 장령은 한옹, 홍인현, 지평은 심대, 이시연, 사간은 이양중, 헌납은 정흥남, 정언은 조인득, 송언신이었고 다만 대사간 이발은 밖에 있어 미쳐 오지 못했다 ○ 25일. 대사간 이발이 숙사를 한 뒤에 계하기를 “전일 본원이 심의겸의 죄를 논하자 주상께서 그가 교결한 사람을 하문하셨으니 간관된 자는 차근차근 세어 빠뜨림이 없게 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그 무리들을 모조리 아시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판서 홍성민, 부제학 구봉령이 모두 의겸의 친우이니, 지적된 자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홀로 들지를 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니 서로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직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겠습니다.” 했다. 양사가 이로 인해 모두 피혐하자 옥당이 모두 출근케 하기를 청하니 따르셨다. ○ 27일. 생원 이귀가 상소하여 논하기를 대

간들이 이이와 성혼이 심의겸과 교결했다 함은 주상을 기망하여 계달한 것이라고 했다. 답하시기를 “너의 상소를 보니 네 말이 모두 옳다. 대간들이 함께 이와 혼을 들어서 말한 것은 혹시 우연에서 나온 것인가 싶다. 의겸을 옳다는 것도 사론이지만 이와 혼을 그르다고 한 것도 또한 정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옳다 하여 그 그른 것까지 옳다 하거나 그르다 하여 그 옳은 것까지 그르다 한다면 이는 바로 편당을 짓고 험피한 자의 하는 짓이다 했으니 나의 뜻이 여기에 모두 나타나 있다.” 했다. 이귀가 재차 상소를 하자, “알았노라.”고 답하셨다. ○ 해주의 생원 조광현 등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을 위해 억울함을 펴달라고 하니 답하시기를 “너희들의 뜻을 잘 알았다.” 하였다. 병술 10월 20일. 공주교수 조현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학술이 바르다는 것과 나라에 충성함을 극진히 진술하고, 또 시인들의 현인을 방해하고 나라를 그르침을 공척하여 수만 자를 써 올렸다. 왕이 안에 놔두고 수십 일을 내리시지 않자 현이 또 상소를 하여 극론을 했다. 답하시기를 “구언을 인하여 소문을 올린 뜻이 참으로 가상하다.” 했다.

○ 22일. 부제학 정운복 등이 차를 올려 조현의 상소 말이 틀리고 망령되었음을 논했다. 답하시기를 “대충 그 끝도 없는 구설을 나붙대어 쓸데없는 시비를 다투는 것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만 못하다.” 했다. ○ 옥당이 밤이 깊은 시각에 차를 바친 일로 인해 정원에 전교하시기를 “어젯밤 삼경에 홀연 종관의 방울을 흔드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고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밤이 깊고 각루도 고요하고 금문도 이미 잠갔는데 무슨 주달할 일이 있을까? 급함을 알림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변경의 보고이리라.’ 하고 좌우를 재촉하여 나가 응대해 보았더니 기껏 한 장의 맹랑한 말이었다. 이런 것은 참으로 한밤중 새도 쥐도 모두 잠든 때에 올려야 할 글월이 아니다. 옥당이 아무리 진언하기에 급하다 하더라도 사체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요, 정원도 출발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땅히 완급을 감안해야 한다. 사체로 논한다면 그대로 있다가 다음날 아침을 기다려 올리더라도 누가 불가하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잠을 깨우고 정신없이 갈팡질팡하게 하여 오직 옥당의 전령만 급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뒷날에도 만약 이번 같은 짓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벌책이 있으리라. 또 궁문은 어둡기 전에 닫고 날이 밝은 뒤에 여는 것이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비록 만승의 존엄함으로도 대궐을 지키는 관리에게 거절을 당하는 법인데 지금의 신료된 자는 출입을 맘대로 하려 하고 각기 제멋대로 하여 대궐을 보기를 여리의 문만도 못하게 생각하니 자못 옛사람들과 다르다.” 했다.

12월 3일. 영상 박순이 온천에 목욕하러가 영평의 촌가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경의 상소를 보니 경이 몸을 숨기고 돌아오지 않으려는 생각인데 경 자신에게는 잘된 일이 될 수가 있어도 일시의 풍기 형상이 좋지 않다. 전에도 그래서 경더러 서울로 올라 오라고 재촉을 하고 초야의 속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한 것이니 이는 경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가 도착하는 날에 즉시 길을 나서서 서울에 와서 살라. 속히 올라 오라.” 했다.

○ 11일. 조현이 송응개가 그 부모를 매장할 때에 수도를 썼으니 이는 천자의 예를 참람하게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송응형이 상소를 하여 억울함을 펴달라고 했다. 전교하시기를 “자연 공론이 있을 것이 어늘 어찌 곧장 와서 분쟁을 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송장이 되게 하는가. 원래는 마땅히 처벌로 다스릴 것이로되 우선 따지지 않겠다.” 했다. 정해 3월 6일. 유생 조광현과 이귀 등이 상소문을 기술하여 그 스승 이이가 시배들에게 무함되었음을 극진히 논하고 조정 신하들을 낱낱이 꾸짖어 수만 자를 기록하고 미쳐 올리지 못했는데 이의 형 아들 이경진이 그 이름으로 대신 올렸다. 왕이 묻기를 “너의 상소에 ‘부조하고 진출하기 좋아하는 무리가 다투어 일어나 부합을 했으니 그때에 의겸의 문을 출입하면서 조석으로 추측하고 노안 비슬을 지닌 무리가 맞고 급신거리며 구멍을 뚫고 들어간 자가 적지 않았다.’ 했고 또

이르기를 ‘전일 의겸에게 붙었던 무리들이 일시에 동인에게 빌붙어 창을 돌려서 의겸을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임금을 섬김에 숨김이 없는 것이 옛 도리이다. 너희는 모두 세워서 대답하라.” 했다. 귀가 아뢰기를 “문자로는 상실하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면대를 하겠습니까.” 했다. 전교하시기를 “창졸간에 글로 계할 수 없거든 우선 물러가서 써서 계하라.” 했다. 이귀가 글로 계하기를 “죽은 스승 이이는 평생을 적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었는데 한번 시론에 거슬리자 엉뚱한 비방이 백 가지로 나왔으니 이래서 신이 이해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이의 본심을 들추어 밝히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만약 이의 심사가 조금이라도 발명이 된다면 신이 비록 한번 주륙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치 않겠습니다. 이른바 부조하여 진술하기를 좋아하는 자란 백유양, 노직, 송언신, 이호민, 노직이니 이들을 말합니다. 만약 모두 진술하자면 어찌 이 몇 사람뿐이겠습니까. 전일에 의겸을 좇아 붙었다가 실세를 한 뒤에 도리어 의겸을 공격한 자는 박근원, 송응개, 윤의중이니 이런 무리는 족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 서로 알고 지남이 이에 비할 바가 아닌 자가 있으니 바로 이산해입니다. 의겸을 알고 지낸 것으로 죄를 삼는다면 어찌 산해는 공격을 하지 않고 이만 공격을 합니까? 그들이 산해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한갓 시배에게 거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해가 이이(李珥)로 더불어 젊어서부터 친구였는데도 한마디 이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이것이 신의 크게 서운해하는 바입니다. 이가 의겸과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깊이 아는 바입니다. 산해가 의겸에게 준 시에 이르기를 ‘서울에 봄이 오면서 거듭 편지를 보았고, 산 길 밤이 어둑할 때 곧잘 만났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과연 의겸을 모르는 자입니까? 이것이 신의 이른바 조석으로 추측을 하는 자란 것입니다. 이른바 노안 비슬이란 것은 정희적을 말합니다.” 했다.

○ 대사간 이발이 피험하고 극론하기를 “전일 이이로 더불어 편지를 왕복하다가 처음에는 합하다가 나중에는 달라졌는데 이제 이귀가 왕복의 편지를 들춰내어 상소하면서 현저하게 욕하고 배척을 하니 청컨대 사직을 하겠나이디.” 했다. 답하시기를 “대저 인신이 반복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했다. 간원이 출근시키기를 청하니 따르셨다. 이발은 사직 체차를 청했다.

○ 9일. 이산해가 상소하여 사직을 하니 답하시기를 “내가 일찍이 스스로 사람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며 말하기를 국가가 전복하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능히 경등 몇 사람을 쓰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찌 한낱 서생의 말 때문에 의심하고 머뭇거리 그 말에 흔들린단 말인가. 그 사람의 심지를 짐작해 본다면 그 스승이 시배에게 무함당함을 통분해하여 대궐에 와서 외치고 호소한 것에 불과하니 해로울 것이 없다. 경은 다만 내가 말한 뜻만 헤아리고 국사에 진심만 하라.” 했다.

10월 21일. 왕은 일본국이 그 국왕을 폐하여 내쫓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이는 찬탈하고 시해한 나라이므로 그곳에서 보내온 사신을 마땅히 대의로 깨우쳐 일러서 들여보내야 한다면 종삼품 이상의 관원들을 명하여 그 가부를 논의해서 비밀히 입계하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가 말하기를 화외의 나라를 예의로 책망할 수 없으니 사신이 왔으면 마땅히 전례대로 접대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 11월. 조인득을 대사간으로 임명했다. 무자년 정월에 전 현감 조현이 상소하여 노수신, 정유길, 유전, 이산해, 권극례, 김응남 등이 당비하여 나라를 병들게 한다고 논하고, 또 박순과 정철의 어짐을 논하면서 그들이 먼 황야에 버려져 있으니 속히 불러와야 한다 하고 또 논하기를 송익필, 서기 등이 장수의 재질이 있다고 논했다. 비망기에 이르기를 “이제 조현의 소를 보니 이는 인요(人妖)이다. 하늘의 견책하여 일러줌이 지극히 깊으니 조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아마도 과매한 사람이 현상명경에게 평일 지성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위임하기를 오로지 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오게된 것일까? 더욱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상소문이란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상소문은 차마 내릴 수가 없으니 한번 내린다면 손상된 바가 심히 많

겠으므로 내가 차라리 허물을 받기로 하고 소문을 이미 태워버렸다. 원하노니 사관은 나의 허물을 크게 써서 후세를 경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족하겠다.” 했다. ○ 사헌부가 계하여 청하기를 “조헌을 사판에서 삭제해버리소서.” 하니 답하시기를 “다만 내버려두고 족히 계교할 것이 없다.” 했다. ○ 홍문관이 차를 올려 조헌을 죄줄 것을 청하니 답하시기를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본디 한헌에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요, 저도 어찌 제 말이 시행되리라 생각을 하겠는가. 다만 그 심술이 있어서 그 소사를 전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 상소를 태운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태운 것이다. 만약 소문을 태운 것으로 잘못이라 한다면 내가 달게 그 책을 받고 뒤에 마땅히 경계를 삼으리라. 만약 하나하나 비교하여 더 불어 따지고 상대하여 변론을 한다면 도리어 조정의 수치가 되고 한갓 대체만 손상시킬 듯하니 심히 나의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다시 유념하도록 하라.” 했다.

○ 경강이 위로 광나루까지 물빛이 황탁해져 피갈이 되기를 며칠동안 이어졌다. 기축 10월 2일. 황해도 감사가 사람을 달려보내 밀장을 올리니 이날 밤에 삼공과 육승지를 명하여 입대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다시 입직총관과 옥당의 상하번을 모두 입시하라고 명했는데 오직 검열 이진길만은 입시치 말라고 명하고 탐전에서 황해도의 비장을 모든 신하들에게 내려 보였는데 그것은 안악과 재영 등의 관이 변을 아뢰는 사건이었다. 대개는 전주에 거주하는 전 수찬 정여립이 반역을 도모하여 그 괴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 동당이었던 안악의 조구가 밀고를 했다는 것이다. ○ 의금부 도사를 해서와 호남 등의 도로 나누어 보냈다. ○ 이진길을 의금부에 하옥케 했다. ○ 7일. 의금부 도사 유담이 사람을 달려보내 계하기를 “전주부에 달려 이르러 군사를 발하여 정여립의 집을 포위하고 체포하려 했더니 여립이 깃새를 알아차리고 이미 빠져나가 도망을 쳐버렸었습니다.” 했다.

○ 8일. 황해도의 죄인들을 잡아와 대궐 뜰에서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 17일. 선전관 이용준과 내관 김양보 등이 정여립을 수색 토벌하기 위하여 전주로 달려갔다. 그런데 들으니 여립이 그 자식 옥남과 동당인 안악 교생 변사와 박연령의 자식 춘룡으로 더불어 진안의 죽도에 숨었는데 현감 민인백이 관군을 거느리고 뒤를 밟아 쫓아가서 포위를 하니 여립이 삼적으로 더불어 바위골짜기 사이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인백이 사로잡으려 하여 주상의 명을 이르고 관군을 일러 핍박하지 말라 했는데 여립이 먼저 칼로 변사를 찍으니 즉사하고 또 그 자식 옥남을 찍었으나 칼날이 그 목에만 닿아 죽지 않고 땅에 거꾸러졌다. 이어서 칼자루를 땅에다 박아 세우고 스스로 칼날 위에 덮쳐 목을 베니 소리가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 이때에 관군이 급히 나아갔으나 이미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은 시체 두 구와 살아 있는 적 둘을 잡아 왔다고 했다. ○ 20일. 왕이 친히 옥남과 춘룡과 박연령을 국문하시니 모두가 여립과 반역을 함께 모의한 사실을 자복했다. 그래서 군기사의 앞에서 찢어 죽이고, 또 여립의 시신도 찢어 죽이도록 했으며 백관들을 서립(序立)하여 보도록 명했다. 11월 3일. 생원 양천회가 상소하여 논하기를 정적이 조정의 관리들과 긴밀히 사권 자가 펴 많은데 이제 모두 태연히 도로에서 행인을 비끼게 외침을 하고 있다고 했다. ○ 4일. 예조정랑 백유함이 상소하여 논하기를 이발, 이길, 김우옹 등이 역적과 교통을 했다고 했다.

○ 7일. 양사가 논하여 탄핵하기를 우의정 정언신과 이조참판 정언지가 역적으로 더불어 친후했으니 파직시키라고 청하니 따르셨다. ○ 8일. 인사이드동이 있었으니 정철로 우의정을 삼고, 성훈을 이조참판을 삼고, 백유함으로 헌납을 삼고, 최황으로 대사헌을 삼았다. ○ 12일. 왕이 정언신, 정인지, 홍종록, 정창연, 이발 등을 친히 국문했다. 그것은 여립의 조카 정즙의 공초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지종록 발을 모두 멀리 귀양보냈는데 언신은 중도부처케 하고 창연은 놓아보내고 백유양, 이길은 역시 멀리 귀양보냈다. 12월 4일. 양사가 계하기를 “급제 정언신은 그 변이 일어났던 초기에 탐전에서 면대할

때에 이미 역적을 보호하려고 서두르는 뜻이 있었고 추국을 할 때에도 역시 중시 현란시킨 흔적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원고를 추궁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옥사를 늦추려 하였으니 청컨대 멀리 귀양보낼 것을 명하소서. 그리고 급제 임국로도 언신에게 부합하여 역적을 보호하려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옥사가 소루해진 것이 모두 이 사람들로 말미암았으니 어찌 삭탈관작에만 그쳐서 되겠습니까. 청컨대 문외출송을 명하소서.” 하니 모두 따르셨다. ○ 6일. 헌남 백유함이 계하기를 “행호군 홍여순의 위인이 앙금하고 험악하고 시기하고 탐욕이 많아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때에 탁란질을 한량없이 하고 형장을 함부로 잔혹하게 하여 백성을 못살게 굴었으며 흉포한 위세의 극치는 감사(監司)도 멸시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사랑이와 호랑이처럼 뵈입니다. 그가 남을 시기하고 모해할 마음을 감추고 있는 실상은 실로 조정안의 한 적이니 청컨대 하직을 시키고 서용치 마소서.” 했는데 윤희치 않았다.

○ 8일. 전교하시기를 “고 집의 이경중이 일찍이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에 역적이 한창 이름이 있는데도 그가 형편없는 자라하여 극력 배척을 함으로써 청현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논핵만 당했었다. 그 선견의 충성이 고인에 내리지 않으니 그에게 판서직을 추증하고 좋은 시호도 주어 포창케 하라.” 했다.

○ 10일. 좌상 이산해에게 전교하신 말씀의 대략에 이르기를 “여립과 교결한 사람을 논하는 것은 옳지만 근일의 기상이 파급되어갈 점이 있는 듯하니 그 논의가 지나친 사람은 하여금 역제를 하고 혹은 면대를 청하게 하라.” 했다. ○ 지평 황혁이 피혐하고 계하기를 “주상께서 상신에게 내리신 교는 그 진정 시키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다만 이제 역적이 갑자기 일시 이른바 명류(名流)란 자에게서 나오고 보니 그 평일에 체결하고 추장(推獎)하여 그 성세를 도와 이 변란을 빚어 이룬 자는 왕법으로 해아린다면 당연히 그 죄가 있습니다. 언관이 들은 바에 의거하여 차례로 논열함에 그 파급될 걱정은 신등도 또한 일찍이 그런 염려를 하여 일인이라도 죄 없이 당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물며 사오 년 이래로 조정이 안정되지 않아 수사(收司)의 법률이 한층 더 깊어져서 사우(師友)와 훈인관계의 친척까지도 모두 중상을 당하므로 사람마다 모두 팔뚝을 걸어 부치면서도 감히 말을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치화를 바꾸고 모든 정책을 새롭게 하는 초기를 당하여 누가 감히 언론이 다르다 해서 기회를 이용해 남을 궁지로 빠뜨려서 스스로 소인의 복철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간에 만약 백성들에게 탐학을 하는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득불 죄에 따라 살피 탄핵해야 하므로 신이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려고 대사헌 최황에게 알리고 물었던 바 대답한 말이 불손하고 모든 동료 대하기를 낭리처럼 합니다. 신이 비록 외람되게 이 부에 들어 있지만 사직을 청합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최황의 뜻이 체를 얻은 것이다. 네 어찌 감히 이렇게 부정할 말을 하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 했다. 대사헌 최황과 장령 윤섬과 심희수와 지평 신집이 모두 피혐하여 물러갔다. 대저 혁이 홍여순을 논박하려 했는데 황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 11일. 집의 성영이 계하여 최황과 황혁을 모두 출근케 할 것을 청하니 답하시기를 “황혁은 체차하라.” 했다. 최황이 황혁을 체차한 것이 미안하다 하여 다시 피혐하니, 답하시기를 “혁의 말은 몇 줄에 불과했으나 그의 마음이 이미 드러났으니 내가 어떻게 체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했다. ○ 12일. 교생 선홍복의 집에서 수색해낸 문서에 역적 정여립과 상통한 사실이 드러나 잡아다가 국문하니 자복을 하여 처사를 했다. 홍복이 공초에서 이발, 이길, 백유양을 끌어들였고 또 말하기를 이진길이 참서를 유덕수의 거처에서 얻었다고 하여 잡아다가 국문하라고 명했다. 덕수는 신문을 받다가 죽고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은 유배지로 출발해 가다가 다시 나포되어 와 국문을 받다가 모두 장하에 죽었다. ○ 14일. 전라도 유생 정암수 등이 상소하여 이산해, 유성룡을 논하면서 아주 꾸짖고 배척을 했다. 왕이 산해와 성룡을 인견하고 위유를 했다. 그리고 암수 등을 잡아다가 왕옥에 가두라고 명하였는데 나중에 대간의

계한 바와 관학 유생들의 상소하여 논구함으로 인해 다시 국문하지 말라고 명했다.

○ 15일. 조현이 적소로부터 풀려 돌아와 중도에서 상소를 했고 호남의 유생 양산숙 등도 상소를 했는데 대개가 모두 당시 재상들을 공격한 말이었다. 전교하시기를 “이 몇 사람들의 올린 상소가 모두 조신들을 공격하고 오직 우상 정철 이하 몇 사람만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직언이라 하면서 도리어 그 정상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조현 간귀가 아직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조정을 경멸하여 더욱 방사하고 기탄이 없으니 이 사람이 반드시 다시 마천령을 넘으려나보다.” 하고 또 전교하시기를 “조현은 간귀이다. 그 마음이 심히 잔인하니 그가 드러나게 주륙당함을 면한 것만도 다행이다. 그러나 언로와 관계된 일이고 또 대사를 지낸 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송한 것인데 이러한 사람을 주상의 뜻도 여쭙지 않고 서둘러 채용하여 인심을 현란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짓이다. 그날 출근했던 이조의 당상관을 체차하라.” 했으니 판서 홍성민이었다. ○ 16일. 특지를 내어 유성룡으로 이조판서를 삼고 권극례로 예조판서를 삼았다. ○ 전교하시기를 “사노 송익필 형제가 조정에 원한을 품어 기필코 일통을 낼 것이고, 간귀 조현의 상소는 이 사람이 시키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극히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황차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타나지 않는다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잡아 가두고 끝까지 추궁할 것을 형조에 말하라.” 했다. ○ 양사가 조정에서 논하기를 주상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자고 했다. 그러자 헌남 백유함만 홀로 불가하다 하고 피형하여 인해 정사를 하니 체직을 했다. 이는 13일에 있었던 일이다. ○ 20일. 홍문관이 차를 올려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자 답하시기를 “옥당이 나로 더불어 강학을 한 지 이제 몇 년인가? 아직도 나의 뜻을 모르는가? 이제 이 일은 다만 조종(祖宗)의 지휘를 받들었을 뿐 조그만 공도 기록할 것이 없으니 지극히 과당한 말이다. 마치 참으로 큰 공이라도 있는 듯이 하니 천지에 부끄럽고 후세에 기를 끼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니다. 설사 만에 하나 나더러 작은 공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짓을 할 것이 없다. 삼대(三代)는 말할 것이 없고 한고조(漢高祖)와 광무황제(光武皇帝), 그리고 우리 명태조(明太祖)는 중원(中原)을 재조(再造)하여 공이 그보다 클 수가 없었지만 칭호를 지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오직 당나라 덕종의 무리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다가 갈팡질팡하게 되자 칭호를 깎아 없애기에 바빴으므로 지금까지 천년 동안 사람으로 하여금 손뼉을 치며 웃게 하고 있다. 내가 비록 착하지 못하지만 조금은 서사를 알고 있으니 어찌 감히 여러 신하들에게 밀려 내 마음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옥당의 모든 선비는 마땅히 내 뜻을 헤아려 속히 정지하라.” 했다. 경인 2월 11일. 대전의 존호를 올리기를 정륜입극성덕홍렬(正倫立極盛德弘烈: 윤리를 바로잡고 법도를 세우고 덕이 성대하고 공열이 크다)이라 하고 중전의 존호는 장성(章聖)이라고 했다. ○ 12일. 이에 앞서 왕이 박충간, 이축 이하와 죄인을 국문했던 제신 등을 명하여 평난공훈을 모두 기록하라고 명했는데 양사가 그것이 너무 범람해졌다고 논하자 지평 윤형이 계하는 말에 “선조시대의 공훈을 기록한 것도 십 년 뒤에 고친 것이 있는데 그보다는 당초에 바로잡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 물정이 놀랐다. ○ 18일. 대신에게 전교하시기를 “중추 노수신이 갑신년에 정부에 있으면서 명을 받고 현을 천거했는데 그가 김우옹, 이발, 백유양, 정여립을 천거했다. 이 천거한 글월을 펼쳐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끝이 선다. 자고로 이런 대신도 있었던가? 이 경은 내가 본디 우대했던 바이지만 흥망에 관계된 바이므로 내가 덮어둘 수가 없다. 조정의 공론에 따라 처치하겠다.” 했다. ○ 19일. 좌의정 정철과 우의정 심수경이 회계하기를 “앞드려 성교의 노수신 일을 말씀하심을 듣고 황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신이 불세의 대우를 무릅쓰고 전에 없는 은총을 입었으니 마땅히 왕실에 마음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현인을 천거했어야 할 것이어늘 그 천거했던 바가 거개 역적의 유배가 많았습니다. 바야흐로 사의가 횡행하여 역적 놈의 성세를 빚어낼 때에 일찍이 일언으로도 금계하거나 제복

하지 못하고 시배들이 놀아나는 대로 한결같이 들어주고 도리어 그들을 천거했으니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이 일어난 뒤에도 오히려 대죄할 줄을 모르고 그저 허술한 몇 마디 말로 범범하게 진달하고 물러났으니 그 쇠약했음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과 아는 것이 밝지 못하고 일국의 기세에 놀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수신은 사조의 구신으로 노병이 이미 심하여 지금 부어오른 증세로 목숨이 실날같습니다. 주상께서는 구신을 대하심에 불가불 시종의 의를 지니시어 관용을 보여주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알았노라.” 했다. ○ 대사헌 홍성민과 대사간 이산보가 합계하기를 “노수신이 현인을 천거하라는 명을 받고 역적으로서 명에 응하였으니 당시에 역절을 비록 다 드러내지 않았으나 그 흥사하고 음험한 모습은 간혹 분명하게 알아본 자가 있었거늘 이를 천거까지 하여 역적 논의 능가하는 마음을 조성하고 일찍이 일언으로도 그 싹을 꺾지 못했으며 도리어 밀어주고 끌어당겼고 변이 일어난 뒤에도 잘못 천거한 것을 허물로 자책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처치하자고 말을 하였으니 그 중시 일은 그르친 죄가 큼니다. 청컨대 관작을 삭탈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파직하라.” 하고 연해서 삼일을 계했으나 윤택치 않았다. 4월 1일. 사간원이 계하기를 “여립이 화심을 품고 있는 지가 일조 일석의 일이 아니었는데도 전조(銓曹)가 일찍이 김제군수와 황해도사 등의 망으로 올려 그가 원하는 계책에 맞추어 주어 변이 생각지 못한 데서 날 뻔했습니다. 그때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파직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니 윤택치 않는다.” 했다. 이산해가 판서일 때에 김제의 망에 올랐고 이양원이 판서일 때에 황해도사의 망에 올랐다

○ 당시 정언 황신이 이 말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정철의 죄라고 하여 파직 추고하고 말았는데, 신묘년의 화가 본시 이로 말미암았다. 5월 24일. 특지로 황신을 고산 현감으로 제수했다. ○ 이산해가 사직을 하니 비답을 하시어 위안하고 이르기를 아주 지극히 했다. 6월 19일. 전교하시기를 “정언신이 ‘고발한 자를 베고 싶다.’ 한 말을 공공연하게 발설했으니 놀라운 일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는데 조정에서 한 사람도 말하지 않다가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처음 듣게 되었으니(전주 양형이 상소함),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언신은 몸이 대신이 되어 가지고 감히 기망을 하자 그 형 언지가 곧 본을 받았으니,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에 임금이 없는 것이다. 통분을 금할 수 없다.” 했다. 추국청이 회계하기를 “언신의 이 말은 전파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지연되어 상문하지 못했으니 신의 죄가 큼니다. 언신의 말이 이미 드러난 이상 그냥 놔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 다른 대신들을 불러 죄를 논의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한대로 하라.” 했다. ○ 왕이 추국에 동참한 대신과 금부당상을 부르라 명하여 “언신의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하고 묻자 김귀영은 “왼쪽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했다.”고 했고 이준은 “얕은 자리가 조금 멀어서 듣지를 못했다.”고 했고 이산해는 “날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황해감사가 장계를 올린 뒤에 회계를 할 때 언신의 그 말이 나온 듯합니다.” 했고 유홍과 홍성민은 모두 들었다고 했다.

○ 대사헌 홍성민이 계하기를 “언신이 발언을 할 때에 신이 실로 항거를 했고 이산해도 또한 그것이 불가함을 말하고 신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나도 판서의 뜻과 같다.’고 했습니다.” 언신이 재차 삼차 소리 높여 말을 하자 산해가 조금 굴하여 말하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의 말이 옳소.” 했습니다. 그리고 언신이 황해감사를 추국하려 하므로 신이 강력히 그것이 불가함을 말하여 그 일이 그대로 그쳐버렸습니다. 이제 산해의 계에 ‘분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는 반드시 산해가 크게 앓고 난 뒤에 정신이 어두워져 잊어버려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고 못하고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천일이 위에 있고 귀신이 곁에 있는데 군부를 기망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이 이런 생각을 두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아뢰오니 언신으로 더불어 그 죄가 똑같습니다. “사

구(司寇)의 형벌을 받기를 청합니다.” 했다. 답하시기를 “경이 이미 보았다면 당초에 즉시 말하지 않고 이제야 유생의 상소를 인해 많은 말을 하고 있으니 심히 도리에 맞지 않다. 무릇 가부를 논할 때에 사람의 말이 혹 이렇고 혹 저렇고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단 언신의 말만은 실로 패역한 것인데 어찌 한사람의 말로 인하여 딴사람의 계하는 데다 떠넘기려 하는가? 나는 실로 경의 뜻을 알 수가 없도다. 이미 사직을 하였으니 계한 대로 체차를 하노라. 했다. 20일. 이산해가 정사를 했다. 전교하시기를 “경이 어찌 이렇게 정사를 하는가? 온갖 꾀로 경을 도모하려 하는 모습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만인이 공격을 해도 좋다. 아, 경이 떠난다면 다른 경들도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좋은 일인가. 경은 다시는 정사를 말고 속히 출근을 하라. 그러면 그런 짓을 후회한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반드시 (경을) 후회하게 만드리라.” 했다.

신묘 2월 29일. 이조판서 유흥과 참판 이증을 추고(推考)로 인해 체직을 명했다. 참의 이덕형이 병으로 속사(肅謝)를 못했는데 불려서 정사(政事)를 하려 했으나 오지 않아 특지로 우상 유성룡에게 이조판서를 겸하게 했다. 최흥원으로 이조판서를 삼고, 부제학 이성중으로 충청감사를 삼고, 행호군 이해수를 여주목사로 제수했다. 해수가 일찍이 여주를 지키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체차가 되었는데 이제 재차 부임을 한 것이다. 윤 3월 6일. 사헌부가 계하기를 “이조정랑 유공진이 인물이 거칠고 용렬하며 검열 이춘영은 위인이 들뜨고 망령되어 재상의 문을 출입하니 청컨대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따르셨다. ○ 14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돈녕 정철이 조정의 기강을 멋대로 희롱하고 일세를 제재하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따르셨다.

○ 16일. 전교하시기를 “옛날에 대신을 파직시켜 내칠 때에는 조당에 방을 내거는 것이니 그것은 죄상을 국민의 이목에 분명히 알려주어 뒷사람을 징계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 정철의 파직하는 일을 전교받은 대로 고사에 따라 조당에 방을 내걸어 보이도록 하라.” 했다. ○ 양양, 삼척, 울진 등지에서 개미가 바다를 덮고 나와 해안에 가득 차 에워싸고 싸움질을 하듯 했는데 그중 생기가 있는 것은 곧 날아갔다고 한다. ○ 5월. 선산지방에서 참새가 버들잎만큼이나 작은 것이 새끼를 낳았는데 크기가 늙은 까마귀만하고 오색이 찬란하게 갖추어졌는데 다 자라자 고성 의 산중으로 날아가 또한 백치(白雉)를 낳았다. 이 모두를 경상감사가 치계를 했다. 6월 22일. 도목정 일체의 인사이동을 했는데 전 사인이었던 백유함과 전정랑이었던 유공진을 모두 학관으로 의망하자 상께서 진노를 하시어 “죄가 중한 사람을 사장의 망으로 올려 주상의 뜻의 천심을 떠보려 한다.”면서 “어떤 낭관이 의망의 말을 냈느냐?” 했다. 당상관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하자 재상 힐책하고 물으시므로 하는 수 없이 정랑 윤돈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대답을 했다. 주상이 그를 의금부에 잡아내려 추고하고 삭직하여 방송하라고 명하였다. ○ 23일. 대사헌 이원익과 집의 김득은 밖에 나가 있고 장령 조인득과 윤담무와 지평 이상의와 정광적과 대사간 홍여순과 사간 권문해와 헌납 김민선과 정언 이정신과 윤엽 등이 합계하기를 “정철, 백유함, 유공진, 이춘영 등이 서로 봉비를 하여 조정을 혼란케 하여 자기들과 이견을 가진 사람을 모함하려 하여 유생들을 시키고 달래어 상소케 하여 명경과 사류들을 역류로 몰아넣어 모조리 섬멸하려고 하니 모두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따르셨다. 정철은 진주로 유배하고 백유함, 이춘영은 처음 서도로 유배했는데, 주상이 유배지를 옮기라고 명했다. 이에 진주는 강개로 바꾸고, 백유함은 경흥으로 보내고, 유공진은 경원으로 보내고, 이춘영은 삼수로 보냈다.

○ 남부 유학 유밀의 집 뜰 가운데 갑자기 까만 물건이 짝 깔려 들여다 보니 검은 개미였고 죽은 놈이 즐비했는데 혹은 목이 잘렸고 혹은 허리가 끊겼고 혹은 흰 날개에 검은 몸을 지닌 것이 있었다고 한다. ○ 25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우찬성 윤근수, 판중추 홍성민, 여주목사 이해수, 양양부사 장운익 등이

정철에게 당을 지어 붙여 간사한 자를 끌어들이니, 청컨대 함께 삭탈관직하여 내보내소서. 하니 따르셨다. 뒤에 홍성민은 부영으로, 이해수는 종성으로, 장운익은 온성으로 귀양 보냈다. 7월 2일. 양사가 합계하기를 “병조판서 황정욱과 승지 황혁과 유근과 호조판서 윤두수와 황해감사 이산보와 사성 이흠과 병조정랑 임현과 예조정랑 김권과 고산현감 황신과 사과 구만 등이 정철에 당부하여 사람들을 상하고 해친다.” 하고 또 논하기를 “정욱의 부자가 방자하고 탐탁하니 청컨대 모두 파직을 하소서.” 했다. 왕이 정욱과 혁의 품문은 꼭 사실이 아닐 수 있을 것이고 두수는 관후하고 재지가 있으며 근수는 문학이 있는 선비니 아까우므로 윤택치 않고 그 밖은 모두 계한 대로 하라.” 했다.

○ 5일. 이에 앞서 호남의 정암수가 상소하여 이산해, 유성룡 등이 평일 역적 괴수로 더불어 친교가 두터웠다고 지척을 했다. 주상이 이산해 유성룡을 불러 입대케 하고 위유를 했으며, 암수 등 연명으로 상소문에 들어 있는 자가 많아 모두를 죄줄 수는 없고 그 이름이 윗줄에 있는 자 10인만을 왕옥으로 잡아다가 국문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양사가 논하여 고집하기를 불가하다 했고 태학생들도 상소를 하여 논구함으로써 풀려났다. 이때에 이르러 양사가 논하여 탄핵하기를 “그때에 대간들이 권간의 지시와 사주를 받아 암수 등을 논구했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을 시키소서. 했다. 왕이 처음에는 허다한 사람을 모두 파직시키는 것이 소요를 일으킨다 하여 따르시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계한대로 하라.”고 했다. 그때의 대사헌은 최황, 집의는 성영, 장영은 심희수, 윤섬, 지평은 신집, 우준민 대사간은 이증, 사간은 오억령, 헌납은 백유함, 유대진 정언은 강찬, 이흠이었다. ○ 17일. 전교하시기를 “간신 정철이 엮어서 무함해 배척한 자가 있거든 모두 찾아들어 탁용케 하라.” 했다. ○ 20일. 의금부 도사 이태수가 행하여 순안에 이르러 치계하기를 “정철의 병이 중해서 길을 빠르게 압송해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전교하시기를 “이태수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아 간적을 압송해 가기를 엄하게 하지 않고 임의로 자행을 하여 배회하고 머뭇거리니 잡아다가 국문하고 다른 도사를 보내 압송해 가게 하라. 정철의 타고난 성격이 교활하고 간독하여 유배지에 이르고 나면 잡인들과 교통하여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니 엄하게 우리를 세우도록 하라.” 했다.

7월 8일. 양사가 연하에 계하기를 윤두수, 황혁을 치죄하라고 청하고 또 계하기를 “상호군 박점이 정철에게 당부하여 이조참의가 되고 서둘러서 간사한 자들을 끌어들이 요로에 가득 채워 흉악한 기세를 선동하고 도왔으니 청컨대 관직을 삭탈하시고, 충청감사 이성중은 사류 중의 사람으로서 정철의 문하를 왕래하여 그 모의에 참여를 했으니 청컨대 파직을 하시고 사인 우성전은 괴이한 말을 하기를 좋아해 공론을 헐박하여 잡고 행해지지 못하게 했고 또 정철의 당이 되어 그를 보호하니 청컨대 파직을 하시고 황혁은 조정에 죄를 얻었으니 국문을 행실이 개나 돼지 같은 집에 하행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 을 하소서.” 했다. 답하시기를 “윤두수와 황혁은 이미 파직을 했으니 멀리 귀양보낼 것이 없고 박점, 이성중은 계한 대로 하라. 우성전은 본디 남의 말썽이 많았고 적의 공초와 적의 간찰에 나온 바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사람이 근 십여 년을 밖에서 배회하다가 지난번 한두 차례 입시를 했는데 위인이 심히 앙금하고 험악하며 또 정철의 당이 되어 그를 감싼다 하니 그냥 파직만 할 것이 아니라, 관직도 삭탈을 해야겠다. 혼사는 필부도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천승의 임금이겠는가. 고쳐 택할 수는 없다.” 했다. 윤두수는 뒤에 계한 대로 멀리 귀양보내고, 황혁은 삭탈관직하여 내쳤다. ○ 이성중이 부제학이 되었을 때에 차를 올려 건저의 일을 논했는데 화는 본시 이로 말미암았다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